

#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22. 9.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22. 9.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조희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

2022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재 진



# 요 약

## 1. 심층평가 개요

- 정부는 중소기업의 소재지, 기업규모, 업종에 따라 세액의 일정비율을 감면해주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1992년 당시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은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최초 도입된 이후 감면대상 업종이 확대되면서 적용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됨
  
- 본 제도의 조세지출규모는 약 2조 500억원(2020 신고연도 실적치 기준)으로 의무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됨
  - 조세특례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당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 중 연평균 특례금액 300억원 이상인 제도는 심층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본 제도는 2022년 12월 일몰 도래 예정임
  
- 이에 따라 본 심층평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심층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타당성 분석, 효과성 분석, 고용영향 평가, 형평성 분석, 제도개선방안 분석 및 종합평가를 수행함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도 개요, 현황 및 해외사례) 제Ⅱ장에서는 본 제도 및 유사제도의 개요, 변천 및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관련 조세제도를 조사함
  - (타당성 분석) 제Ⅲ장에서는 본 제도 관련 정부지원의 적정성, 지원방법의 적정성, 제도 간 유사중복 여부 등을 분석함
  - (효과성 분석) 제Ⅳ장에서는 본 제도의 효과성을 국세청 미시과세자료를 이용

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함

- (고용영향 평가) 제V장에서는 본 제도에 의한 고용효과를 국세청 미시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함
- (형평성 분석) 제VI장에서는 본 제도에 의한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 효과를 분석함
- (제도개선방안) 제VII장에서는 앞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본 제도의 일몰연장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효과적인 제도 운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2. 제도 개요, 현황 및 해외제도

### 가. 제도 개요 및 현황

- (제도 개요 및 현황) 본 제도는 중소기업의 소재지, 기업규모, 업종에 따라 세액의 5~30%를 감면해주는 제도
  - 적용대상 업종은 최초 도입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확대되었으며, 2022년 기준 총 48개 업종이 포함됨
  -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1억원의 감면한도를 설정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1명당 5백만원씩 감면한도가 축소됨
  
- (제도 활용실적)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본 제도의 조세지출액 규모는 2020년 실적치 기준 약 1조 9,500억원이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본 제도 수혜기업 수는 약 117만개(법인사업자 22만, 개인사업자 95만)이며, 평균 수혜금액은 법인사업자 452만원, 개인사업자 105만원 수준
  - 특히, 본 제도는 중소기업이 수혜대상으로 포함된 모든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 중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의 수혜를 받은 총 기업 수 대비 본 제도 수혜기업 수 비중은 67.6%이며, 다음으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1.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8.2% 순

- 수혜금액 기준으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6.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8.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7.8% 순
  - 요컨대, 중소기업은 여러 조세지원제도 중 본 제도를 가장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수혜금액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본 제도 외 중소기업이 활발히 활용하는 제도는 대부분 본 제도와 중복적용이 허용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본 제도와 중복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제도의 활용도를 본 제도가 저해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모두 본 제도와 중복적용이 허용되고 있음

#### 나. 해외 제도

- (중소기업 구분 기준) 해외 주요국과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범위는 미국보다는 좁지만 영국, EU 및 싱가포르보다는 넓은 수준으로 나타남
- 특히, 자본금(출자총액) 기준을 적용하는 일본과 대만의 금액 기준이 원화로 각각 31억원과 34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범위는 이들 국가보다 넓은 수준으로 평가됨
  - 이는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폭넓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명목세율 체계) 해외 주요국들의 법인세율 체계를 보면, 대체로 단일세율체계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4단계 이상의 법인세율 체계를 갖춘 OECD 국가는 코스타리카 외에는 없음
- OECD 회원국이 아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소기업이 4단계이고 일반기업은 단일세율을 적용함
- 특히, 2단계 이상의 세율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 중에 상당수가 중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2단계 세율체계 국가 중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일본 및 폴란드 등은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법인세율을 적용
  - 3단계 세율체계 국가 중에서도 룩셈부르크, 중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중소기업 경감세율 체계를 적용
-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경감법인세율 체계를 갖춘 국가는 대체로 중소기업 관련 조세특례제도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중소기업 대상 세제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
    - 일본은 R&D의 추가적인 세제와 감가상각 관련 세제지원, 프랑스는 중소기업의 신규 취득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그리고 벨기에와 포르투갈은 중소기업의 명목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폴란드는 중소기업에 즉시상각의제를 지원
  - 이에 반해,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
- (최저한세제도) 최저한세제를 도입한 OECD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5개국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해 차등적인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하여 폭 넓게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법인세율 누진구조 및 최저한세 차등세율을 통해 소규모 기업을 우대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 비해 중소기업 지원 조세제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즉,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넓은 범위의 중소기업으로 기준조세 체계 및 조세특례제도 모두에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3. 타당성 평가

- (정부 개입의 근거 및 타당성)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 평가 결과 금융시장에서의 시장실패 교정 및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완화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시장실패: 금융시장 정보 비대칭성)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역선택(adverse selection) 등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짐
  - 자금 공급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 어떠한 기업이 건설하고 잠재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아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즉, 실제로는 잠재성이 있는 건설한 기업임에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이를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이들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특히, 금융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더 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은 대체로 기업정보 공개 의무가 적고, 업력이 짧아 자금 공급자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과거 이력이 부족하기 때문
  
-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납세협력비용은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과중한 납세협력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납세협력비용 중 상당부분이 고정비용(fixed cost)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세한 기업은 규모의 경제 및 분업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기가 쉽지 않음(Cleary et al., 2017<sup>1)</sup>)
  - OECD에서는 소규모 법인은 규모의 경제, 전문인력의 고용 등 규모가 큰 기업이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제혜택, 조세감면, 특정한 보고 및 정보공개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세지원 필요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Bergner et al.(2017) 역시 영세한 기업이 직면하는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들에게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함
  - 소규모 법인이 과중한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갖는 경우 경제적 효율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 Cleary et al.(2017)은 납세협력비용의 증가가 소규모 법인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 조세행정의

1) Era Dabla-Norris, Florian Misch, Duncan Cleary, and Munawer Khwaja, Tax Administration and Firm Performance: New Data and Evidence for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IMF Working Paper. 2017/95

개선이 이들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함

-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볼 때 중소기업의 과중한 납세협력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지원방식의 타당성) 다음으로 앞에서 논의한 중소기업 지원논리에 근거할 때 본 제도의 지원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함
  
-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와 관련해 본 제도의 지원방식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지원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정보 불완전성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우 적자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세지원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조세지원의 특성상 적자상태에 있는 기업, 즉 납부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저리대출 등의 금융지원이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또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대체로 완화된다는 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움
  
- 또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본 제도의 방식이 아닌 보다 직접적인 조세행정 차원의 지원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세무행정의 전산화, 세법 및 제도 단순화, 세무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직접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실질적 납세협력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닌 것으로 평가함

- 또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실질적 납세협력부담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음
- (지원대상의 적정성) 다음으로 본 제도가 설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이 적절한 지에 대해 논의함
  - 중소기업 중 중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후, 수혜대상 업종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함
- 앞서 살펴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논거, 본 제도의 지원방식,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범위는 영국, EU, 일본, 대만 등에 비해 넓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정부 개입의 주요 논거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및 과도한 납세협력부담의 문제도 일정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우리나라는 본 제도 외에 기타 조세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 따라서 매우 광범위한 중소기업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본 제도의 특성상 그 수혜대상을 영세한 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감면업종 구분체계) 현행 본 과세특례 적용 업종은 구분수준이 상이하고 체계성이 낮아 조세행정비용을 유발하고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낮추는 것으로 판단됨
  - 체계적이지 않은 업종 열거 방식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유발하고 제도 오남용의 소지도 증가함
- 또한 일부 비제조업 주요 업종은 본 제도의 수혜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본 제도가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분류 기준으로 감면업종으로 구분된 건설업, 제조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활용도가 높았으나,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본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교육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따른 보습학원 또는 직업교육훈련시설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도 활용도가 낮음

- (유사·중복성) 본 제도와 성격이 유사한 조세특례제도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나, 기준조세체계에서의 중소기업 우대정책과 종합적인 판단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 본 제도의 설계방식 및 활용도를 고려할 때 사실상 중소기업에 감면세율을 적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본 제도는 명목세율 체계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조세지원제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4. 효과성 평가

- 효과성 평가에서는 동 제도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음
  - 실증분석을 위해 국세청 제공 법인세 신고자료(2014~2019년) 및 소득세 신고자료(2015~2020년)를 활용함
    - 분석기간에 연속적으로 존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균형패널 구성
    - 분석기간에 산출세액이 항상 0보다 큰 기업만 실증 분석에 포함
  - 본 제도 수혜여부의 기업별( $i$ )·시간별( $t$ ) 차이를 이용하여 제도의 효과를 식별하는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각각 추정

$$y_{i,t+1} = \beta \cdot \text{중소기업세액감면수혜} + \sum_j \gamma^j \cdot \text{기타유사제도수혜}^j + \phi_i + \psi_t X'_i + \epsilon \quad \text{식 (I)}$$

- 종속변수  $y_{i,t+1}$ 는 기업  $i$ 의  $t+1$ 년도 재무성과(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자산)
- 중소기업세액감면수혜 $_it$ 는 기업  $i$ 의  $t$ 년도 동 제도 수혜여부 혹은 감면율
- 기타 유사 감면 및 공제 제도 수혜여부를 추가적으로 통제

- 추가적인 강건성 분석의 일환으로 기업의 기준연도 특성을 활용한 역확률 가중치 매칭분석(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기법을 활용

- 본 실증분석의 통제집단에 해당하는 동 제도 비수혜기업 중 제도 수혜확률이 높은 기업에는 높은 가중치를, 수혜확률이 낮은 기업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
    - 동 제도 수혜확률은 기업의 기준연도 특성(업력, 매출액, 산출세액 등)을 통해 예측
  - 본 방법론을 통해 통제집단(비수혜기업)과 처치집단(수혜기업)의 유사성을 높임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결과 동 제도는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법인사업자)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자산규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기업 규모에 따라 수혜기업의 매출액과 자산이 최대 2% 감소
    - 설명변수를 동 제도 수혜여부 대신 감면율을 사용하여도 결과는 유사하였음
    - 매칭분석이나 기업별 선형추세를 통제한 모형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도출됨
  - (개인사업자) 전체 사업자의 총 수입액 및 재무자료가 가용한 사업자의 영업이익률과 자산규모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2020년 자료 포함 여부는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역확률 가중치 매칭분석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도출됨
- (2017년 제도개편의 영향) 세액감면한도 신설 및 고용인원 감소 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축소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제도개편 이전 1억원 초과 감면 기업(처치집단)이 1억원 이하 감면 기업(통제집단)에 비해 세액감면액이 평균 4천만원 감소
  - 하지만 제도개편 이전 1억원 초과 감면 기업의 재무성과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음
  - 또한 제도개편 이전과 이후의 본 제도가 전반적인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 다만 본 실증분석에서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로 인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설명변수인 본 조세특례제도 수혜여부는 외생적(exogenous)으로 결정되지 않음
  - 기업의 특성, 과거 성과 및 예측된 미래의 성과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동 제도 수혜여부가 내생적으로 결정됨
  - 본 분석에서는 매칭분석, 기업별 선형추세 추가 통제 등의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이와 같은 내생성 문제를 최대한 완화하였음
  - 다만 이러한 내생성이 본 실증분석에서 완전히 통제되지 않았을 경우 패널 고정효과 추정치에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분석을 통해 동 제도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제도효과의 정확한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음

## 5. 고용영향 평가

- 고용영향 평가에서는 동 제도가 기업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음
  - 분석을 위해 국세청 제공 법인세 신고자료(2014~2019년) 및 소득세 신고자료(2015~2020년)를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자료와 연결함
    - 분석 표본 제약 조건은 앞선 효과성 분석과 같음
  - 4장의 효과성 분석과 동일하게 식 (1)의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각각 추정하였음
    - 기준연도 기업 특성을 활용한 매칭분석 또한 추가적으로 수행
  - 고용영향 평가에서는 로그 근로자수, 로그 평균소득 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
-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결과 동 제도는 고용의 양과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법인사업자) 동 제도 수혜기업의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평균 급여액에는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 기업 규모에 따라 수혜기업의 근로자 수가 최대 3% 감소

- 설명변수를 동 제도의 감면율로 사용하여도 분석결과는 유사하였음
- 매칭분석이나 기업별 선형추세를 통제한 모형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도출됨
- (개인사업자) 고용자료가 가용한 사업자의 근로자 수 및 평균급여액 모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찾을 수 없었음
-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2020년 자료 포함 여부는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음
- 역확률 가중치 매칭분석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도출됨
- 단, 고용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개인사업자 표본이 작기 때문에 해당 분석 결과 해석 시 주의가 요구됨

□ (2017년 제도개편의 영향) 세액감면한도 신설 및 고용인원 감소 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축소는 고용의 양과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감면한도 신설에도 불구하고 제도개편 이전 1억원 초과 감면 기업(감면한도 신설로 인해 세액감면액이 감소한 기업)의 고용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음
- 또한 제도개편 이전과 이후의 본 제도가 전반적인 기업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 다만 내생성 문제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을 경우 고용영향 평가 결과에 편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효과성 분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계량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내생성 문제를 최대한 완화하였으나, 이러한 내생성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 6. 형평성 평가

### 가. 수평적 형평성

□ (중소기업 법인의 업종별 실효세율) 본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수혜기업-비수혜기업 사이의 실효세율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제도 적용 후 수혜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1.93%p 인하되어, 비수혜기업과의 실효세율 격차는 2.42%p까지 확대됨
  - 특히 이러한 효과는 제조업 법인에서 높게 나타남
- (변동계수비율을 이용한 분석) 변동계수비율을 통한 분석 결과, 본 제도 적용 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수평적 형평성 수준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남
  -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지급능력을 지닌 납세자들이 동일한 수준의 조세부담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변동계수비율(CV ratio)을 활용할 수 있음(Westort and Wagner, 2002)
  - 본 제도 적용 전후의 CV ratio를 비교한 결과 본 제도가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이러한 효과는 업종, 지역, 기업규모별 분석에서 일관되게 유지됨

#### 나. 수직적 형평성

- 수직적 형평성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효과(income redistribution effect)와 누진성(progressivity) 수준이 활용되고 있음
  - 소득재분배효과는 세전 소득분포와 세후 소득분포 지니계수의 차이인 Reynolds-Smolensky의 소득재분배효과(RE)로 측정
  - 누진성의 측정은 Kakwani(1977)의 소득세 누진도지수(Kakawni Progressivity Index, KPI)와 Suits의 누진도지수(Suits progressivity index)로 측정
- 소득재분배효과와 누진성 수준을 측정한 결과, 본 과세특례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수직적 형평성에 상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본 제도가 법인사업자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결과를 나타낸 반면, 개인사업자의 수직적 형평성은 저해시키는 결과를 보임
    - 법인의 경우, 본 과세특례의 수혜기업 표본에서 Reynolds-Smolensky 지수가 양(+)의 값, KPI 지수와 Suits 누진성 지수가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어 소득재분배 및 누진성이 개선됨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Reynolds-Smolensky 지수가 음(-)의 값 그리고 KPI 지

수와 Suits 누진성 지수도 음(-)의 값을 보여 본 과세특례제도가 개인사업자의 수직적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비수도권의 비교) 본 과세특례제도가 수도권 소재 법인 전체의 소득재 분배효과와 누진성 수준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제조업-비제조업의 비교) 본 과세특례제도의 업종별 수직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법인에 소득재분배효과가 발생하고 비제조업 법인에는 누진성 제고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7. 결론 및 제도 개선 방안

- 본 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결과 일몰연장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전제로 일몰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해외제도 비교)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하고 있고, 법인세율 누진구조 및 최저한세 차등세율,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타당성 평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정되지만, 본 제도 지원방식 및 지원대상의 타당성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효과성 평가 및 고용영향평가) 본 제도는 기업의 재무성과 및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형평성 평가) 본 제도는 수평적 형평성 및 개인사업자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안함
  - 코로나19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본 제도의 일몰연장을 추진하는 경우, 1) 감면한도 축소, 2) 적용대상 업종의 확대를 제안함
  - 장기적으로는 본 제도를 일몰종료하되 1) 투자, 고용 관련 조세지원제도 확대, 2) 영세기업에 대한 경감세율 도입 등을 통해 세수 중립적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함

## 가. 단기적 개선 방안

- 현행 감면한도는 감면한도가 높아 실제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매우 소수인 것으로 파악됨
  
-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본 심층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본 제도의 실질적 감면혜택이 영세한 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감면한도의 축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은 금융시장에서의 시장실패 및 납세 협력부담의 역진성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특히, 본 심층평가 분석결과 과거 도입된 1억원 감면한도의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 활용 유인이 제고된 현상이 관측됨
  - 따라서 본 제도의 감면한도를 추가로 축소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의 긍정적 기업 행태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의 평균 수혜금액과 현행 감면한도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음을 고려할 때, 감면한도를 축소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수혜대상 업종 열거방식 개선) 본 과세특례 적용 업종 구분수준이 대-중-소분류 등으로 상이하고 체계적이지 않아 조세행정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복잡한 업종 열거 방식은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유발하고 제도 오·남용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음
  
- (수혜대상 업종의 확대) 일부 비제조업 주요 업종은 본 제도의 수혜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본 제도가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업종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분류 기준으로 감면업종으로 구분된 건설업, 제조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활용도가 높았으나,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본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본 과세특례 적용 후의 변동계수비율이 증가하여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적용 제외 업종이나 동일 업종 내에서 예외 및 조건이 있는 업종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남
- 본 제도는 긍정적 기업행태와 연계되어 있지 않고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성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제도의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업종을 대분류 또는 중분류 수준으로 가급적 통일하여 광범위하게 열거할 경우 앞서 언급한 조세행정 비용을 감축하는 효과도 기대됨

## 나. 장기적 개선 방안

- 장기적으로는 본 제도를 일몰종료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기타 조세지원을 확대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활용도가 높은 본 제도를 폐지하면 많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므로 투자, 고용,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편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본 제도가 긍정적 기업행태와 연계된 조세지원제도 활용 유인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개편을 통해 기타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영세기업에 대한 경감세율을 도입하여 본 제도 수혜기업 중 규모가 작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검토 가능함
    - 본 제도가 업종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조건적 조세지원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개편을 통해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개선하면서도 지원 필요성이 높은 영세기업의 영향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우리나라는 이미 4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세기업에 대한 경감세율은 현행 법인세 누진구조를 완화하는 것을 전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목 차

I. 서론 .....	23
II. 제도 개요, 현황 및 해외제도 .....	27
1. 제도 개요 및 현황 .....	29
2. 해외 제도 .....	53
III. 타당성 평가 .....	83
1. 정부 개입의 근거 및 타당성 .....	85
2. 지원 방식의 타당성 .....	91
3. 지원 대상의 적정성 .....	93
4. 타 제도와 유사·중복성 .....	102
5. 타당성 평가결과 요약 .....	104
IV. 효과성 평가 .....	107
1. 본 제도와 기타 조세지출제도 사이의 대체관계 .....	109
2. 제도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117
3. 효과성 평가 결과 요약 .....	118
V. 고용영향 평가 .....	141
1. 분석 개요 .....	143
2. 분석 결과 .....	144
3. 추가 분석 .....	152
4. 고용영향 평가 결과 요약 .....	155
VI. 형평성 평가 .....	157
1. 분석 개요 .....	159

2 분석 결과 .....	160
3. 형평성 평가 결과 요약 .....	178
<b>VII.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b>	<b>181</b>
1. 제도 운영 결과 평가 .....	183
2. 향후 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 .....	183
<b>참고문헌 .....</b>	<b>187</b>

## 표 목 차

<표 II-1> 현행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기준 .....	29
<표 II-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48개 업종 .....	31
<표 II-3>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 .....	33
<표 II-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 연혁 .....	34
<표 II-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정책대상 업종변천 .....	36
<표 II-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	38
<표 II-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도별 수혜 현황 .....	39
<표 II-8> 주요 중소기업 대상 조세지원제도의 활용기업 수 및 총 조세지출액 추이 ..	42
<표 II-9> 주요 중소기업 대상 조세지원제도의 기업당 평균 수혜금액 추이 .....	43
<표 II-10> 세액감면 및 공제별 수혜기업 수와 수혜금액 비중: 법인세 .....	44
<표 II-11> 고용, 투자, 연구개발 관련 세액감면 및 공제별 수혜기업 수와 수혜금액 비중: 법인세 .....	50
<표 II-12> 고용, 투자, 연구개발 관련 세액감면 및 공제별 수혜 개인사업자 수와 수혜금액 비중: 소득세 .....	52
<표 II-13> 기업규모 관련 관련법 및 정의 .....	54
<표 II-14>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	57
<표 II-15> 미국 제조업 세부 업종별 소기업 기준(매출액 기준) .....	60
<표 II-16> 영국의 중소기업 범위 .....	62
<표 II-17> EU의 중소기업 범위 .....	63
<표 II-18> 일본의 중소기업 범위 .....	64
<표 II-19> 대만의 중소기업 범위 .....	65
<표 II-20> OECD 국가 법인세 최고세율(2022년 기준) .....	72
<표 II-21>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2022년 기준): 단일 세율체계(26개국) ...	73
<표 II-22>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2022년 기준): 2단계 세율체계 (비OECD 국가 포함 총 5개국) .....	74
<표 II-23>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2022년 기준): 3단계 이상 세율체계(5개국) ·	76

<표 II-24>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구분기준 비교 .....	80
<표 III-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사업체와 종사자 현황(2019년 기준) .....	89
<표 III-2>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현황 비교 .....	90
<표 III-3> 표준산업분류상 본 과세특례 감면업종 현황 .....	95
<표 III-4> 대분류 기준 감면 제외 업종 중 본 제도 활용 업종 .....	100
<표 III-5>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의 활용도 .....	101
<표 III-6> 2018년 귀속 법인의 제도 활용도 비교(제조업 vs. 비제조업) .....	102
<표 III-7> 중복적용 배제 조항(「조특법」 제127조 제4항) .....	103
<표 IV-1> 중소기업 지원 관련 감면금액 및 공제율 변화 .....	110
<표 IV-2> 감면한도 적용 기업의 본 제도와 기타 제도 수혜금액 상관관계 .....	117
<표 IV-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와 중소기업 법인의 재무적 성과 .....	124
<표 IV-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과 중소기업 법인의 재무적 성과 .....	125
<표 IV-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여부와 중소기업 법인의 재무적 성과(매칭분석) ..	126
<표 IV-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여부와 중소기업 법인의 재무적 성과 (기업별 선형추세 통제) .....	127
<표 IV-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여부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재무성과 ...	131
<표 IV-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여부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재무성과 (매칭분석) .....	132
<표 IV-9> 감면한도 신설과 법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액 .....	134
<표 IV-10> 감면한도 신설과 중소기업 법인의 재무적 성과 .....	135
<표 IV-11> 연도별 법인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137
<표 V-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여부와 중소기업 법인의 고용 성과 .....	145
<표 V-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과 중소기업 법인의 고용 성과 .....	146
<표 V-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여부와 중소기업 법인의 고용 성과(매칭분석) ·	147
<표 V-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여부와 중소기업 법인의 고용 성과 (기업별 선형추세 통제) .....	148
<표 V-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고용성과 .....	150

<표 V-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고용성과 (매칭분석) .....	151
<표 V-7> 감면한도 신설과 법인 중소기업의 고용성과 .....	153
<표 V-8> 연도별 법인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	154
<표 VI-1> 법인의 2018년 귀속 업종별 수혜기업 및 비수혜기업의 실효세율 차이 ·	161
<표 VI-2> 개인사업자의 2018년 귀속 업종별 수혜기업 및 비수혜기업의 실효세율 차이 .....	162
<표 VI-3> 법인의 2018년 귀속 수도권-비수도권 실효세율의 차이 .....	163
<표 VI-4> 법인의 2018년 귀속 수혜기업의 업종별 변동계수비율 변화 분석결과 ·	165
<표 VI-5> 2018년 귀속 수도권-비수도권 변동계수비율 변화: 전체표본 .....	166
<표 VI-6> 법인의 2018년 귀속 수입금액 구간별 변동계수비율 변화 .....	167
<표 VI-7> 법인의 2018년 귀속 자산규모 구간별 변동계수비율 변화 .....	169
<표 VI-8> 개인사업자의 2018년 귀속연도 업종별 변동계수비율 변화 분석결과 ..	171
<표 VI-9> 개인사업자의 2018년 귀속 수입금액 구간별 변동계수비율 변화 .....	172
<표 VI-10>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수직적 형평성 분석결과 .....	176
<표 VI-11>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법인 간 수직적 형평성 차이 .....	177
<표 VI-12> 법인의 제조업-비제조업 법인 간 수직적 형평성 차이 .....	177
<표 VI-13> 개인의 제조업-비제조업 법인 간 수직적 형평성 차이 .....	178

## 그림 목 차

[그림 II-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활용 법인 및 개인사업자 수 추이 .....	39
[그림 II-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법인 및 개인사업자 총 감면액 추이 .....	40
[그림 II-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법인 및 개인사업자 평균 수혜금액 추이 .....	40
[그림 II-4] 해외국의 중소기업 분류기준 .....	59
[그림 III-1] 2014~2019년 귀속 법인의 활용도 .....	99
[그림 IV-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확률의 분포 .....	122
[그림 IV-2] 산출세액별 법인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 .....	129
[그림 V-1] 산출세액별 중소기업 법인에 대한 고용 효과 .....	149
[그림 VI-1] 수입금액 및 자산규모별 변동계수비율 추이(법인사업자) .....	170
[그림 VI-2] 수입금액 구간별 변동계수비율 추이(개인사업자) .....	173

# I. 서론





# I. 서론

- 정부는 중소기업의 소재지, 기업규모, 업종에 따라 세액의 일정비율을 감면해주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1992년 당시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은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최초 도입된 이후 감면대상 업종이 확대되면서 적용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됨
    - 가장 최근에는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하고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한 바 있음
  
- 본 제도의 조세지출규모는 약 2조 500억원(2020 신고연도 실적치 기준)으로 의무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됨
  - 조세특례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당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 중 연평균 특례금액 300억원 이상인 제도는 심층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본 제도는 2022년 12월 일몰 도래 예정임
  
- 이에 따라 본 심층평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심층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타당성 분석, 효과성 분석, 고용영향 평가, 형평성 분석, 제도개선방안 분석 및 종합평가를 수행함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도 개요, 현황 및 해외사례) 제Ⅱ장에서는 동 제도 및 유사제도의 개요, 변천 및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관련 조세제도를 조사함
  - (타당성 분석) 제Ⅲ장에서는 동 제도 관련 정부지원의 적정성, 지원방법의 적정성, 제도 간 유사중복 여부 등을 분석함
  - (효과성 분석) 제Ⅳ장에서는 동 제도의 정책목표 달성도를 국세청 미시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함

- 본 제도가 매출액, 영업이익, 총자산 등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정함
- (고용영향 평가) 제V장에서는 본 제도에 의한 고용효과를 국세청 미시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함
  - 본 제도가 상시근로자 수(고용의 양) 및 평균 급여액(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
- (형평성 분석) 제VI장에서는 본 제도에 의한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 효과를 분석함
- (제도개선방안) 제VII장에서는 앞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본 제도의 일몰연장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효과적인 제도 운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Ⅱ. 제도 개요, 현황 및 해외제도





## II. 제도 개요, 현황 및 해외제도

### 1. 제도 개요 및 현황

#### 가. 제도 개요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거하여 정책대상 업종 중 수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의 소재지, 기업규모, 업종에 따라 5~3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임
  - 본 제도의 중소기업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정의됨
    -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의미하며, 그 기준은 세부업종에 따라 제조업 80억~120억원, 서비스업 10억~120억원으로 상이함
    - 중소기업 역시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의미하며, 그 기준은 세부업종에 따라 제조업 최대 1,500억원, 서비스업 최대 1,000억원으로 상이함
    - 중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의미함

<표 II -1> 현행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기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소기업
A 농업, 임업 및 어업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B 광업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C 제 조 업	10 식료품 제조업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11 음료 제조업	8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12 담배 제조업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표 II -1〉의 계속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소기업
C 제 조 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5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24 1차 금속 제조업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28 전기장비 제조업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31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32 가구 제조업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33 기타 제품 제조업	8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6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80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E36 수도업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F 건설업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G 도매 및 소매업	1,00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H 운수 및 창고업	8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I 숙박 및 음식점업	4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J 정보통신업	80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K 금융 및 보험업	4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L 부동산업	40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경우 임대업 제외	60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N76 임대업	400억원 이하	-	

<표 II -1>의 계속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소기업
P 교육 서비스업	4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S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3],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main.html>, 검색일자: 2022. 2. 3.

- (정책대상자) 본 제도는 1992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정책대상 업종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조세특례법 제7조 ①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48개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기업들로 제한함
  - 48개 감면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대분류 전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세분류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일부 감면업종은 개별법에 근거한 업종으로 한국산업분류체계와 정확히 매칭되지 않는 한계를 보임

<표 II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48개 업종

연번	감면 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표 II -2>의 계속

연번	감면 업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2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
2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2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2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30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31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42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표 II -2>의 계속

연번	감면 업종
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main.html>, 검색일자: 2022. 2. 3.

- (감면 혜택)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 중 수익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기업의 소재지, 규모, 업종에 따라 5~30%의 세액감면이 허용됨
  - 비수도권, 소규모 기업의 세액감면율이 높고 수도권, 중규모 기업의 세액감면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음

<표 II -3>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

(단위: %)

기업규모	업종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10	10
	그 외 업종	20	30
중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	5
	그 외 업종	-	15
	지식기반산업	10	15

주: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수 성실중소기업은 상기 감면율의 1.1배를 적용

- ①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 ②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③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 등

2.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30% 감면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main.html>, 검색일자: 2022. 2. 3.

## 나. 제도 연혁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1992년 최초 도입 이후 지원대상, 감면율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표 II-4>와 <표 II-5>에 제시한 바와 같음
- 최근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 우대,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한도 도입 등이 있음
  -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10년 이상 경영한 성실중소기업에 대하여 공제율을 10%(1.1배) 상향조정하였으며, 전체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0%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함
  -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본 제도의 감면혜택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유인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금액 한도를 설정함<sup>2)</sup>
    - 1억원의 감면한도를 설정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1명당 5백만원씩 감면한도를 축소하도록 설계됨

<표 II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 연혁

개정일자	감면비율			
		과세대상 소득금액	감면비율	
1992. 12. 8. 신설	거주자 (소득세)	5천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40%	
		5천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20%	
	내국법인 (법인세)	1억원 이하	산출세액의 40%	
		1억원 초과	산출세액의 20%	
• 일몰기한 2003. 12. 31.				
1993. 12. 31.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20%			
2000. 12. 29.	소기업	업종	수도권 내	수도권 외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10	10
	중기업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30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	10
		제조업 등 기타업종	-	10

2)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main.html>, 검색일자: 2022. 2. 10.

<표 II -4>의 계속

개정일자	감면비율			
2001. 12. 29.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10	10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30
	중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	10
		제조업 등 기타업종	-	30
		지식기반산업 <sup>1)</sup>	20	30
	2002. 12. 11.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10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30
중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	10
		제조업 등 기타업종	-	30
		지식기반산업	20	30
2003. 12. 30.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5
	제조업 등 기타업종		10	15
	중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	5
		제조업 등 기타업종	-	15
		지식기반산업	10	15
	• 일몰연장 2005. 12. 31.			
2004. 12. 31.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10	10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30
	중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	5
		제조업 등 기타업종	-	15
		지식기반산업	10	15
2005. 12. 31.	• 일몰연장 2008. 12. 31.			
2008. 12. 26.	• 일몰연장 2011. 12. 31.			
2010. 1. 1.	•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업종을 도·소매업과 의료업으로 축소하고 자동차 정비업과 관광사업은 제조업 등 기타업종으로 포괄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10	10
		그 외 업종	20	30
	중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	5
		그 외 업종	-	15
지식기반산업		10	15	

<표 II -4>의 계속

개정일자	감면비율
2011. 12. 31.	• 일몰연장 2014. 12. 31.
2013. 1. 1.	• (상동)+알뜰주유소(20% 감면,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2014. 12. 23.	• 일몰 연장 2017. 12. 31.
2016. 2. 5.	• 2016. 1. 1. 개시 사업연도부터 업종별로 소기업 판단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2016. 12. 20.	• 장수 성실중소기업 <sup>2)</sup> 에 대해 감면율을 10%(1.1배) 확대 적용 •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30% 감면
2017. 12. 19.	• (감면한도) 1억원: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원 한도 축소 •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중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 일몰연장 2020. 12. 31.
2020. 12. 29.	• 일몰연장 2022. 12. 31.

주: 1) 엔지니어링사업, 연구 및 개발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이 해당 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업종을 확대함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수 성실중소기업은 상기 감면율의 1.1배를 적용

①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②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③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 등

자료: 김학수·우석진(2017), pp. 27-28,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main.html>, 검색일자: 2022. 2. 3., 2017년 세법개정안

<표 II -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정책대상 업종변천

개정일자	감면업종
1992. 12. 8.	제조업
1994. 12. 22.	정보처리업(정보처리업 → 정보서비스업(2008. 12. 26. 개정)) 컴퓨터운용관련업(컴퓨터운용관련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008. 12. 26. 개정))
1995. 12. 29.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추가
2000. 12. 29.	광업, 건설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2002. 12. 11. 개정))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sup>1)</sup> 축산업 작물재배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 작물재배업(2005. 12. 31. 개정))
2002. 12. 11.	영화산업, <sup>2)</sup> 전기통신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뉴스제공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수탁생산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기존 공연산업에서 변경(2008. 12. 26. 개정)),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 및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제외) 추가
2005. 12. 31.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운영사업, <sup>3)</sup> 선박관리업, 전시산업, 광고업 추가

<표 II -5>의 계속

개정일자	감면업종
2008. 12. 26.	출판업, 정보서비스업(정보처리업 → 정보서비스업(2008. 12. 26. 개정))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컴퓨터운용관련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2008. 12. 26. 개정))
2010. 1. 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2011. 12. 31. 개정),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사업
2010. 12. 27.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추가
2013. 1. 1.	사회복지서비스업 추가
2014. 1. 1.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운영업제외) 추가
2014. 12. 23.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가
2015. 12. 1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추가
2016. 12. 2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sup>4)</sup> 임업 추가
2020. 12. 29.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임대업 추가

주: 1) 폐기물처리업·폐수처리업(2000. 12. 29. 신설), 건설폐기물처리업(2005. 7. 13. 신설), 분노 등 관련 영업·토양정화업(2005. 12. 31. 신설)을 포괄함(2008. 12. 26. 개정)

2) 기존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함)에서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으로 변경(2008. 12. 26. 개정)

3) 기존에는 직업기술분야 학원이라고 규정하였으나 이후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으로 개정(2008. 12. 26. 개정)하였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으로 확대(2010. 12. 27. 개정)되어 직업 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운영사업,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운영사업(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을 포함하여 규정

4) 기존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제외하였으나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대상에 포함 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자료: 김학수·우석진(2017), p. 26 및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main.html>, 검색일자: 2022. 2. 4.

#### 다. 제도 현황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본 제도의 조세지출액 규모는 2020년 실적치 기준 약 1조 9,500억원이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소득세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원, 법인세 조세지출 규모는 약 9,500억원임

- 또한 조세지출액 규모의 추이는 2011~2018년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2019년에는 소폭 하락하였고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패턴을 보임
  - 이러한 패턴은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됨

〈표 II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단위: 억원)

구분	소득세	법인세	합계
2011	4,924	6,029	10,953
2012	6,506	6,323	12,829
2013	6,384	6,256	12,640
2014	6,845	6,967	13,812
2015	9,011	7,079	16,090
2016	9,973	8,670	18,643
2017	10,492	10,111	20,603
2018	11,409	10,805	22,214
2019	10,885	9,535	20,420
2020	10,680	9,879	20,559
2021(전망)	10,004	9,513	19,517
2022(전망)	10,603	10,353	20,956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국세통계연보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수혜현황<sup>3)</sup>을 살펴보면 활용 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업당 평균 수혜금액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본 제도 활용기업 수는 법인과 개인 각각 12만 5천개 및 67만 7천명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각각 21만 8천개와 94만 9천명으로 크게 증가함
  - 반면 2011~2020년 기간 기업당 수혜규모는 법인 5백만원 내외, 개인은 1백만원 내외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됨

3) 국세통계연보의 개인사업자 수혜현황은 매해 10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이후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 등으로 인한 변동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2021년 국세통계연보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는 2021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따라서 국세통계연보상 소득세 조세지출금액과 조세지출예산서상 소득세 조세지출 금액은 차이가 있다.

<표 II -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도별 수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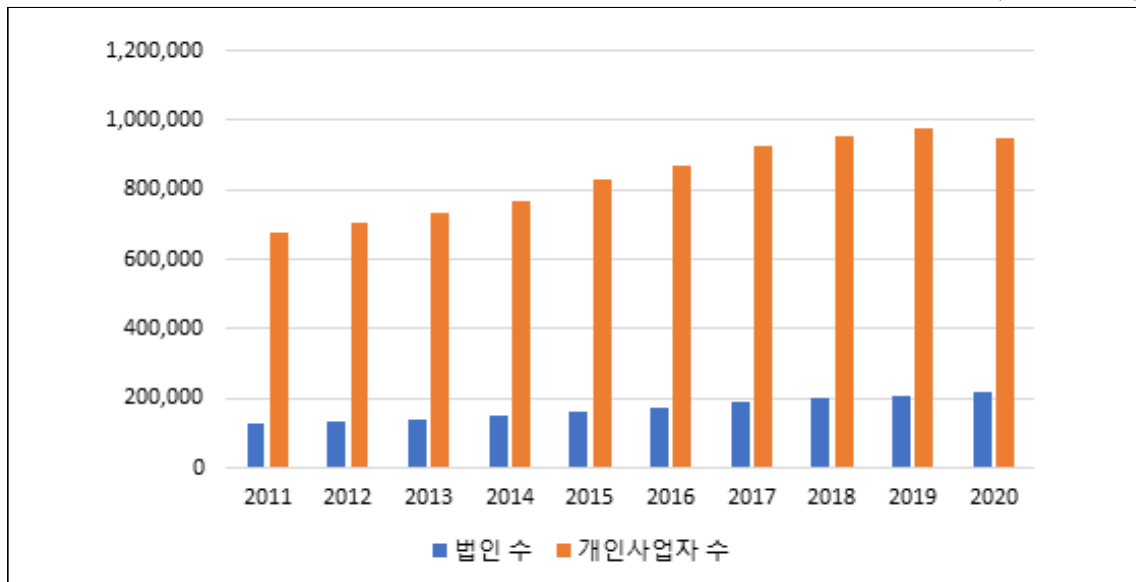
(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신고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법인 수	125,046	131,459	141,632	150,687	159,784	172,771	189,384	202,191	209,112	218,488
감면액	602,926	632,403	625,492	696,669	759,247	867,029	1,011,138	1,080,514	953,514	987,883
법인당 수혜 규모	4.82	4.81	4.42	4.62	4.75	5.02	5.34	5.34	4.56	4.52
개인 사업자 수	677,200	704,554	733,448	765,496	827,485	869,869	925,458	955,667	978,291	949,301
감면액	649,429	637,691	684,497	901,040	997,218	1,049,203	1,140,906	1,088,412	1,067,950	999,484
개인당 수혜 규모	0.96	0.91	0.93	1.18	1.21	1.21	1.23	1.14	1.09	1.0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활용 법인 및 개인사업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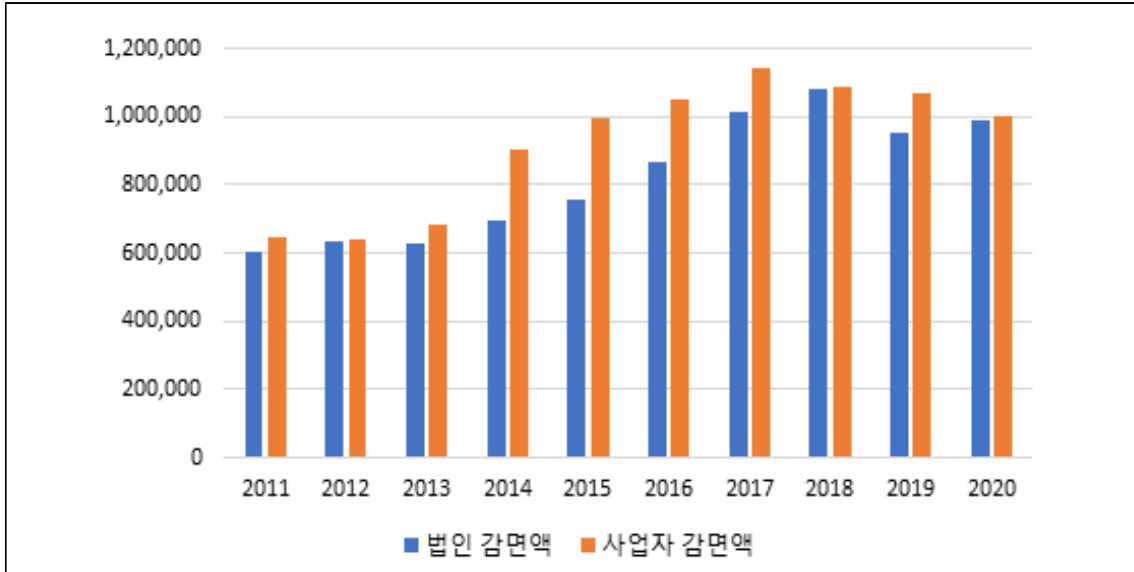
(단위: 개, 명)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법인 및 개인사업자 총 감면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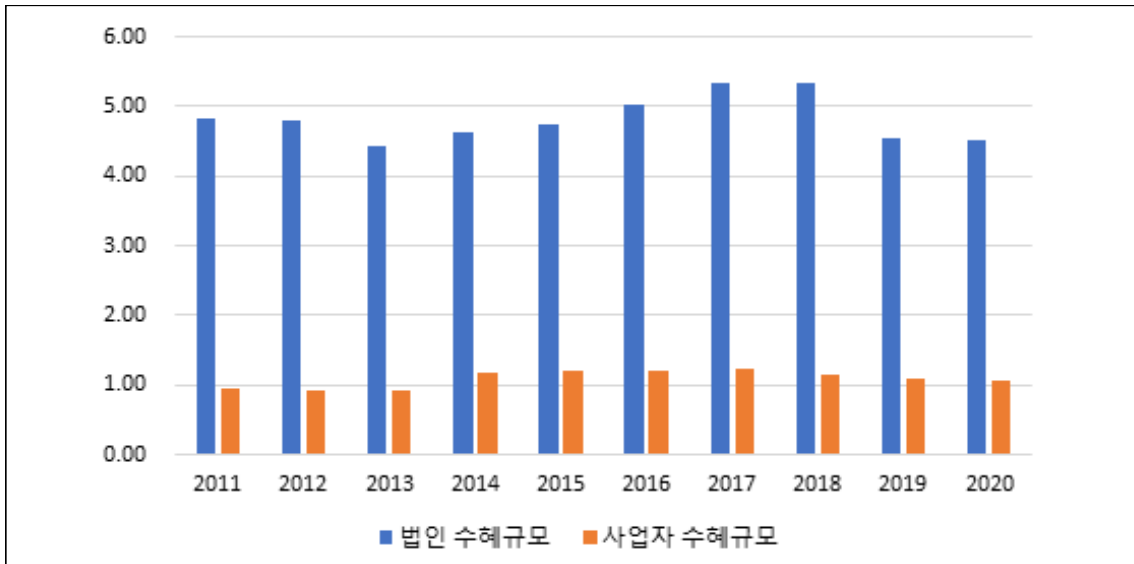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법인 및 개인사업자 평균 수혜금액 추이

(단위: 백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본 제도와 중소기업만을 수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타 조세지원제도를 비교하면, 활용기업 수는 본 제도가 많은 반면 기업당 평균 수혜금액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여기에서는 본 제도와 함께 중소기업만을 수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인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총 3개 제도를 비교함
- 활용기업 수 측면에서는 본 제도의 활용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총 조세지출액 측면에서도 기타 2개 제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기업당 평균 수혜금액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본 제도의 순서로 큰 것으로 파악됨
  - 2020 신고연도 법인 사업자 기준 평균 수혜금액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약 2천만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1천 8백만원, 본 제도 450만원 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약 640만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260만원, 본 제도 110만원 순

〈표 II -8〉 주요 중소기업 대상 조세지원제도의 활용기업 수 및 총 조세지출액 추이

(단위: 개, 명, 억원)

구분	과세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법인사업자 수	125,046	131,459	141,632	150,687	159,784	172,771	189,384	209,112	218,488	
	감면액	6,029	6,324	6,255	6,967	7,592	8,670	10,111	9,535	9,879	
	개인사업자 수	677,200	704,554	733,448	765,496	827,485	869,869	925,458	978,291	949,301	
	감면액	6,494	6,377	6,845	9,010	9,972	10,492	11,409	10,884	10,680	9,995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법인사업자 수	4,086	4,365	5,009	5,472	5,947	6,457	6,881	8,461	9,546	
	감면액	978	988	977	1,102	1,156	1,310	1,516	1,701	1,942	
	개인사업자 수	5,563	6,932	7,810	8,616	10,064	12,335	16,309	20,006	26,450	35,983
	감면액	284	312	375	520	534	684	997	1,122	1,499	2,290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5조)	법인사업자 수	905	901	1,488	1,887	2,321	2,934	3,423	4,444	4,524	
	공제액	110	126	202	276	332	411	496	790	807	
	개인사업자 수	-	-	-	-	-	3,622	4,605	6,729	2,671	
	공제액	6	7	30	40	51	87	117	172	69	

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개인사업자의 2011~2015년 공제액은 조세지출예산서로 대체하여 작성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표 II -9〉 주요 중소기업 대상 조세지원제도의 기업당 평균 수혜금액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과세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법인사업자	4.82	4.81	4.42	4.62	4.75	5.02	5.34	5.34	4.56	4.52
	개인사업자	0.96	0.91	0.93	1.18	1.21	1.21	1.23	1.14	1.09	1.05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법인사업자	23.94	22.63	19.50	20.14	19.44	20.29	22.03	26.59	20.10	20.34
	개인사업자	5.11	4.50	4.80	6.04	5.31	5.55	6.11	5.61	5.67	6.36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5조)	법인사업자	12.15	13.98	13.58	14.63	14.30	14.01	14.49	13.98	17.78	17.84
	개인사업자	-	-	-	-	-	2.40	2.54	2.33	2.56	2.58

-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수혜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세액감면 및 공제제도의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봄
  - 앞에서는 중소기업만을 수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주요 조세지출제도를 살펴본 것이고, 여기에서는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조세지출제도의 활용도를 제시함
  - 제도별 활용 현황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살펴봄
  
- 먼저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 제도의 수혜기업 수 및 수혜금액 측면에서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2020 신고연도 조세지출제도 활용 중소기업 중 본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수 비중은 64.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순으로 나타남
  - 수혜금액 측면에서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33.5%) 다음으로 본 제도의 비중(25.9%)이 높았음
  - 이는 본 제도의 수혜요건이 상대적으로 충족하기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특히, 본 제도 외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모두 본 제도와 중복적용이 가능한 제도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본 제도로 인해 본 제도와 중복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기타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를 저하하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
    -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가로 논의

<표 II -10> 세액감면 및 공제별 수혜기업 수와 수혜금액 비중: 법인세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수혜기업 수(개)			수혜금액(백만원)		
	중소기업	일반기업	전체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전체기업
2020년 신고연도 (세액감면+세액공제)	339,269	12,423	351,692	3,819,783	6,686,021	10,505,804

<표 II -10>의 계속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수혜기업 수(개)			수혜금액(백만원)		
	중소기업	일반기업	전체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전체기업
	수혜기업 수 비중(%)			수혜금액 비중(%)		
<b>세액감면</b>						
총 세액감면	69.26	1.99	66.88	34.90	10.97	19.67
총 최저한세 적용제외 세액감면	1.92	1.88	1.92	2.65	10.93	7.92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0.42	-	0.40	0.59	-	0.21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	0.03	-	0.03	0.14	-	0.05
수도권 외 지역 이전 공장에 대한 감면	0.01	0.09	0.01	0.36	0.46	0.42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	0.02	0.16	0.03	0.25	8.82	5.71
영농조합법인 감면	0.82	0.64	0.82	0.50	0.00	0.19
영어조합법인 감면	0.14	0.04	0.14	0.08	0.00	0.03
농업회사법인 감면 (농업소득)	0.19	0.16	0.19	0.20	0.02	0.08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0.18	0.25	0.18	0.18	0.00	0.07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0.03	0.11	0.03	0.13	0.01	0.05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0.06	0.01	0.06	0.11	0.00	0.04
감염병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0.01	-	0.01	0.02	-	0.01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0.00	-	0.00	0.00	-	0.00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0.00	0.06	0.00	0.02	0.20	0.13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0.00	0.24	0.01	0.05	1.10	0.7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	0.03	0.00	-	0.02	0.01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	0.06	0.00	-	0.21	0.1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0.00	-	0.00	0.00	-	0.00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0.00	-	0.00	0.00	-	0.00

<표 II -10>의 계속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수혜기업 수(개)			수혜금액(백만원)		
	중소 기업	일반 기업	전체 기업	중소 기업	일반 기업	전체 기업
	수혜기업 수 비중(%)			수혜금액 비중(%)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	0.00	0.01	0.00	0.01	0.02	0.01
기업도시개발구역 시행자 감면	-	0.01	0.00	-	0.06	0.04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 지구입주기업 감면	0.00	-	0.00	0.00	-	0.00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0.00	0.01	0.00	0.00	0.00	0.00
기타	0.00	0.01	0.00	0.00	0.01	0.00
총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감면	67.34	0.10	64.96	32.25	0.04	11.75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78	-	1.72	2.20	-	0.80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0.61	-	0.59	2.29	-	0.83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0.01	-	0.01	0.00	-	0.0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64.40	-	62.12	25.86	-	9.40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0.00	-	0.00	0.01	-	0.00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0.00	-	0.00	0.00	-	0.00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0.02	-	0.02	0.28	-	0.10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면제	0.00	0.02	0.00	0.00	0.00	0.00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	0.01	0.00	-	0.00	0.00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	0.13	-	0.12	1.25	-	0.45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0.02	0.01	0.02	0.07	0.00	0.03
농업회사법인 감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	0.36	0.02	0.34	0.23	0.00	0.0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0.02	0.03	0.02	0.02	0.03	0.02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0.00	-	0.00	0.02	-	0.01
기타	0.00	0.02	0.00	0.02	0.00	0.01
<b>세액공제</b>						
총 세액공제	30.74	98.01	33.12	65.10	89.03	80.33
총 최저한세 적용제외 세액공제	12.74	23.13	13.11	38.33	56.41	49.83

<표 II -10>의 계속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수혜기업 수(개)			수혜금액(백만원)		
	중소 기업	일반 기업	전체 기업	중소 기업	일반 기업	전체 기업
	수혜기업 수 비중(%)			수혜금액 비중(%)		
외국납부세액공제	0.26	7.28	0.51	4.09	56.39	37.37
재해손실세액공제	0.01	-	0.01	0.01	-	0.00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0.56	-	10.19	33.52	-	12.19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0.04	-	0.04	0.54	-	0.20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0.01	0.13	0.01	0.00	0.00	0.00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86	9.76	2.14	0.16	0.02	0.07
기타	0.00	5.96	0.21	0.00	0.00	0.00
총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	18.00	74.89	20.01	26.77	32.63	30.50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1.26	1.97	1.29	1.74	0.21	0.77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0.02	0.14	0.03	0.01	0.00	0.0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	0.74	0.03	-	0.30	0.19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0.00	11.67	0.41	0.01	13.71	8.73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0.61	0.02	-	6.36	4.04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0.02	-	0.01	0.00	-	0.00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0.00	0.05	0.00	0.01	0.07	0.04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0.03	1.06	0.07	0.06	0.35	0.25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0.06	-	0.06	0.09	-	0.03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0.04	2.71	0.14	0.06	0.42	0.29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0.20	2.17	0.27	0.21	0.52	0.41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0.06	2.32	0.14	0.49	0.43	0.45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0.03	1.11	0.07	0.07	0.12	0.10

<표 II -10>의 계속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수혜기업 수(개)			수혜금액(백만원)		
	중소기업	일반기업	전체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전체기업
	수혜기업 수 비중(%)			수혜금액 비중(%)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0.03	3.03	0.13	0.07	0.28	0.20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0.24	5.90	0.44	1.09	4.41	3.21
의약품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 세액공제	0.01	0.39	0.02	0.12	0.23	0.19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0.00	-	0.00	0.01	-	0.0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0.01	0.11	0.01	0.09	0.10	0.09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 세액공제	-	-	-	-	0.14	0.09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0.16	1.25	0.20	0.33	1.13	0.84
산업수요맞춤형고교등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0.00	0.02	0.00	0.00	0.00	0.00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0.01	0.02	0.01	0.00	0.00	0.00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03	0.49	0.05	0.01	0.01	0.0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10	0.78	0.12	0.12	0.04	0.07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29	0.30	0.29	0.36	0.04	0.1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7.80	11.76	7.94	16.26	3.46	8.12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0.11	1.02	0.14	0.31	0.17	0.22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01	-	0.01	0.00	-	0.0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7.01	0.06	6.77	5.07	0.01	1.85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0.11	-	0.11	0.01	-	0.00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	0.18	23.81	1.01	0.00	0.00	0.00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세무법인)	0.12	0.25	0.12	0.07	0.00	0.03

<표 II -10>의 계속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수혜기업 수(개)			수혜금액(백만원)		
	중소 기업	일반 기업	전체 기업	중소 기업	일반 기업	전체 기업
	수혜기업 수 비중(%)			수혜금액 비중(%)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0.06	0.72	0.08	0.06	0.02	0.04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0.00	-	0.00	0.00	0.00	0.00
대학 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	0.01	0.00	-	0.01	0.00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 현장훈련수당세액공제	0.00	0.01	0.00	0.00	0.00	0.00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0.00	0.04	0.00	0.00	0.01	0.00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0.01	0.17	0.01	0.00	0.05	0.03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0.00	0.11	0.01	0.00	0.01	0.01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0.00	0.02	0.00	0.00	0.00	0.00
기타	0.00	-	0.00	0.00	0.00	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1

- 다음으로 중소기업 대상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고용, 투자, 연구개발 등 긍정적 기업행태와 연계된 조세지원제도와 중소기업만을 수혜대상으로 설정한 주요 조세지원제도만으로 한정하여 제도 활용도를 비교함
- 법인사업자의 본 제도 활용도는 고용, 투자,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출 제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수혜기업 수 비중은 67.6%로 다음으로 활용도가 높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1.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본 제도의 수혜금액 비중은 28.3%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36.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 -11〉 고용, 투자, 연구개발 관련 세액감면 및 공제별 수혜기업 수와  
수혜금액 비중: 법인세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중소기업		
	수혜기업 수(개)	수혜금액(백만원)	
2020년 신고연도 (세액감면+세액공제)	323,355	3,490,704	
	수혜기업 수 비중(%)	수혜금액 비중(%)	
<b>세액감면(%)</b>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67.57	28.30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96	5.56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31	3.06	
•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0.64	2.50	
•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0.01	0.00	
<b>세액공제(%)</b>			
고용	산업수요맞춤형 고교 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0.00	0.00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0.01	0.00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03	0.0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10	0.14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30	0.3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8.18	17.80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0.11	0.34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01	0.0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7.36	5.54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0.12	0.01
투자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1.32	1.91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0.04	0.07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0.21	0.2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0.07	0.54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0.03	0.08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0.03	0.08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0.25	1.20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0.01	0.13

<표 II -11>의 계속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중소기업	
		수혜기업 수(개)	수혜금액(백만원)
<b>세액공제(%)</b>			
		수혜기업 수 비중(%)	수혜금액 비중(%)
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0.00	0.01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 세액공제	0.00	0.00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0.17	0.37
연구개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1.09	36.70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세액공제	0.05	0.59

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투자에 대한 공제제도로 분류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1 바탕으로 저자 계산

- 다음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고용, 투자, 연구개발 등 긍정적 기업행태와 연계된 조세지원제도와 중소기업만을 수혜대상으로 설정한 주요 조세 지원제도만으로 한정하여 제도 활용도를 비교함
- 개인사업자의 본 제도 활용도는 고용, 투자,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출 제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법인사업자에 비해서도 본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으로 파악됨
  - 수혜기업 수 비중은 87.9%로 다음으로 활용도가 높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4.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본 제도의 수혜금액 비중 역시 47.3%로 고려된 모든 세액감면 및 공제 제도 중 가장 활용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30.0%),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0.8%) 순으로 수혜금액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II -12〉 고용, 투자, 연구개발 관련 세액감면 및 공제별 수혜 개인사업자 수와 수혜금액 비중: 소득세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감면 적용 인원		감면액		
	인원 수	인원 비중	감면액	감면액 비중	
2020 귀속연도 (세액감면+세액공제)	1,079,815	100	2,112,992	100	
<b>세액감면</b>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949,301	87.91	999,484	47.30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5,983	3.33	228,992	10.84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5,307	3.27	216,668	10.25	
•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676	0.06	12,324	0.58	
•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0	0.00	0	0.00	
<b>세액공제</b>					
고용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589	0.05	4,246	0.20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648	0.06	5,237	0.2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47,607	4.41	633,548	29.98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370	0.03	4,856	0.2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2,038	2.97	130,370	6.17
투자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2,671	0.25	6,941	0.33
	연구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63	0.01	431	0.02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185	0.02	1,792	0.08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10	0.00	23	0.00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497	0.05	1,512	0.07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42	0.00	338	0.02
연구개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150	0.01	719	0.03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9661	0.89	94503	4.47

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투자에 대한 공제제도로 분류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1 바탕으로 저자 계산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은 여러 조세지원제도 중 본 제도를 가장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특히 개인사업자의 본 제도 의존도가 매우 높았으며, 기업당 평균수혜금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수혜기업 수 측면에서 본 제도 활용도가 수혜금액 측면에서의 활용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본 제도 외 중소기업이 활발히 활용하는 제도는 대부분 본 제도와 중복적용이 허용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본 제도와 중복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제도의 활용도를 본 제도가 저해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는 모두 본 제도와 중복적용이 허용되고 있음

## 2. 해외 제도

-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관련 조세제도에 대해 논의함
  - 먼저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구분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법인세율 체계, 최저한세율 운용 현황 등을 제시함
    - 본 제도는 조세특례제도이지만 수혜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중소기업이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세율체계 및 최저한세율 체계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해외 주요국 제도에서도 세율체계 및 최저한세율 운용 현황을 논의함

### 가. 중소기업 구분 기준

#### 1)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구분 기준

-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중견기업법」,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의 4개의 법률과 제도에 의해 대기업·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5개 그룹으로 기업을 분류하고 있음
  -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니면서,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의미함
  - 「산업발전법」에서 2011년 7월 처음 규정하였으며, 이후 「중견기업법」을 제정하여 중견기업의 기준을 재정립
- 중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소기업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평균 매출액 이하인 기업을 의미
- 다만, 세법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표 II -13> 기업규모 관련 관련법 및 정의

기업구분	관련법	정의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중소기업기본법	1. 「중소기업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2. 「중견기업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3.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 금융 및 보험, 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이 아닌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이하 및 일부 업종 제외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이하, 자산총액 5천억원 이하 및 일정한 독립성 기준 충족
	조세특례제한법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기준을 준용하나, 소비성 서비스업이 제외되고 주업종 판단기준 등이 상이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기준 이하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main.html>, 검색일자: 2022. 3. 3.

-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규정함
  - 여기서 기업은 법인(「상법」상 회사 등)과 개인사업자를 의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아니라 해도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 가능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도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가능
  - 타 법령에서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 가능
    - 이는 해당 법령의 적용에만 한정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의미하지 않는다(중소벤처기업부, 2018)
- (중소기업 구분기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구분기준은 매출액, 자산총액 및 독립성 기준이 적용되는데 구체적인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 구분기준: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의 구분기준으로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상한 기준이 적용됨
- 중기업을 충족하는 평균 매출액 상한 기준은 40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의 5개 구간으로 구분
  - 소기업을 충족하는 평균 매출액 상한 기준은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의 5개 구간으로 적용
  -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제조업과 수도업 일부,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일부는 중분류 기준이 적용
- (중소기업 구분기준: 자산총액 기준) 중소기업 규모의 또 다른 기준인 자산총액은 업종에 관계없이 5,00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모든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평균 매출액 상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함
  - 여기서 자산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
    - 직전 사업연도가 있는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

-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분할·합병한 기업: 창업일·합병일·분할일 현재의 자산 총액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하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업종으로 간주
  - 주업종 판단은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하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규모 기준을 적용할 때는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중소기업 구분기준: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 구분 기준에서 독립성 기준은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일정 기준에 맞아야 함
- 독립성 기준은 크게 4가지로 판단하는데, 4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②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 ③ 관계기업 간에 합산한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기준을 초과한 경우
    -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를 받은 지 3년이 경과된 회사 등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독립성 기준은 주식 등의 출자 관계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기업만 적용
    - 다만,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은 법인 형태를 갖추었다더라도 예외적으로 독립성 기준 중 관계기업 제도를 적용받지 않음
  - 또한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및 M&A 활성화를 위해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지 않음

〈표 II -14〉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업종	모든 업종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주업종	평균매출액이 큰 업종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규모 기준에 따른 평균매출액 - 자산총액 5천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규모 기준에 따른 매출액 - 자산총액 5천억원
독립성 기준	- 공시대상기업제한기업집단 제외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하면서 최대출자자인 회사 제외 - 관계기업 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 1항 제3호) -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유예기간	- 사유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최초 1회에 한함) - 유예기간 제외 사유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과의 합병 •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 이미 유예를 적용받은 적 있는 경우	- 사유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최초 1회에 한함) - 유예기간 제외 사유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과의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독립성 기준 미충족(관계기업은 허용)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 후 2년 이내 규모기준 초과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2),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p. 20.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구분기준)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별도의 중소기업 구분기준을 두고 있음
  - 규모 기준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준용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당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또한 소비성 서비스업 영위 기업은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며, 주업종 판단 기준도 상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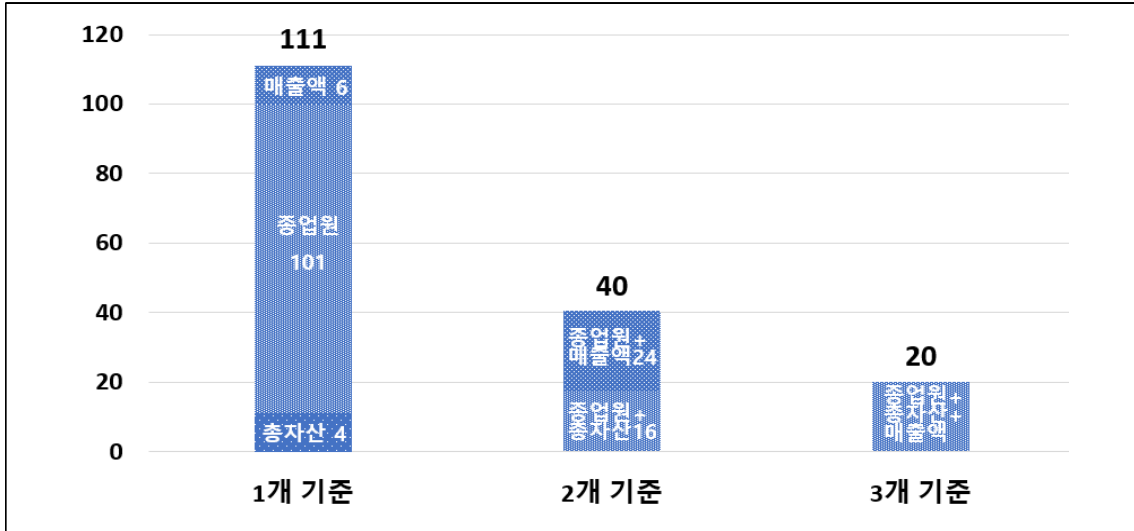
## 2)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구분 기준

- 세계 각국은 기업규모별 재정지원이나 조세지원 등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일정기준에 따라 기업 규모를 구분하고 있음

- 제한된 자원 내에서 정책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규모를 구분(정은혜, 2021)
  - 특히, 정부가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중소기업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Sakallaries, 2007)
- 해외 주요국은 대체로 종업원 수를 중소기업 범위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총자산 및 매출액(turnover) 등을 추가로 고려하는 경우도 존재함
- OECD 국가 중 중소기업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는 국가는 28개 국가이며 법적인 규정 없이 통계적인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국가는 4개 국임
- 종업원 수로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단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MSME Economic Indicators(2019)가 조사한 171개 국가 중 약 65%(111개국)가 1개의 기준을 사용하고, 이 중 101개 국가가 종업원 수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을 구분
    - 총자산 기준 하나만을 적용하는 국가: 인도, 볼리비아, 세네갈 및 베냉 등 4개 국가
    - 매출액 기준만을 적용하는 국가: 칠레,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나마 등 6개국
  - 또한 2개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을 구분하는 국가는 약 23.4%(40개 국가)이며, 이 중 종업원 수와 매출액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24개 국가, 종업원 수와 총자산 기준을 적용하는 16개 국가가 존재
  - 종업원 수, 총자산 및 매출액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는 약 14%인 20개 국가인 것으로 파악
    - 중국, 대만,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도미니카공화국 등 20개 국가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총자산과 매출액 등 2개 기준을 적용하지만, 소상공인 판단 시 종업원 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3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MSME Economic Indicators(2019)에서 제시

[그림 II -4] 해외국의 중소기업 분류기준

(단위: 국가 수)



자료: MSME Economic Indicators 2019, <https://www.smefinanceforum.org/data-sites/msme-country-indicators>, 검색일자: 2022. 3. 10.

- 본 소절에서는 해외 주요국 중 미국, 영국, 일본 및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구분 기준을 검토해 보고자 함

가) 미국

- 미국은 조세법 적용에 있어서 소기업(small business)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각 조세지원제도에 따른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SBA)의 기준을 따르고 있음
  - 기업규모를 분류하는 몇 가지 기준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그 기준을 정하는 합리적인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 이렇게 조세법에서 소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한 이유는 SBA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기업(small firm)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
    - SBA에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프로그램에 적합한 기업을 결정하기 위한 규모기준
    - 소기업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고, 해당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것(one which is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and which is not dominant in its field of operation)’으로 정의4)

□ SBA는 기업규모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업원 수, 총자산 및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각 업종별 기준은 상이하지만 제조업에 대해서는 평균 종업원 876명, 비제조업에 대해서는 연평균 매출액 1,960만달러 그리고 금융업(상업은행, 저축은행, 신용조합 및 신용카드발행업)에는 총자산 600백만달러 기준을 적용
- 세부적인 산업별 소규모 사업에 대한 기준은 일정주기로 개정되고 Table of Small Business Size Standards matched to NAICS(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에 제시되며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II -15> 미국 제조업 세부 업종별 소기업 기준(매출액 기준)

(단위: 백만달러)

제조업 세부업종	매출액 기준
식품 제조	907.0
음료 및 담배 제품 제조	1,107.1
섬유 제조	857.1
섬유제품 제조	850.0
의류 제조	714.3
가죽 및 관련 제품 제조	687.5
목재제품 제조	678.6
제지 제조	954.5
인쇄 및 관련지원 활동	687.5
석유 및 석탄 제품 제조	800.0
화학 제조	956.9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제조	796.9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861.1
1차금속 제조	875.0
가공금속제품 제조	736.1
기계 제조	826.9
컴퓨터 및 전자제품 제조	937.5
전기장비, 가전제품 및 부품 제조	944.4
운송장비 제조	1,222.2
가구 및 관련 제품 제조	791.7
기타제조	703.1

자료: SBA Table of Size Standards Effective Aug 19, 2019, <https://www.sba.gov/document/support-table-size-standards>, 검색일자: 2022. 3. 7.

4) SEC. 3.(15 U.S.C. 632) DEFINITIONS.

- 이렇게 SBA가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와 산업별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함
  - 중소기업 범위는 산업별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 특히, SBA는 5년마다 기업 규모를 변동시키는 요소인 수입, 순이익, 자산 등에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플레이션이 규모 기준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중소기업 범위를 재산정
  
- 또한,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sup>5)</sup>에서도 통계목적으로 상시 종업원 수 500인 미만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여 통계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종업원 수 20인 미만의 기업을 영세기업(Very Small-Sized), 종업원 수 20~99인의 기업을 소기업(Small Sized), 종업원 수 100~499인의 기업을 중기업(Medium Sized)으로 구분
  - 그러나 이 기준은 정책 대상이 아닌 통계분석 목적에만 사용
  
- 한편, 현행 미국 조세법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구분 기준은 없으나 기업 유형 중 S법인이 소기업법인으로서 조세상 취급을 받고 있음
  - 법인유형이 C법인과 S법인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S법인이 소규모의 폐쇄적인 법인을 의미
    - S법인의 사업연도는 calender year를 사용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사업상의 목적을 명시해야 함
    - 또한 S법인은 조세법상 취급에 있어서 파트너십과 유사
  - S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고, 주주요건이 있음
    - 국내법인이면서 S법인으로 법인설립 및 법인형태 변경 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며, 주주는 국내 거주자로서 개인, estate, 신탁, 파트너십 등이 가능하고 법인은 주주가 될 수 없음(주주는 100명 미만)
    -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

5) Census Data(<https://data.census.gov/cedsci/>)

나) 영국

- 영국은 조세법에 별도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설정하지 않으며, 각 조세지원별 대상을 기업규모별로 구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중소기업법적 성격의 법률은 없으나, DBEIS(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통계는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을 매출액, 총자산 및 종업원 수 기준으로 구분
  - DBEIS의 중소기업 구분기준<sup>6)</sup>
    - 소기업: 매출액 5.6백만파운드 미만, 총자산 2.8백만파운드 미만 그리고 종업원 50명 미만
    - 중기업: 매출액 22.8백만파운드 미만, 총자산 11.40백만파운드 미만 그리고 종업원 250명 미만

<표 II -16> 영국의 중소기업 범위

(단위: 백만파운드)

분류	종업원수	총자산	매출액
소기업	50인 미만	2.8 미만	5.6 미만
소그룹		자본규모 2.8 미만 또는 자산규모 3.36 미만	순매출액 5.6 미만 또는 총매출액 6.72 미만
중기업	250인 미만	11.40 미만	22.8 미만
중그룹		자본규모 11.40 미만 또는 자산규모 13.68 미만	순매출액 22.8 미만 또는 총매출액 27.36 미만

자료: DBEI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5775/corporate-directors-si-impact-assessment.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5775/corporate-directors-si-impact-assessment.pdf), 검색일자: 2020. 4. 8.

다) EU

- EU는 종업원 수, 총자산 및 매출액, 독립성의 4가지 기준으로 기업 규모를 구분하고, 이 중 최소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병행주의 방식임
  - 이렇게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이유는 EU 위원회와 회원국, 유럽투자은행(EIB), 유럽투자기금(EIF) 등이 중소기업 정책을 지원할 때, 국가와 지역, 기업 간 정책의 효과가 왜곡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나타내기 위한 것임

6) DTI는 회사법상 회계감사 면제 조항에서 외부회계감사 면제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있음.

- 4가지 기준 중 독립성 기준과 종업원 수 기준은 EU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설정하는 필수적인 지표이며, 매출액과 총자산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기업의 종업원 수와 매출액은 중기업, 소기업 및 영세기업을 구분하는 데 이용되며 이 기준은 연결회사가 아닌 개별 회사의 경우에만 적용
  -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계열사일 경우에는 모기업의 종업원 수, 총자산 및 매출액 등도 포함
  
- 이러한 기준에 따라 EU는 현재 기업을 영세기업(Micro), 소기업(Small), 중기업(Medium-sized), 대기업(Large)으로 구분하고 있음
  - EU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는 25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연간 매출액이 5,000만 유로 또는 총자산이 4,3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표 II -17> EU의 중소기업 범위

구분	종업원 수	총자산	매출액
영세기업(Micro)	10인 미만	2백만유로 이하	2백만유로 이하
소기업(Small)	10~50인 미만	1천만유로 이하	1천만유로 이하
중기업(Medium-sized)	51-250인 미만	4.3천만유로 이하	5천만유로 이하

라) 일본

- 일본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의 기본이념, 기본방침, 중소기업 범위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에서의 중소기업자는 개별 중소기업 시책의 기본적인 정책 대상을 원칙적으로 정한 것이며, 각 법률과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자 범위는 달라질 수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범위는 업종에 따라 <표 II-18>과 같이 분류하며, 자본금액 또는 출자총액, 상시 종업원 수 중 하나를 충족하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함
  -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억엔 이하인 회사 및 상시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것

-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엔 이하인 회사 및 상시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회사 및 개인을 도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것
-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엔 이하인 회사 및 상시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 서비스업에 속한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것
- 자본금 및 출자총액이 5천만엔 이하인 회사 및 상시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인 회사 및 개인으로 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것

<표 II -18> 일본의 중소기업 범위

구분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소기업
	자본금	종업원 수	종업원 수	종업원 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및 기타	3억엔 이하	300인 이하	20인 이하	5인 이하
도매업	1억엔 이하	100인 이하	5인 이하	
서비스업	5천만엔 이하			
소매업		50인 이하		

자료: 중소기업기본법(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Basic Act)

- 한편, 「소규모기업공제법」에서는 소규모기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평상시 고용한 종업원의 수가 20인 이하의 개인이고, 공업, 광업, 운송업 그 밖의 업종(상업, 서비스업 제외)에 속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서 운영한 것
  - 평상시 고용한 종업원의 수가 5인 이하의 개인이고, 상업 또는 서비스업에 속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서 운영한 것

마) 대만

- 대만은 종업원수와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함
  - 제조업, 건설업, 광업은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 8,000NT\$(US\$2.42million) 미만이고 종업원 수가 200인 미만인 기업
  - 농림어업, 전기, 가스, 수도업, 무역업, 통신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은 직전연도의 매출수입(sales revenue) 1억 NT\$ 미만 또는 종업원 수는 100인 미만인 기업
  - 영세기업은 종업원수 5인 미만인 기업을 의미

<표 II -19> 대만의 중소기업 범위

업종	기준
제조업, 건설업, 광업, 토석채취업	납입자본금 8천만 NT\$ 이하 또는 상시 종업원 200인 미만
상기 외 업종	전년도 영업 총수익 1억 NT\$ 이하 또는 상시 종업원 100인 미만

자료: KBIZ중소기업중앙회(2020),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

바) 싱가포르

- 싱가포르에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기본법」에 상응하는 법률은 없으나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항을 「회사법(Company Act)」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공기업(Public Company)부터 소규모 유한책임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외국회사의 싱가포르 지점까지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회사법」에 따라 구분
  - 「회사법」 외에는 자영업자(sole proprietor)나 합자회사(Partnership)를 규정한 「사업등록법(Business Registration Act)」, 유한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을 규정한 「유한책임파트너십법(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ct)」, 유한책임조합(Limited Partnership, LP)을 규정한 「합자회사법(Limited Partnership Act)」, 투자신탁 등의 영업신탁(Business Trust)을 규정한 「사업신탁법(Business Trust Act)」, 사회단체를 규정한 「사회단체법(Societies Act)」, 자선단체를 규정한 「자선단체법(Charities Act)」이 존재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Industry, MTI) 관할의 표준생산성혁신청(The Standards, Productivity and Innovation Board, SPRING Singapore)은 2011년 4월 1일에 중소기업에 대한 구분기준을 변경하였음
  - 중소기업은 매출액, 제조·비제조, 자본 비율 등의 기준에 의해 정의
    - 연간 매출액이 1억 싱가포르 달러 이하 또는 종업원이 200명 이하
    - 제조업·비제조업 중 어느 한쪽에 속해 있는지 상관없이, 3개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서의 자격을 갖는 택일주의
    - 싱가포르 자본이 30% 이상

## 나. 해외 주요국의 조세법상 중소기업 지원제도

□ 본 소절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현황을 제시함

### 1) 미국

□ (R&D 세제지원) 미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는 일반연구세액공제(Regular Research Credit; RRC), 대체간편세액공제(Alternative Simplified Credit; ASC), ③ 에너지연구세액공제(Energy Research Credit), 기초연구 세액공제(Basic (or University) Research Credit) 등 4가지로 구성됨<sup>7)</sup>

- 일반연구세액공제와 대체간편세액공제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적으로 적용함
- 에너지연구 세액공제와 기초연구 세액공제는 기초연구와 에너지연구에 투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일반연구세액공제 또는 대체간편세액공제에 추가적으로 적용함

□ 일반연구세액공제 중 연구개발비 증가분의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운 적격 소기업(Qualified Small Business)에 대한 혜택이 있음<sup>8)</sup>

- 소규모 창업기업은 세액공제 25만달러 범위 내에서 급여세액(payroll tax liability)에서 공제가 가능
  - 급여세액공제는 사회보장세의 고용주부분에 대해서만 적용
- 여기서, 적격 소기업의 기준은 매출액 발생이 5년 미만이면서 당해연도 매출액이 5백만달러 미만인 기업

□ (감가상각제도) 미국은 기본적인 감가상각제도인 수정가속상각제도(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MACRS), 특별비용공제(Election to expense certain depreciable business assets)와 보너스상각(Special allowance for certain property)과 같은 가속상각 제도를 두고 있음

7) 미국의 R&D 세액공제제도는 Tax Foundation의 “Reviewing the Federal Tax Treatment of Research & Development Expenses(2021)”을 기초로 작성함

8) 미국 국세청(IRS), “Qualified Small Business Payroll Tax Credit for Increasing Research Activitie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qualified-small-business-payroll-tax-credit-for-increasing-research-activities>, 검색일자: 2021. 12. 9.

- 상기 가속상각제도 모두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납세자가 선택하면 취득 첫해에 한하여 추가적인 비용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이며, 특별비용공제 제도는 영구적 규정이지만 보너스상각 제도는 한시규정
  - 감가상각비의 산출은 특별비용공제, 보너스상각, 당기 MACRS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순서로 이루어짐<sup>9)</sup>
- 특별비용공제 제도는 소기업의 조세부담 경감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해 195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형자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취득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이상엽 등, 2020)
- 특별비용공제는 금액 및 소득 한도규정을 두고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받을 수 없음
  - (금액한도) 납세자별 적용되는 연간 한도금액로서 2021년에는 105백만달러이며, 동일 지배그룹 구성원은 금액한도를 합산하여 계산
  - (소득한도) 특별비용공제는 해당 연도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특별비용공제 전)을 한도로 적용되며,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이 없는 납세자는 특별비용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2) 영국

- (R&D 세제지원) 영국의 R&D 세제지원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만, 연구개발비의 범위와 조세지원 방식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존재함<sup>10)</sup>
- 대기업은 세액공제방식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추가소득공제 방식
  - 중소기업의 경우 용역연구비용의 65%만 적격비용에 해당
-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금감면(SME R&D relief)제도는 적격비용에 대해 130%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임<sup>11)</sup>

9) IRS, 2021.

10) OECD, “R&D Tax Incentives: United Kingdom, 2021”, <https://www.oecd.org/sti/rd-tax-stats-united-kingdom.pdf>, 검색일자: 2022. 3. 26.

11) 영국 정부(GOV.UK),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relief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ttps://www.gov.uk/guidance/corporation-tax-research-and-development-tax-relief-for-small-and-medium-sized->

- 일반공제 100%에 추가로 130%의 특별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적격비용에 대해 총 230%를 공제
-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준을 종업원 수, 매출액 및 총자산 기준을 적용<sup>12)</sup>
  - 관계회사 및 연결재무제표상으로 종업원 수가 500명 미만이고 매출액이 100백만파운드 이하이면서 총자산이 86백만파운드 이하인 기업

### 3) 독일

- 독일은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감가상각에 추가하여 20%의 상각률로 5년간 가속상각할 수 있는 가속상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sup>13)</sup>
  - 가속상각의 대상인 중소기업이란 순자산 23만 5천유로 이하 또는 과세소득 10만 유로 이하인 기업
    - 농업과 임업의 경우에는 순자산이 12만 5천유로 이하인 기업
  - 중소기업은 통상적인 감가상각에 추가하여 20%의 상각률로 취득연도와 이후 4개년 동안 가속상각이 가능
  - 가속상각을 적용받는 법인은 최소한 취득연도의 다음연도까지 해당 자산을 국내에서 사업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

### 4) EU<sup>14)</sup>

- EU 회원국 중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조세지원<sup>15)</sup>을 시행하는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및 스페인 등 12개 국가로 나타남
  - 벨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누진세율 체계, 중소기업에 대한 명목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

enterprises, 검색일자: 2022. 1. 4.

12) <https://rmdtax.co.uk/rd-tax-credits/eligible-costs/sme/>

13) IBFD-Germany-Corporate Taxation-Country Tax Guides-1. Corporate Income Tax 1.9.1. Accelerated depreciation (Last Reviewed: 1 April 2020).

14) EU 회원국의 중소기업 지원세제는 Center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2017)의 자료를 참조하였음

15) 조세지원은 누진세율체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다 상세한 세율체계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가로 논의함

- 프랑스: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누진세율 체계, 법인세의 부가세 면제, 지방소득세 면제, 중소기업의 신규 취득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 헝가리: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누진세율 체계, 지방소득세 면제, 이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리투아니아: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누진세율 체계, 영세기업에 대한 감가상각 재량 허용
  - 룩셈부르크: 지방소득세 17,500유로 면제
  - 몰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네덜란드: 투자 총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 폴란드: 중소기업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 포르투갈: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누진세율 체계, 누진적 부가세 면제, 명목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 스페인: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누진세율 체계, 지방소득세 면제,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세액공제, 가속상각공제
- 또한, EU 회원국 중 일반기업과 다른 중소기업의 별도 법인세율 체계를 갖추고 있거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존재함
-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6개 국가가 존재
  - 특히, 법인세의 부가세나 지방소득세까지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국가는 프랑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 4개 국가

## 5) 일본

- (R&D 세제지원) 일본은 실험연구비 총액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sup>16)</sup> 실험연구비 세액공제제도와 특별실험연구비 세액공제제도로 나뉘고, 법인은 이 두 가지 세액공제제도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음
- 실험연구비 세액공제제도는 적용대상 법인이 중소기업 등인지 여부에 따라 다시 일반형과 중소기업기반세제형으로 구분

16) 기존에는 실험연구비 증가액을 기준으로 가산공제를 허용하는 증액형, 고수준형 실험연구비 공제제도가 있었으나 각각 2017, 2019년 일몰종료함

- 중소기업기본세제형으로서 중소기업이 실험연구비를 지출한 경우, 실험연구비 증가 비율에 따라 12~17%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sup>17)</sup>
  - 최대공제율은 12%이나 2023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7%의 공제율을 인정
    - 일반기업이 2~14%인데 반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
  - 여기서 중소기업 구분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 기준이 적용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1억엔 미만이며 상용근로자 수가 1,000명 이하인 법인(단 수탁법인은 제외)
    -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 총수·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대규모 법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중소기업자로 보지 않음<sup>18)</sup>
  
- (감가상각) 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에 따라 취득가액이 10만엔 미만인 소액자산은 즉시상각할 수 있음<sup>19)</sup>
  -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이 10만엔 미만인 유·무형자산의 취득가액 전액을 손금으로 정리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계상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한 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 즉시상각할 수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이 2006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사이에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자산은 취득가액이 30만엔 미만이라면 동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여기서 중소기업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엔 이하의 법인이거나 상근 종업원 수가 1천명 이하인 법인이 대상임
  - 그러나 다음의 법인은 동 세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① 대기업(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1억엔을 초과하는 법인, 대법인(※2)의 100% 자법인 등)에서 2분의 1 이상의 출자를 받는 법인

17) 일본 국세청, “No.5444 中小企業技術基盤強化税制”,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444.htm>, 검색일자: 2022. 1. 27.

18) 대규모법인이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엔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 또는 출자를 갖지 않는 법인 중 상용근로자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법인, 대법인(①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5억엔 이상, ②상호회사 및 외국상호회사 중 상시근로자가 1,000명을 초과하는 법인, ③수탁법인)에 의해 완전 지배되는 법인 등을 의미함. 단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는 제외함(일본 국세청, “中小企業者等が機械等を取得した場合の特別償却の対象となる中小企業者の範囲”, <https://www.nta.go.jp/law/shitsugi/hojin/27/02.htm#:~:text=%E3%81%93%E3%81%AE%E5%A4%A7%E8%A6%8F%E6%A8%A1%E6%B3%95%E4%BA%BA%E3%81%A8,%E6%A0%AA%E5%BC%8F%E4%BC%9A%E7%A4%BE%E3%82%92%E9%99%A4%E3%81%8D%E3%81%BE%E3%81%99%E3%80%82>, 검색일자: 2022. 1. 20.)

19) 일본 중소기업의 『2020年度版中小企業施策利用ガイドブック』 少額減価償却資産の特例, p. 253., [https://www.chusho.meti.go.jp/pamflet/g\\_book/2020/](https://www.chusho.meti.go.jp/pamflet/g_book/2020/)

- ② 2이상의 대규모법인으로부터 3분의 2 이상의 출자를 받는 법인
- ③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500명을 초과한 법인
- ④ 동 세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의 평균소득금액(전3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평균)이 연 15억엔을 넘는 법인
- ⑤ 연결법인(자본금 5억엔 이상의 법인, 상호 법인·외국 상호 회사(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0명 초과) 또는 수탁 법인
- 사업연도별로 소액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의 합계액 300만엔(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엔을 월할 비례한 금액)을 한도로 전액 손금산입

- 법인세법에서는 자본금 1억엔 이하인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음
  - 자본금 1억엔이 넘는 법인에는 30% 세율을 적용하고 자본금이 1억엔 이하인 법인에는 과세소득 800만엔까지는 22%, 800만엔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에는 30%를 적용

#### 다.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

- 본 소절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혜택이 존재하는지 살펴봄
  - 본 제도는 비교적 간단한 요건을 만족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무조건적인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본 제도를 평가함에 있어 기준조세체계에서의 중소기업 우대 정책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해외 주요국의 최고세율) OECD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나타낸 <표 II-20>에서 콜롬비아가 35%로 가장 높고 이어 호주, 코스타리카 및 멕시코가 30%, 뉴질랜드 28% 그리고 네덜란드 25.8 순을 나타냄
  - 가장 낮은 국가는 스위스 8.5%(19.7%), 헝가리 9%(9%), 칠레 10%(10%), 아일랜드 12.5%(12.5%)
  - 우리나라는 25%(27.5%)로 OECD 평균 21.4%(23.1%)보다 높으며 7번째로 높은 그룹에 속함

<표 II -20> OECD 국가 법인세 최고세율(2022년 기준)

(단위: %)

순위	국가	법인세율	순위	국가	법인세율
1	콜롬비아 <sup>1)</sup>	35(35)	20	미국 <sup>8)</sup>	21(25.8)
2	호주	30(30)	20	슬로바키아	21(21)
2	코스타리카	30(30)	23	스웨덴	20.6(20.6)
2	멕시코	30(30)	24	에스토니아	20(20)
5	뉴질랜드	28(28)	24	핀란드	20(20)
6	네덜란드	25.8(25.8)	24	아이슬란드	20(20)
7	한국	25(27.5)	24	라트비아	20(20)
7	캐나다 <sup>2)</sup>	25(26.21)	28	체코	19(19)
7	프랑스 <sup>3)</sup>	25(25.8)	28	폴란드	19(19)
7	오스트리아	25(25)	28	슬로베니아	19(19)
7	벨기에 <sup>4)</sup>	25(25)	28	영국	19(19)
7	스페인	25(25)	32	룩셈부르크 <sup>9)</sup>	17(24.9)
13	이탈리아 <sup>5)</sup>	24(27.8)	33	독일 <sup>10)</sup>	15.8(29.8)
14	일본 <sup>6)</sup>	23.2(29.7)	34	리투아니아	15(15)
15	이스라엘	23(23)	35	아일랜드	12.5(12.5)
15	터키	23(23)	36	칠레 <sup>11)</sup>	10(10)
17	덴마크	22(22)	37	헝가리	9(9)
17	그리스	22(22)	38	스위스 <sup>12)</sup>	8.5(19.7)
17	노르웨이	22(22)	OECD평균		21.4(23.1)~
20	포르투갈 <sup>7)</sup>	21(31.5)			

주: 1. ( ) 안은 법인 부가세 및 지방세 최고세율을 포함함

2. 순위는 국제 기준임

3. 각 국가별 법인세율 산출 시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 1) 콜롬비아는 2018년부터 OECD 회원국으로 편입한 바 본 표에 2018년 세율부터 작성하였으며, 지방세 최고세율 1%의 비용·세액공제 적용 후 실질세율 약 0.5%를 반영함
- 2) 캐나다는 1995~2007년까지는 1.12%의 연방정부 부가세가 포함됨
- 3) 프랑스는 EUR 763,000을 초과하는 법인세액에 대해 3.3%의 법인 부가세(social surcharge)가 부과되고 지방세는 없음. 2011~2015년에는 매출액 250백만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임시 부가세가가 추가로 부과된 연혁이 있음
- 4) 벨기에는 2019년 2%(2018년 이전 3%)의 부가세(crisis contribution)가 포함되었으나, 2020년 폐지되었고 지방세는 없음
- 5) 이탈리아는 지역사업세(Imposta Regionale sulle Attività Produttive) 3.9%(2007년까지는 4.25%)가 포함됨
- 6) 일본은 법인세액에 대하여 10.3%의 지방법인세와 7%의 법인주민세가 부과되고 소득에 대하여 3.6%의 사업세가 부과됨
- 7) 포르투갈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부가세(최고세율) 9%(2017년 이전 7%, 2012년 5%, 2011년 2%)와 1.5%의 지방세(municipal surcharge)가 포함됨
- 8) 미국의 경우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소득세 가중평균세율이 포함됨
- 9) 룩셈부르크는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 7%와 소득에 대한 지방세(룩셈부르크시) 6.75%가 포함됨
- 10) 독일의 경우 법인세액에 대한 5.5%(2004년 이후)의 법인 부가세와 소득에 대한 14.06%의 지방세가 포함됨
- 11) 칠레는 COVID-19의 영향으로 2020~2022년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 세율을 25%에서 10%로 인하함
- 12) 스위스는 대표적으로 취리히시의 지방세를 반영함

자료: OECD Tax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78166>, 검색일자: 2022. 5. 29.

- (법인세율 체계)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를 보면, 대부분 단일세율체계 또는 2단계 세율체계를 나타내고 있음
  - 1단계 단일세율 체계의 국가는 총 26개 국가로서 덴마크,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페인, 영국 및 미국 등 주요국
  - 이들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율체계 없이 일반 법인과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

〈표 II -21〉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2022년 기준): 단일 세율체계(26개국)

(단위: %, 부가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세율)

국가명	세율(%)	국가명	세율(%)
오스트리아	25	멕시코	30
콜롬비아	35	뉴질랜드	28
체코	19	노르웨이	22
덴마크	22	슬로베니아	19
에스토니아	20	스페인	25
핀란드	20	스웨덴	20.6
독일	15	스위스	8.5
그리스	22	터키	23
헝가리	9	영국	19
아이슬란드	20	미국	21
아일랜드	12.5	브라질	15
이스라엘	23	러시아	3
이탈리아	24	싱가포르 <sup>1)</sup>	17

주: 싱가포르의 과세대상소득 수준별로 SGD 10,000 이하 75%(SGD 10,000 초과분부터 SGD 190,000까지는 50%)의 감면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는 누진세율 구조를 보임

자료: <https://taxsummaries.pwc.com>, 검색일자: 2022. 4. 1.

- 또한 2단계 세율체계를 가진 국가는 총 16개 국가로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일반법인과는 별도의 중소기업 세율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 호주 등 별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국가들은 일정 과세표준액 이하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정책
  - 또한 슬로바키아처럼 소액납세자를 연 매출액 49,790유로 이하 기업으로 정의하여 단일세율의 경감세율을 적용

- 이렇게 중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국가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과세특례나 경감세제를 적용하기보다는 과세표준액에 일반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원방식

<표 II -22>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2022년 기준): 2단계 세율체계  
(비OECD 국가 포함 총 5개국)

(단위: %, 지방세를 제외한 세율)

국가명	과세표준	세율(%)
호주	중소기업	1단계 단일세율 25
	일반	1단계 단일세율 30
벨기에	중소기업	(EUR) 100,000 이하 20 100,000 초과 25
	일반	1단계 단일세율 25
캐나다	내국인 소유 비상장기업	(CAD) 500,000 이하 9 500,000 초과 15
	일반	1단계 단일세율 15
칠레	중소기업	1단계 단일세율 10 <sup>1)</sup>
	일반	1단계 단일세율 27
프랑스	소기업 (매출액 EUR 10,000,000 미만)	(EUR) 38,120 이하 15 38,120 초과 25
	일반	1단계 단일세율 25
	중소기업	(JPY) 8백만 이하 15 8백만 초과 23.2
일본	일반	1단계 단일세율 23.2
	라트비아 <sup>2)</sup>	(초)소기업
리투아니아	일반	1단계 단일세율 20
	소기업	(EUR) 300,000 이하 5
네덜란드	일반	1단계 단일세율 15
	소규모기업 (매출액 PLN 9,188,000 미만 기업, 신규기업)	(EUR) 395,000 이하 15 395,000 초과 25.8
폴란드	1단계 단일세율 9	
	일반	1단계 단일세율 19

<표 II -22>의 계속

(단위: %, 지방세를 제외한 세율)

국가명		과세표준	세율(%)	
슬로바키아	소액납세자 (과세표준 EUR 49,790 이하)	1단계 단일세율	15	
	일반	1단계 단일세율	21	
포르투갈	중소기업	(EUR) 25,000 이하 25,000 초과	17 21	
	일반	1단계 단일세율	21	
비OECD 국가	인도	소기업 (매출액 INR 40억 미만 )	1단계 단일세율	25
		일반	1단계 단일세율	30
	인도 네시아 <sup>3)</sup>	중소기업	(IDR) 매출액 48억 이하 상당 과세표준 48억 초과 500억 이하 상당 과세표준	11 22
		일반	1단계 단일세율	22
	대만	과세표준 (TWD) 120,000 이하 법인	1단계 단일세율	0
		과세표준 (TWD) 120,000 초과 법인	1단계 단일세율	20
	홍콩		(HKD) 2백만 이하 2백만 초과	8.25 16.5

주: 1) 칠레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은 원래 25%이지만, COVID-19의 영향으로 2020~2022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0%를 적용 중임

2) 라트비아의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영세기업세는 소기업 소유자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기업 소유주의 개인소득세를 대체하는 것임

3) 인도네시아는 매출액이 IDR 48억-IDR 500억 구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매출액 IDR 48억 이하와 관련된 부분은 11%의 법인세율을, 매출액 IDR 48억 초과와 관련된 부분은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함

자료: <https://taxsummaries.pwc.com>, 검색일자: 2022. 4. 1.

□ 2022년 현재 해외 주요국 중 3단계 이상의 법인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 국가임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가 과세표준 4단계 이상의 법인세율 체계를 적용

- 코스타리카는 총 5단계 세율체계로서 최고세율이 30%를 적용하지만, 일정 소기업에 대해서는 영업 3년 기간 동안 감면율을 적용

○ 특히,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체계를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설계되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

<표 II -23>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2022년 기준): 3단계 이상 세율체계(5개국)

(단위: %, 지방세를 제외한 세율)

국가명		과세표준	세율(%)	
한국		(KRW) 2억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	
아르헨티나		(ARS) 5백만 이하	25	
		5백만 초과 5천만 이하	30	
		5천만 초과	35	
룩셈부르크	과세표준 (EUR) 200,000 이하 법인	(EUR) 175,000 이하 (EUR) 175,000 초과 200,000 이하	15 31	
	과세표준 (EUR) 200,000 초과 법인	1단계 단일세율	17	
코스타리카		일반기업	(CRC) 5,286,000 이하	5
			(CRC) 5,286,000 초과 7,930,000 이하	10
			(CRC) 7,930,000 초과 10,573,000 이하	15
			(CRC) 10,573,000 초과 112,170,000 이하	20
			(CRC) 112,170,000 초과	30
		경제산업 상공부(MEIC) 또는 농림축산부(MAG) 등록 소기업	영업 3년 동안 감면을 적용 (1년차 100%(완전면제), 2년차 25% 감면, 3년차 50% 감면)	
비OECD 국가	중국 <sup>1)</sup>	저수익기업	(CNY) 1,000,000 이하 1,000,000 초과 3,000,000 이하	2.5 10
		일반	1단계 단일세율	25
	남아프리카 공화국 <sup>2)</sup>	소기업	(ZAR) 87,300 이하	0
			87,300 초과 365,000 이하	7
			365,000 초과 550,000 이하 550,000 초과	21 28
	일반	1단계 단일세율	28	

주: 1) 비OECD 국가로서 중국은 저수익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CNY 1,000,000까지는 과세표준의 20%에 대하여 12.5%의 세율을, 과세표준 CNY 1,000,000~CNY 3,000,000까지는 과세표준의 50%에 대해서 20% 세율의 법인세를 부과하여 실효세율이 각각 2.5%, 10%임

2) 비OECD 국가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연간 매출액이 ZAR 1백만 미만인 초소기업에 대하여 매출액의 0~3%에 해당하는 세금과 일반 법인세 중 선택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자료: <https://taxsummaries.pwc.com>, 검색일자: 2022. 4. 1.

## 라. 해외 주요국의 최저한세율 체계

- 현재 최저한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국가이며, 해외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최저한세제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도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 기업규모(일반기업, 중소기업)로 구분 적용
  - 캐나다: 온타리오 지방세에 적용되며 2.7%의 세율 적용
  - 헝가리: 조정된 연간 총수입금액(총 매출액)의 2% 세율
  - 라트비아: 50유로의 최저한세율 적용
  - 룩셈부르크: 최소순자산세율(net wealth tax)로서 순자산 규모에 따라 535 ~ 32,100 유로 부과
  - 미국과 슬로바키아의 경우 법인에 대해 최저한세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최근 폐지하였음
  
- (미국) 미국은 2017년까지 법인세 최저한세제를 적용하다가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상황
  - 기존 최저한세는 S Corporation 및 소규모 C Corporation(일반적으로 3년 평균 연간 총 수입이 75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었음
    - 최저한세 세율은 40,000달러를 초과하는 과세소득(AMTI)의 20%
    - 이 과세소득(AMTI)은 특정 조정 및 세금 감면 항목으로 법인의 일반 과세소득을 조정하여 산출된 소득(가속상각 및 비과세소득 등 세금감면이나 조정 항목을 적용)
  - 2018년부터 법인의 최저한세제(AMT)를 폐지하고 2021년 말까지 AMT 공제를 신청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음
  
- (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 차원의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는 없으며, 온타리오 지방 정부에서 주 소득세에 대한 최저한세만 존재함<sup>20)</sup>
  - 온타리오주에서는 2010년부터 연간 매출액 1억 캐나다달러 이상 및 총자산 5천만 캐나다달러 이상인 법인에 대해 조정순소득(adjusted net income)에 2.7%(주 법인

20)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ca\\_s\\_1.10.1.#ita\\_ca\\_s\\_1.10.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ca_s_1.10.1.#ita_ca_s_1.10.1), 검색일자: 2019. 5. 30.

소득세율은 11.5%)의 최저한세를 운용<sup>21)</sup>

- 조정순소득은 캐나다 GAAP 또는 IFRS에 따라 산출된 기업의 순소득에 일부 항목을 조정하여 산정<sup>22)</sup>

- 감가상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 미실현 자본이득과 손실은 회계장부상 순소득에서 차감하고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실현된 자본이득과 손실은 합산하는 등의 조정과정을 거침

- (헝가리) 헝가리의 최저한세는 기업들의 결손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액에서 법정 세무조정을 반영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최저과세표준(minimum tax base)에 표준법인세율 9%(2016년 이전 10% 및 19%)를 적용하여 결정됨

- 납세자는 최저한세와 회사의 산출세액 중 더 낮은 금액을 선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음<sup>23)</sup>

- 만약 기업이 비용구조를 토대로 매출액의 2%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만 하면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은 조정될 수 있음

- 다만, 법인세 신고서상의 최저한세 대상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

-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법인은 최소순자산세(Net Wealth Tax, NWT) 대상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2단계 초과누진체계로 이루어짐

- 과세표준에 따른 최소 순자산세 세율

- 최대 5억유로의 과세표준: 0.5%
- 5억유로를 초과하는 과세표준: 250만유로의 NWT와 5억유로를 초과하는 NWT 기준 구성요소에 대한 0.05%

- 일반적으로 자산은 시장가치로 측정(부동산은 특별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제외) 되고, 일정 주식에 대해서는 최소순자산세 면제

- (라트비아) 라트비아는 다음의 법인을 제외하고 50유로의 최저한세를 규정하고 있음

21)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nathsuba\\_ca\\_on\\_s\\_1.#nathsuba\\_ca\\_on\\_s\\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nathsuba_ca_on_s_1.#nathsuba_ca_on_s_1).

22) 김학수, 『법인세 최저한세제 운용기초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12., p. 44.

23) kpmg,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8/07/european-tax-hungary-country-profile.html>, 검색일자: 2022. 4. 1.

- 라트비아 기업등록부(The Register of Enterprises)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
  - 회계연도 중에 청산된 법인
  - 사용인에 대한 소득세 또는 사회보장부담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납부한 법인
-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는 법인세 최저한세제와 유사한 제도인 순자산세(Net Worth Tax, NWT)의 형태로 기업에 최소한의 세부담을 부과하고 있음
- 총자산의 90%와 350,000유로를 초과하는 총고정금융자산, 양도성증권, 회사간 채권 및 현금을 보유한 법인은 4,815유로의 최소 NWT 부과
    - 법인의 총자산에 따라 535~32,100유로 범위의 최소 NWT 적용
  - 그 외 기업들은 재무상태표의 총자산규모에 따라 535유로(총자산 350,000유로 까지)부터 32,100유로(총자산 3천만유로 초과)까지의 최저순자산세 부과
  - 재무상태표에서 모든 법인세 규정(일반 NWT 기준)을 적용한 자산재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하고, 총자산에는 참여 면제자격이 있는 주식과 룩셈부르크 소재 부동산을 포함
  - 외국 지사의 자산과 같은 해외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은 총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 법인의 경우 최저순자산세의 대상에서 제외

#### 마. 소결

-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과 일본은 중소기업 구분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과 더불어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중소기업 구분기준을 규정
- 그러나 영국, EU국가 및 대만은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고 통계목적이나 지원목적으로 기준을 설정
  - 또한 조세법 체계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을 해당 조문에서 규정
- 또한 해외 주요국은 대체로 종업원 수, 총자산 및 매출액 등 세 가지의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있음

- 특히, MSME Economic Indicators(2019)가 조사한 171개 국가 중 약 65%(111개국)가 1개의 기준을 사용하고, 이 중 101개 국가가 종업원 수 기준으로 중소기업 구분
    - 총자산 기준 하나만을 적용하는 국가가 4개국(인도, 볼리비아, 세네갈 및 베냉)
    - 그리고 매출액 기준만을 적용하는 국가는 6개국(칠레,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나마)
  - 2개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국가는 약 23.4%(40개 국가)이며, 이중 종업원 수와 매출액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국가는 24개국, 종업원 수와 총자산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는 16개국임
  - 종업원 수, 총자산 및 매출액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는 약 14%인 20개 국가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총자산과 매출액 등 2개 기준을 적용하지만, 소기업은 종업원 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3개 기준을 적용
- 해외 주요국과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범위는 미국보다는 좁지만 영국, EU 및 싱가포르보다는 넓은 수준으로 나타남
- 특히, 자본금(출자총액) 기준을 적용하는 일본과 대만의 기준 금액이 원화로 각각 31억원과 34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범위가 이들 국가보다도 넓은 수준
  - 이는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폭넓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물론 미국에 비해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기준이 낮은 수준이지만 영국이나 EU국가 및 싱가포르보다는 높은 수준

〈표 II -24〉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구분기준 비교

구 분	자국통화 기준		원화기준	
	자산총액	(연)매출액 <sup>1)</sup>	자산총액	(연)매출액 <sup>1)</sup>
우리나라	1.5천억원 이하	1천~1.5천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1,000억~1,500억원 이하
미 국	6억달러 이하 <sup>2)</sup>	678.6백만~1,222.2백만달러	7,143억원 이하	8,079억~14,550억원 이하
영 국	27.36백만파운드 미만	11.40백만파운드 미만	440억원 미만	183억원 미만

<표 II -24>의 계속

구 분	자국통화 기준		원화기준	
	자산총액	(연)매출액 <sup>1)</sup>	자산총액	(연)매출액 <sup>1)</sup>
EU	50백만유로 이하	43백만유로 이하	674억원 이하	580억원 이하
일 본	자본금 3억원엔		자본금 31억원 이하	
대 만	자본금 8천만 NT\$ 미만		자본금 34억원 미만	
싱가포르		1억 싱가포르 달러 이하		882억원 이하

주: 1) 2022. 1. 1. 기준 환율(매대기준율) 1,190.50원/USD, 1,606.88원/GBP, 1,348.24원/EURO, 1,034.00원/JPY, 42.98원/TWD, 882.24원/SGD을 기준으로 환산

2) 표 주의 설명은 다음과 같음

1. 연평균매출액을 포함한 연매출액을 적용
2. 미국은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해서만 자산총액 기준을 적용

- 해외 주요국들의 법인세율 체계를 보면, 대체로 단일세율체계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4단계 이상의 법인세율 체계를 갖춘 OECD 국가는 코스타리카 외에는 없음
  - OECD 회원국이 아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소기업이 4단계이고 일반기업은 단일세율을 적용함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경감세율체계가 없고 4단계 세율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 특히, 2단계 이상의 세율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 중에 상당수가 중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2단계 세율체계 국가 중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일본 및 폴란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법인세율을 적용
  - 3단계 세율체계 국가 중에서도 룩셈부르크, 중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중소기업 경감세율 체계를 적용
-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경감법인세율 체계를 갖춘 국가는 대체로 중소기업 관련 조세특례제도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중소기업 대상 세제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
    - 일본은 R&D의 추가적인 세제와 감가상각 관련 세제지원, 프랑스는 중소기업의 신규 취득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그리고 벨기에와 포르투갈은 중소기업의 명목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폴란드는 중소기업에 대한 즉시상각의제를 지원

- 룩셈부르크는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조세지원이 파악되지 않음
  - 이에 반해,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
  - 아르헨티나는 소프트웨어, 컴퓨팅 및 디지털 서비스, 시청각 제작 및 포스트 프로덕션 활동, 특정 과학 및 엔지니어링 활동, 지질 및 탐사 서비스, 수출활동 중소기업에 60% 감면, 특정지역(Tierra del Fuego) 소재 기업에 면세제도 등 중소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세제지원
  - 룩셈부르크는 감가상각 세액공제, 위생·난방·에너지·환경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R&D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에 다양한 세액공제제도를 시행
- 또한 최저한세제를 도입한 OECD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5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최근 미국과 슬로바키아는 최저한세제를 폐지함
  - 최저한세제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해 차등적인 최저한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기업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하여 폭 넓게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법인세율 누진구조 및 최저한세 차등세율을 통해 소규모 기업을 우대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 비해 중소기업 지원 조세제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즉,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넓은 범위의 중소기업에 기준조세체계 및 조세특례제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Ⅲ. 타당성 평가





### Ⅲ. 타당성 평가

- 본 제도에 대한 타당성은 다음의 측면에서 평가함
  - 정부 개입의 근거 및 타당성
  - 지원 방식의 타당성
  - 지원 대상의 적정성
  - 타 제도와 유사·중복성

#### 1. 정부 개입의 근거 및 타당성

- 본 소절에서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근거를 검토하고, 그 타당성을 평가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필요성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논거를 먼저 제시한 후, 각 논거의 타당성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논의함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지지하는 논거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음<sup>24)</sup>
  - ①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교정
  - ②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세제상 불이익에 대한 보상
  - ③ 중소기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 중소기업 조세지원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시장실패는 크게 ① 긍정적 외부효과의 존재와 ② 금융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존재로 구분할 수 있음
  
- (시장실패: 긍정적 외부효과) 기업의 일부 행태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24) 이상엽 외(2018), IV장을 참조함

- 기업의 혁신, 투자, 고용 등의 행위는 사적 이익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외부효과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해당 기업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권리취득, 모방 등의 방법을 통해 기술을 부분적으로 습득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
    -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비교적 명확한 혁신활동과 달리, 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경우에도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sup>25)</sup>
  - 하지만, 기업은 사적 이익만을 고려하여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하게 공급됨
  - 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여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업 행태를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 하지만 혁신, 투자, 고용 등의 행위가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본 제도와 같이 중소기업만을 수혜대상으로 한정하거나 특별히 우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소지가 있음
- 긍정적 외부효과가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발생하거나, 그 크기가 기업규모와 반비례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더 혁신적이고, 투자를 많이 하고, 고용을 더 창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치된 의견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Piergiovanni(1996), Stock et al.(2002), Hong et al.(2016)는 기업의 규모가 작을 수록 혁신적인 결과물을 더 많이 생산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반면, Camison-Zornoza et al.(2004), Laforet(2008, 2009, 2013)는 반대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고용과 관련해서는 Birch(1981, 1987)와 그 이후 발표된 여러 연구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고용을 창출하는 데 있어 비교우위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음
    - 반면, ‘작은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기업’이 고용을 창출한다는 연구결과들도 발표된 바 있음(Voulgaris et al., 2005; Haltiwanger et al., 2013)

25) 이에 대한 논의는 이상엽·김빛마로·홍우형·윤성만(2018); 김빛마로·우석진·이동규(2019) 등을 참조 바란다.

- (시장실패: 금융시장 정보 비대칭성)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역선택(adverse selection) 등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지므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자금 공급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 어떠한 기업이 건설하고 잠재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아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즉, 실제로는 잠재성이 있는 건설한 기업임에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이를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이들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특히, 금융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더 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은 대체로 기업정보 공개의무가 적고, 업력이 짧아 자금 공급자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과거 이력이 부족하기 때문
  - 이상엽 외(2018)는 중소기업은 자금조달방식 중 대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금 공급자인 금융기관과 자금수요자인 기업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을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
  
- 따라서 금융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어떠한 지원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다음 소절에서 검토함
  
-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세제상 불이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이러한 논리는 주로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과 관련됨<sup>26)</sup>
  
- 다수의 선행연구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납세협력비용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 납세협력비용 중 상당부분이 고정비용(fixed cost)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세한 기업은 규모의 경제 및 분업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기가 쉽지 않음 (Cleary et al., 2017<sup>27)</sup>)

26) 납세협력비용과 관련된 논의는 이상엽·김빛마로(2017) IV장을 참조함

27) Era Dabla-Norris, Florian Misch, Duncan Cleary, and Munawer Khwaja, Tax Administration and Firm

- 조세제도의 이해를 위한 노력, 필요서류를 준비 및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은 고정비용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전체 납세순응 비용 중 이러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 Weichenrieder(2007) 역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납세협력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모든 OECD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된다는 결과를 제시함
  -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Lignier and Evans 2012; Lignier et al., 2014), 금전적 비용과 시간 등 명시적 비용 이외에 심리적인 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도 존재함(Woellner et al., 2001)
- OECD에서는 소규모 법인은 규모의 경제, 전문인력의 고용 등 규모가 큰 기업이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제혜택, 조세감면, 특정한 보고 및 정보공개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sup>28)</sup>
- 중소기업의 차별적 조세지원 필요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Bergner et al.(2017) 역시 영세한 기업이 직면하는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들에게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함
- 소규모 법인이 과중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경제적 효율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 Cleary et al.(2017)은 납세협력비용의 증가가 소규모 법인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 조세행정의 개선이 이들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함
    -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는 기업의 자원이 생산적 활동에 투입되지 못하게 작용하여 기업의 생산성 하락을 초래함
    -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세한 기업에 지나친 납세부담을 줄 경우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볼 때 중소기업의 과중한 납세협력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Performance: New Data and Evidence for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IMF Working Paper. 2017/95

28) OECD, "Small Businesses, Job Creation and Growth: Facts, Obstacles and Best Practices," 1997.

-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식으로서 본 제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논의함
-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부문은 국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 대비 중소기업의 비중은 99.9%, 우리나라 전체 종사자 수 대비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중은 82.7%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수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만으로 한정된 경우의 비중이 사업체 수 기준 93.4%, 종사자 수 기준 43.7%에 달함

〈표 III-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사업체와 종사자 현황(2019년 기준)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A)	중소기업(B)	소상공인(C)	대기업(D)	비중		
					중소기업(B/A)	소상공인(C/A)	대기업(D/A)
사업체 수	6,893,706	6,888,435	6,441,928	5,271	99.9	93.4	0.1
종사자 수	21,076,582	17,439,595	9,219,369	3,636,987	82.7	43.7	17.3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21), 「2021년 중소기업 위상지표」

-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사업체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모두 비교대상 5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종사자 수 비중의 경우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아 고용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큰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통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모두 포함한

통계이며 각국의 중소기업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별 통계를 단순비교한 아래의 수치에 대한 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표 III-2>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현황 비교

(단위: 천개, 천명)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한국	6,888	99.9	17,440	82.7
일본	3,589	99.7	46,790	68.8
대만	1,549	98.9	9,311	80.9
미국	6,055	99.7	61,244	46.8
영국	5,538	99.8	16,333	60.6

주: 한국은 2019년, 일본은 2016년, 미국은 2018년, 대만은 2020년, 영국은 2021년 기준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21), 「2021년 중소기업 위상지표」

- 하지만 중소기업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다면, 동일한 금액이 대기업에 지원되었을 때에 비해 중소기업에 지원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의 크기가 더 큰 경우에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세지원이 정당화될 수 있음
  -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혁신, 투자, 고용 등을 더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창출하는가에 대해서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일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역할이 크기 때문이 이러한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 이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이라는 정부가 장려할 만한 행위를 수행한 기업에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요약하면,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시장실패의 교정 및 납세협력비용의 완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평가됨

## 2. 지원 방식의 타당성

- 본 소절에서는 앞 절에서 논의한 중소기업 지원 논리에 근거할 때 본 제도의 지원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함
  
- 먼저, 긍정적 외부효과를 생성하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에 비추어 볼 때 본 제도의 지원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본 제도는 고용, 투자, 연구개발 등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행태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무조건적 조세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본 제도는 지원 대상으로 열거된 업종에 속하고 지역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에 기업 행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감면율을 적용함
    -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고용과 감면 한도를 연계하는 변경이 있었으나, 감면 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매우 소수임을 감안할 때 본 제도가 고용과 연계된 제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정부의 개입 근거가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업 행태를 사회적 최적 수준까지 제고하기 위함이라면, 그러한 기업 행태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된 지원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우리나라는 이미 고용, 투자,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미 운용 중인 제도를 개선하여 그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본 제도는 긍정적 기업행태와 연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긍정적 기업행태와 연계되어 운용 중인 대부분의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 및 효과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본 제도는 중소기업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 중인 제도이며, 대부분의 제도와 중복적용이 불가하여 기업들이 기타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할 유인을 저해
    - 실제로 본 제도는 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IV장 1절의 논의 참조)
  
- 다음으로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어

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와 관련해서도 본 제도의 지원방식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본 제도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만큼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주요 지원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정보 불완전성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우 적자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세지원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조세지원의 특성상 적자상태에 있는 기업, 즉 납부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저리대출 등의 금융지원이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또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대체로 완화된다는 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움
  - 본 제도의 수혜대상에는 업종에 따라 매출액 최대 1,500억원 수준의 ‘중기업’도 포함되어 있음
  -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시장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의 경우에도 본 제도의 방식이 아닌 보다 직접적인 조세행정 차원의 지원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세무행정의 전산화, 세법 및 제도 단순화, 세무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직접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실질적 납세협력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닌 것으로 평가함
- 또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실질적 납세협력부담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음

- 요컨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정되지만, 본 제도와 같은 지원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 3. 지원 대상의 적정성

- 다음으로 본 제도가 설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함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살펴본 후, 수혜대상 업종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함
  
- 앞서 살펴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논거, 본 제도의 지원방식,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범위는 영국, EU, 일본, 대만 등에 비해 넓게 설정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정부 개입의 주요 논거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및 과도한 납세협력부담의 문제도 일정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우리나라는 본 제도 외에 기타 조세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는 고용, 투자, 연구개발 등 각종 조세지원제도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규모가 작은 기업의 혜택 수준을 높게 설정하고 있음
    - 또한 명목세율 역시 누진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고, 최저한세율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을 우대하고 있음
  - 실제로, 해외제도를 조사한 결과 기준조세체계에서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체로 조세지출제도에서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현상이 제한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매우 광범위한 중소기업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본 제도의 특성상 그 수혜대상을 영세한 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본 제도의 수혜대상 업종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함

- 수혜대상 업종의 설정 체계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함
  - 또한, 제조업 - 비제조업 사이의 활용도 및 형평성을 국세청 미시자료를 통해 살펴봄
-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분석에 활용한 국세청 미시자료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여 결과 해석에 유의할 부분을 논의하고자 함
- 본 소절에서 활용한 자료는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임
  - 해당 자료의 표본추출 시 본 과세특례 활용기업과 미활용기업 표본을 연도별로 각각 5천개씩 구분하여 무작위 추출하였으므로, 분석결과 해석에 다음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자료추출 단계에서 본 제도 활용기업과 미활용기업을 각각 일정한 숫자만큼 추출한 것이므로 업종별 제도 활용도의 절대적 수치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추출단계에서 업종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업종 사이의 제도 활용도 상대적인 크기 비교는 가능함
  - 마지막으로, 분석 표본에서 과세표준이 영(0) 또는 음수(-)인 법인과 개인사업자 표본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한 결과 해석이 필요
- 현행 본 과세특례제도의 감면업종은 조특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산업분류표상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업종은 총 48개로 열거되어 있으며, 업종구분 수준도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로 서로 상이
    - 대분류 기준 업종, 중분류 기준 업종, 소분류 기준 업종 등 혼재
  - 또한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명과 상이한 업종도 일부 존재
- 표준산업분류체계와 국세청업종분류체계가 거의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국세청업종분류체계 기준으로 분석함
- 일부 세분류 내지 세세분류의 업종명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나 대부분 동일한 업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편의상 국세청업종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업종별 활용도 및 형평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

〈표 III-3〉 표준산업분류상 본 과세특례 감면업종 현황

대분류		연번	업종명
A	농업, 임업, 어업	(1)	가. 작물재배업
		(2)	나. 축산업
		(3)	다. 어업
		(4)	루. 임업
B	광업	5	라. 광업
C	제조업	6	마. 제조업
		7	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영§6①)
D	전기, 가스 공급업	8	보. 에너지절약전문기업
		9	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완료 재생업	10	바.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11	사.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12	아.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13	자. 여객운송업
		14	차. 물류산업
		15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16(2)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J	정보통신업	17	차. 출판업
		18	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9	타. 방송업
		20	파. 전기통신업
		21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2	거.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23	구. 주택임대 관리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4	너. 연구개발업
		25	더. 광고업
		26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27	버. 전문디자인업
		28	저. 엔지니어링사업
		29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0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
		31	포. 연구개발활동 지원 산업

<표 III-3>의 계속

대분류	연번	업종명	
N	32	며. 포장 및 충전업	
	33	피. 선박관리업	
	34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35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36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38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39	부. 자동차 임대업(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50% 이상 보유자)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서비스업	40	키. 직업기술학원 및 직업훈련시설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1	허. 의료업(중소 1억 이하 등)
		42	노. 노인복지시설업
		43	소. 장기요양기관업
		44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5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16(2)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46	도. 전시산업
		47(2)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 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8	티. 자동차정비공장(영§6②)
		47(2)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 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감면업종 구분체계) 현행 본 과세특례 적용 업종은 국세청 업종구분코드 기준 48개로 구분되지만, 구분수준이 상이하고 업종명칭이나 타법률에서 차용된 업종명, 일정한 충족 조건 및 제외·포함 업종 등이 존재하여 그 구분의 체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48개 업종구분이 일정한 구분수준으로 되어 있지 않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세분류, 세세분류 등이 혼재

- 대분류 업종(5개):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 도소매업
  - 중분류(11개): 임업, 어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연구개발업, 건축 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소분류(4개): 작물재배업, 축산업, 광고업, 전기 통신업
  - 세분류(6개): 전문디자인업,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고용 알선업 및 인력공급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세세분류(4개):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자동차 임대업
  - 분류상 업종명이 상이하거나 타법률 업종명 차용(18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해운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노인복지법」, 「전시산업발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식재산 기본법」, 「연구산업진흥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각 업종 분류 내에서도 별도로 제외 또는 포함되는 업종이 존재
- 폐기물 처리업에서 재활용을 포함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에서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 정보서비스업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중 자영예술가는 제외
  - 관광사업 중 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은 제외
  - 무형재산권 임대업 중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에는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 독서실 운영업은 제외
- 또한 업종 내에서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감면 가능한 경우 존재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

- 의료업 중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
- 자동차임대업 중에서도 등록된 자동차의 50%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보유한 자로 한정

- 또한 대분류 기준으로 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이 3개 존재함
  - 금융 및 보건업, 부동산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만이 감면업종 대상임
  - 그러나 실제 명칭이 다르고, 타법률 차용 업종으로 인해, 위의 제외 업종에 속함에도 세분류 및 세세분류 범주에서 본 제도 감면실적이 존재하는 표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업종구분의 체계로 인해 해당 중분류 및 소분류 내에서도 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이 존재하여 수평적 형평성을 낮추는 문제점이 발생함
  - 예를 들어, 중분류 농업 내에서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은 감면업종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은 감면업종이 아님
    - 그러나 미시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도 일부 감면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동일 업종 내에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충족여부에 따라 본 제도 수혜여부가 달라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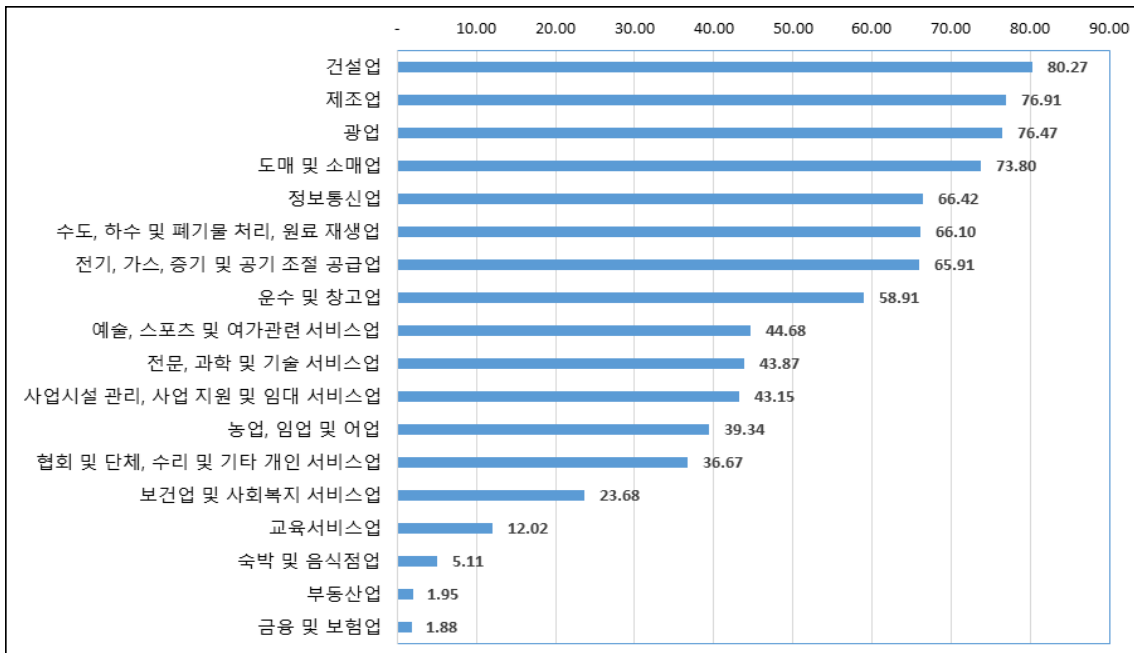
- 체계적이지 않은 업종 열거 방식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유발하고,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특정 업종이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앞에서 제시한 몇몇 사례에서처럼 감면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감면실적이 존재하는 경우도 일부 나타남

- (대분류기준 감면업종의 활용도) 국세청 미시자료를 통해 업종(대분류) 기준으로 활용도를 분석한 결과, 대분류 기준에 따라 감면업종으로 구분된 건설업, 제조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활용도가 높았음

- 또한 대분류 기준은 아니더라도 포괄적인 업종명칭으로 구분된 경우에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운수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감면업종으로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과 포괄적인 물류산업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수준
- 이에 반해, 감면업종이 아닌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의 활용도는 가장 낮은 수준
- 또한 타법률에서 차용하거나 예외조건이 있는 업종의 경우에도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고, 교육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따른 보습학원 또는 직업교육훈련시설이어야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음

[그림 Ⅲ-1] 2014~2019년 귀속 법인의 활용도

(단위: %)



주: 1. 2014~2019년 귀속 법인 표본, 활용도 = 업종별 본 과세특례 활용기업 수 ÷ 표본 기업수  
 2. 표본 특성상 활용도의 절대적 수치는 유의미하지 않으며 활용도의 업종별 차이만 참고  
 자료 : 국세청 미시자료

□ 특히, 제조업의 경우 대분류 기준으로 열거되어 있어 본 제도 활용에 제한이 없는 반면, 비제조업 중 일부 대분류 업종은 수혜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경우도 있어 제조업 - 비제조업 사이의 수평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 및 보건의업, 부동산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대분류 수준에서 본 제도의 수혜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에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수혜대상에 포함됨
- 본 제도가 업종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에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현행 업종 열거 방식은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제Ⅵ장 형평성 분석결과 본 제도는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감면 제외 업종의 활용도) 대분류 기준으로 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인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중에는 타 감면업종에 속해 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례도 일부 존재함

- 금융 및 보험업 중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세분류)과 보험 대리 및 중개업(세분류)이 본 과세특례를 활용하고
- 부동산업 중에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소분류), 부동산관리업(세분류)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세분류)이 활용

<표 III-4> 대분류 기준 감면 제외 업종 중 본 제도 활용 업종

(단위: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활용도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금융 지원 서비스업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4.76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6.67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33.33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3.17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2.20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0.70
				주거용 건물 임대업	3.03
				부동산 관리업	6.43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0.85			

주: 1. 2014~2019년 귀속 법인 표본, 활용도 = 업종별 본 과세특례 활용기업 수 ÷ 표본 기업수  
 2. 표본 특성상 활용도의 절대적 수치는 유의미하지 않으며 활용도의 업종별 차이만 참고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

- (숙박 및 음식점업의 활용도)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관광사업 업종으로 제한하면서 제외 업종이 존재하여 본 과세특례 활용도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중분류의 숙박업은 활용기업이 없고 소분류의 음식점업 중 일부만 활용
    - 세분류의 기타 간이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및 한식 음식점업
  -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이 제외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은 다른 대분류 업종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교육서비스업의 활용도) 또한 교육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수혜업종을 기술교육사업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업종에 한정하고 있어, 본 과세특례 활용도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됨
  - 수혜업종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에 한정)으로 제한
  - 적용업종으로 세분류의 교육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직원훈련기관 및 일반 교습학원(세세분류의 일반 교과훈련) 업종이 활용

〈표 III-5〉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의 활용도

(단위: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활용도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22.22
			외국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4.76
			한식 음식점업	한식 일반 음식점업	9.09
교육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교육 지원 서비스업	교육 지원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7.69
		기타 교육기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28.57
			직원 훈련기관	직원 훈련기관	36.36
		일반 교습학원	일반 교습학원	일반 교과학원	2.04

주: 1. 2014~2019년 귀속 법인 표본, 활용도 = 업종별 본 과세특례 활용기업 수 ÷ 표본 기업수  
 2. 표본 특성상 활용도의 절대적 수치는 유의미하지 않으며 활용도의 업종별 차이만 참고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

- 국세청 미시자료 중 2018년 귀속 표본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제도 활용도를 비교한 결과, 제조업 영위 기업의 활용도 및 평균수혜금액이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남
- 법인 표본에서 본 과세특례 활용도는 제조업 68.21%, 비제조업 47.92%로 제조업의 활용도가 더 높았으며 평균 감면액도 제조업 약 860만원, 비제조업 약 350만원으로 제조업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본 특성상 제도 활용도의 절대적 수치는 큰 의미가 없으며 업종별 상대적 크기 비교결과만 참고할 필요보다 낮은 활용도

<표 III-6> 2018년 귀속 법인의 제도 활용도 비교(제조업 vs. 비제조업)

(단위: 기업수, %, 백만원)

구분		총표본기업수	수혜기업수	수혜기업비율	평균감면액
법인	제조업	2,246	1,532	68.21	8.56
	비제조업	7,262	3,480	47.92	3.49
	계	10,071	4,303	42.73	5.04
개인	제조업	782	589	75.32	0.63
	비제조업	9,305	4,497	48.33	0.23
	계	10,087	5,086	50.42	0.86

주: 표본 특성상 활용도의 절대적 수치는 유의미하지 않으며 활용도의 업종별 차이만 참고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본 제도의 실질적 수혜대상을 영세한 기업으로 한정하고, 현행 수혜업종 열거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수혜대상 열거 방식은 체계적이지 않아 납세자 및 과세관청 모두에 행정적 비용을 유발하고, 제조업과 비제조업 사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4.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 (유사·중복성) 본 제도와 성격이 유사한 조세특례제도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나, 기준조세체계에서의 중소기업 우대정책과 종합적인 판단이 수행될 필요
  - 본 제도의 설계방식 및 활용도를 고려할 때 사실상 중소기업에 감면세율을 적용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본 제도는 명목세율 체계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조세지원제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제도는 일부 조세지출제도를 제외하면 중복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타 조세지출제도의 활용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제도는 원칙적으로 중복적용 배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만, 「조특법」 제30조의4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예외적으로 중복적용이 가능함
  - 중복적용 배제 세액공제가 아닌 조특법 29조의7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함
  - 상기 제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용, 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와 본 제도는 중복적용이 불가함
  -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요건이 단순한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긍정적 기업행태와 연계된 기타 조세지출제도의 활용도가 저조한 현상이 관측됨
  -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본 제도의 지원방식의 타당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제도의 혜택수준을 줄이고 기업행태와 연계된 조세지출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개선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III-7> 중복적용 배제 조항(「조특법」 제127조 제4항)

---

**중복적용 배제 세액감면**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7)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의2)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31④,⑤)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32④)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62④)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3①)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63의2①)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4)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66)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67)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68)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85의6①,②)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99의9②)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99의11①)
-

<표 III-7>의 계속

---

**중복적용 배제 세액감면**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104의24①)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8)
-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9②)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17②)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0②)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1②)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2②)

---

**중복적용 배제 세액공제**

---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8의3)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3의2)
- 통합투자세액공제(§24)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5의6)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단, 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외)
-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104의14)
-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104의15)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104의22)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104의25)
- 금 사업자와 스크램블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122의4①)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126의7⑧)

---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main.html>, 검색일자: 2022. 2. 3.

## 5. 타당성 평가결과 요약

- (정부 역할의 타당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됨
  - 중소기업은 금융시장에서의 정보 불완전성의 존재로 인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실질적 납세협력비용이 큰 특징이 있음
    - 납세협력비용의 상당부분은 고정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
- (지원방식의 적정성) 본 제도 지원방식의 타당성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 본 제도는 긍정적 기업활동과 연계되지 않아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본 제도는 고용, 투자, 연구개발 등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 기업행태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무조건적 조세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본 제도는 오히려 긍정적 기업행태와 연계되어 운용 중인 대부분의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 및 효과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금융시장에서의 시장실패 및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본 제도의 지원방식은 부적절함
  - 정보 불완전성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상당수는 적자 상태, 즉 납부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조세지원에 비해 금융·재정지원이 효과적임
  -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세무행정 차원의 지원이 바람직하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실질적 납세협력부담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음
- (지원대상의 적정성) 지원대상의 적정성은 지원 대상기업의 규모 및 업종의 측면에서 평가
  - 본 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수혜대상을 영세한 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됨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 앞서 제시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
  - 본 제도 수혜대상 업종 열거방식은 체계적이지 않아 행정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혜대상이 제조업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유사·중복성) 본 제도와 성격이 유사한 조세특례제도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나, 우리나라는 세율, 최저한세율, 각종 조세특례제도에서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이 다수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IV. 효과성 평가





## IV. 효과성 평가

- 본 장에서는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각각에 대하여 실증분석함
  - 재무성과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자산 등을 고려하였으며, 최근 신설된 세액감면 한도 신설의 효과를 추정함
  - 실증분석에 앞서 본 제도와 기타 조세지출제도 사이의 대체성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제시함

### 1. 본 제도와 기타 조세지출제도 사이의 대체관계

- 본 제도는 중소기업이 투자, 고용, 연구개발 등 기타 조세지출제도를 활용할 유인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본 제도는 대부분의 조세지출제도와 중복적용이 불가하고, 적용 요건이 간단하여 기업 입장에서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 본 소절에서는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감면한도가 신설된 제도변화를 활용하여 본 제도와 대체성이 높은 제도를 파악해보고자 함
  - <표 IV-1>은 중소기업이 수혜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주요 조세지출제도의 수혜내용 변천을 제시함
    - 대부분의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애초에 수혜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거나, 혜택수준에 있어 다른 기업들보다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고용, 투자, 연구개발, 창업 등 여러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 중 국세청 미시자료에서 파악이 가능하고 본 제도와 대체관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제도 및 본 제도의 활용도를 통해 제도 사이의 대체관계를 파악함

〈표 IV-1〉 중소기업 지원 관련 감면금액 및 공제율 변화

구분	적용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외										
	도·소매업, 의료업											
	그 외 업종											
중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그 외 업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식기반산업											
	1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년간 50%</li> <li>청년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3년간 75%, 그 다음 2년간 50%</li> <li>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5년간 5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벤처중소기업 (2018.6~)</li> <li>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년간 50%</li> <li>청년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년간 50%</li> <li>청년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년간 100%</li> <li>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5년간 50%</li> </ul>											
고용증대 세액공제	300	-	-	-	-	-	-	-	-	-	-	-

<표 IV-1>의 계속

구분	적용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생을 군복무 후 복직시킨 기업	-	-	-	-	-	-	-	-	15%			
	-	-	복직일 이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10%						30%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	-	-	-	-	재고용한 날로부터 2년간 지급 인건비의 10%			15%			
	-	-	-	-	-			30%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	-	-	-	-	-	-	-	-	복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지급한 인건비의 5%			15%
	-	-	-	-	-	-	-	-	10%			30%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	-	-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5%				5%			
	-	-	-	-	-	10%			10%			
	-	-	-	-	-	10%			20%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	-	-	-	-	200	300					
	-	-	-	-	-	500	700					기한 종료
	-	-	-	-	-	500	1,000					

<표 IV-1>의 계속

구분	적용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등 상시근로자 1인 증가 시 공제액 (2018 → 2019~202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300 → 400</li> <li>중견 700 → 8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 외 1,100 → 1,200</li> <li>수도권 1,000 → 1,1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외 상시근로자 1인 증가 시 공제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li> <li>수도권 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 외</li> <li>수도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 외</li> <li>수도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5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 외</li> <li>수도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70</li> <li>7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외 청년 등 상시근로자 1인 증가 시 공제액</li> <li>- 일반: 500</li> <li>- 중견: 900</li> <li>- 중소: 1,300</li> </ul>				

〈표 IV-1〉의 계속

구분		적용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정규직 근로자 전환	중견	-	-	-	-	-	-	500	700	700	700	700	700		
	중소	인원수× 30만원	30	30	100	200	200	7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용유지중소기업		(2017 → 2018 → 2019~) •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50(→ 50 → 10) •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분의 50(→ 75 → 15)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1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100%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50%(신성장 서비스업 중소기업: 75%)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100%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50%(신성장 서비스업 중소기업: 75%)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	-	-	-	-	-	-	-	50%	-	-	기한 종료		

〈표 IV-1〉의 계속

구분	적용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중소기업 등 투자	일반	-	-	-	-	-	-	-	-	-	-	-
	중견	-	-	-	-	3	3	3	수도권 1% 비수도권 2%	수도권 1% 비수도권 2%	-	-
	중소	3	3	3	3	3	3	3	3	3	3	3
연구인력개발 (2019-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	일반	10	10	10	3	3	1	1	1	1	1	1
	중견	10	10	10	5	5	3	3	3	3	3	3
	중소	10	10	10	10	10	6	6	6	7	7	7
에너지 절약 시설	일반	10	10	10	3	3	1	1	1	1	1	1
	중견	10	10	10	5	5	3	3	3	3	3	3
	중소	10	10	10	10	10	6	6	6	7	7	7
환경보전시설	일반	10	10	10	3	3	3	1	3	3	3	3
	중견	10	10	10	5	5	5	3	5	5	5	5
	중소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일반	7	7	7	7	7	7	7	3	3	3	3
	중견	7	7	7	7	7	-	-	5	5	5	5
	중소	7	7	7	10	10	10	10	10	10	10	10
안전설비 투자	일반	3	3	3	3	3	3	1	1	1	1	1
	중견	3	3	3	3	5	5	3	5	5	5	5
	중소	3	3	3	7	7	7	7	10	10	10	10

**통합투자세액 공제**  
(기본공제)  
•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 일반 투자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대기업 3%  
(추가공제)  
•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모든 기업 3%)  
- 추가공제액 한도: 기본공제액의 200%

<표 IV-1>의 계속

구분	적용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생산성향상 시설	일반	3	3	3	3	3	3	1	1	1		
	중견	-	-	-	-	5	5	3	3	3		
	중소	7	7	7	7	7	7	7	7	7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일반				3	3	3	1	1	1		
	중견	7	7	7	5	5	3	3	3	3		
	중소				7	7	6	6	6	6		
신성장 기술 산업화 시설 투자	일반	-	-	-	-	-	5	5	5	5		
	중견	-	-	-	-	-	7	7	7	7		
	중소	-	-	-	-	-	10	10	10	10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시설투자	일반											
	중견											
	중소											
임시 투자 및 고용창출	일반	4+1	3+2	2+3	1+3	0+3	0+3	0+3	0+3			
	중견	-	-	-	2+3	1+4	1+4	1+4	1+5			
	중소	5+1	4+3	4+3	4+3	3+4	3+4	3+4	3+6			
	일반	5+1	4+2	3+3	2+3	0+4	0+4	0+4	0+4			
	중견	-	-	-	3+3	2+5	2+5	2+5	2+6			
	중소	5+1	4+3	4+3	4+3	3+5	3+5	3+5	3+7			
기한 종료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main.html>, 검색일자: 2022. 2. 9., 세법개정안, 각 연도

- 본 조세특례제도와 기타 제도와의 대체관계를 분석한 결과, 본 제도와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의 대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본 제도와 기타 제도의 대체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 세액감면 한도 도입 이후 한 번이라도 감면한도의 적용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들의 2017년 이전과 2018년 이후의 조세지출제도 활용 패턴을 분석함
  - 감면한도 도입 전에는 기타 제도를 활용할 유인이 없던 기업들이 감면한도 도입 이후 어떠한 제도를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는지 파악함으로써 본 제도가 활용도를 저해하고 있는 주요 조세지원제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제도가 축소되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떠한 제도를 가장 활발히 활용할 것인지를 예측해볼 수 있음
  - 분석 결과, 감면한도의 적용을 받아 추가적인 조세혜택의 적용을 받을 유인이 있는 기업들은 주로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감면한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2017년 이전에는 본 제도와 투자 관련 세액공제의 수혜금액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
    - 하지만 감면한도 적용 이후 본 제도의 수혜금액이 제한된 이후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수혜금액이 증가하는 패턴이 확인됨
    - 수혜금액 기준 본 제도와 음(-)의 상관관계가 가장 명확한 제도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순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제Ⅱ장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통한 제도 현황 분석 및 제Ⅲ장 타당성 분석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제도가 기타 조세지출제도 활용 유인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의 간접적 증거로 이해할 수 있음
  - 다만, 분석의 특성상 1억원 감면한도의 영향을 받는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만 고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본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행태를 대표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은 본 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되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투자 관련 제도가 아닌 고용 관련 제도를 더욱 활발히 활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대체하여 활용할 조세지원제도가 없어 수혜금액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표 IV-2〉 감면한도 적용 기업의 본 제도와 기타 제도 수혜금액 상관관계

구분	2017년 이전 (감면한도 신설 전)	2018년 이후 (감면한도 신설 후)	차이
1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0.22	.
2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0.05	-0.19	-0.24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0.18	.
4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0.13	-0.17	-0.03
5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0.05	-0.14	-0.09

주: 1. 2018년 이후 한 번이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들의 본 제도 수혜금액과 기타제도 수혜금액의 상관관계를 계산  
 2. 감면한도 신설 이후 본 제도와 음(-)의 상관관계가 가장 큰 5개 제도를 제시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 제도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본 절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가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각각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재무성과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자산 등을 고려
  - (2017년 제도개편의 효과) 또한 2017년 세액감면 한도 신설이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액 및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

### 가. 분석자료 및 계량추정전략

#### 1) 분석자료

- 본 조세특례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한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 미시자료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미시자료를 활용
  - 해당 자료에는 개별 기업정보(자산, 매출액, 업종 등), 동 조세특례제도 수혜현황 및 기타 조세지원제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등) 수혜현황이 있음

- 귀속연도별로 동 제도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을 각각 일정비율로 무작위 추출 후 추출된 사업자에 대한 분석기간 전체 자료(패널자료)가 제공됨
  
- 법인사업자 자료
  - (분석기간) 귀속연도 기준 2014~2019년 연도별 패널미시자료
  - (분석대상) 영리 및 비영리 중소기업 법인
    - 분석대상 법인의 99%는 기타영리법인
  - 실증분석에는 다음의 종속변수를 사용하였음
    -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로그 매출액, 영업손익률, 로그 자산
  
- 개인사업자 자료
  - (분석기간) 귀속연도 기준 2015~2020년 연도별 패널미시자료
    - 코로나19로 인해 주된 분석에서는 2020년 자료를 제외했으나 2020년 자료를 포함했을 시에도 분석결과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 (분석대상)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자로 분석대상을 한정(소득구분 코드 40)
  - 실증분석은 다음의 종속변수를 사용하였음
    -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로그 총수입금액, 영업손익률, 로그 자산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제외한 변수는 일부 기업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추정결과를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대상 본 효과성 분석에서는 추가로 다음과 같은 표본 제약 조건을 적용하였음
  - 분석기간에 연속적으로 존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균형패널 구성
    - 불균형패널을 사용할 경우 기업의 창업과 퇴출 등으로 인해 제도효과 추정에 편의가 생길 수 있음
  - 분석기간에 산출세액이 항상 0보다 큰 기업만 포함
    - 산출세액이 0이면 감면받을 세액이 없어 자동으로 동 제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 이 경우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로 인해 양(+)의 방향으로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

- 추후 강건성 분석에서는 산출세액이 0인 기업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함

## 2) 계량추정전략

- 본 조세특례제도 수혜여부의 기업별( $i$ )·시간별( $t$ ) 변이를 이용하여 제도의 효과를 식별하는 다음의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각각 추정

$$y_{i,t+1} = \beta \cdot \text{중소기업세액감면수혜}_{it} + \sum_j \gamma^j \cdot \text{기타유사제도수혜}_{it}^j + \phi_i + \psi_t X'_i + \epsilon_{it} \quad \text{식 (2)}$$

- 종속변수인  $y_{i,t+1}$ 는 기업  $i$ 의  $t+1$ 년도 재무성과를 나타냄
  - 주요 설명변수인 중소기업세액감면수혜 $_{it}$ 는 기업  $i$ 의  $t$ 년도 동 제도 수혜여부 더미 혹은 감면율을 나타냄
    - 본고에서는 주로 동 제도 수혜여부 더미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동 제도로부터 세액감면액이 존재하면 1, 감면액이 없으면 0의 값을 가짐
    -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동 제도 감면율(산출세액을 세액감면액으로 나눈 값)을 사용했으며,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의 감면율은 0으로 설정
  - 기업고정효과( $\phi_i$ )를 포함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시간불변적 특성을 통제함
  - 시간고정효과( $\psi_t$ )는 기업특성 변수( $X'_i$ )와 교호하여 포함함으로써 같은 특성을 가진 기업 간 비교 수행
    - 법인사업자 분석의 경우 법인 종류(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기타법인, 비영리법인), 기업 소재지, 산업 및 업종을 시간고정효과와 교호하여 통제
    - 개인사업자 분석의 경우 신고 유형(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산업 및 업종을 시간고정효과와 교호하여 통제
  - 기업별 매출액(총수입액)을 회귀분석의 가중치로 사용
- 기타 유사감면 및 공제제도 수혜를 추가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타 제도 수혜(비수혜)의 영향을 본 조세특례제도의 영향으로 잘못 식별하는 문제를 해결함

- 본 제도와 유사한 기업 대상 세액감면 및 공제제도들의 수혜여부 더미변수 (기타유사제도수혜<sub>it</sub>)를 각각 통제(29)30)
  - 개별 제도 수혜여부가 아닌 단순히 고용관련 제도와 투자관련 제도 수혜여부 두 가지로 나누어 통제하여도 분석 결과는 동일하였음
-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1년간의 시차를 두는 이유는 역의 인과관계 문제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함임
- 식 (2)에 의하면  $t$ 년도의 본 제도 수혜여부(중소기업세액감면수혜<sub>it</sub>)는  $t+1$ 년도의 기업성과( $y_{i,t+1}$ )에 영향을 줌
  - 본 실증분석이 타당하려면  $t$ 년도의 본 제도 수혜여부(중소기업세액감면수혜<sub>it</sub>)는  $t$ 년도의 기업성과( $y_{i,t}$ )에 영향을 받지만  $t+1$ 년도의 기업성과( $y_{i,t+1}$ )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이 성립해야 함
  - 다만 오차항(error term)의 시계열적 자기상관성(serial correlation)으로 인해  $t$ 년도의 기업성과가  $t+1$ 년도의 기업성과와 상관관계가 높다면 추정에 여전히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
- 식 (2)의  $\beta$  추정치는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 이를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중소기업이  $t-1$ 년도에 본 제도의 수혜를 받지 않다가  $t$ 년도에 받았을 때(혹은 받다가 받지 않았을 때) 기업성과  $y$ 의  $t+1$ 년도와

29)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 제도의 수혜 여부를 통제하였음: 경력단절여성고용기업등에대한세액공제, 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근로소득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교육졸업자복지중소기업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에대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투자세액공제, 육아휴직후고용유지기업에대한인건비세액공제, 의약품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정규직근로자전환세액공제,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사회보험신규가입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의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청년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30)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 제도의 수혜 여부를 통제하였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등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시설비투자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근로자 전환세액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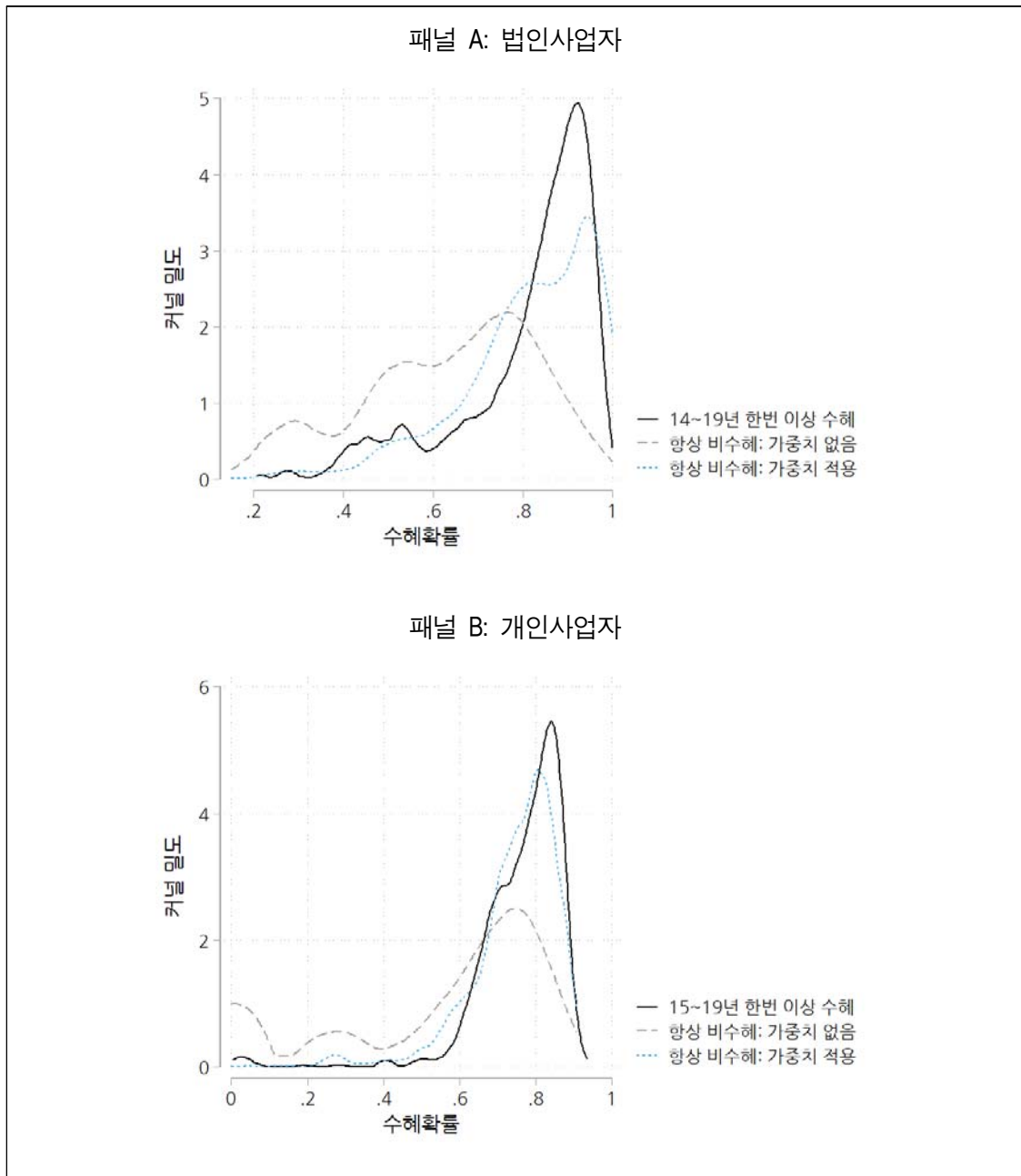
$t$ 년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 강건성 분석의 일환으로 기업의 기준연도 특성을 활용한 매칭분석(PSM) 수행
  - 본 조세특례 수혜기업(처치집단)과 비수혜기업(통제집단) 간 특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앞서 제시한 패널고정효과 모형의  $\beta$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업의 기준연도 특성을 활용한 역확률 가중치 매칭분석(iverse probability weighting) 수행
    - (법인사업자 2014년 특성) 업력, 업력제공, 로그매출액, 로그자산, 산출세액
    - (개인사업자 2015년 특성) 로그총수입, 산출세액
  
- 역확률 가중치 매칭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됨
  - 분석 기간동안 본 조세특례를 적어도 한 번 이상 수혜했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의 기준연도 특성을 설명변수로 하는 로짓모형을 추정
    -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과 자산이 작을수록 본 제도 수혜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이 크고 산출세액이 작을수록 본 제도 수혜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추정된 계수를 바탕으로 본 조세특례제도를 한 번 이상 수혜할 확률( $\hat{p}$ )을 기업 별로 도출함
  - 본 조세특례제도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회귀분석 가중치(매출액 혹은 총수입)에  $\hat{p}/(1-\hat{p})$ 을 곱해줌
    - 이를 통해 수혜기업(처치집단)과 비수혜기업(통제집단)의 특성을 유사하게 함
  
- [그림 IV-1]는 본 조세특례제도를 한 번 이상 수혜할 확률( $\hat{p}$ )의 분포를 수혜기업(분석기간 중 한번 이상 수혜)과 비수혜기업(분석기간 중 모두 비수혜)으로 나누어 보이고 있음
  - 비수혜기업의 경우 역확률가중치( $\hat{p}/(1-\hat{p})$ )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적용했을 때의 분포를 각각 보여줌
  - 법인(패널 A) 및 개인(패널 B) 비수혜기업 모두에서 역확률가중치를 적용했을

때의 확률분포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분포보다 수혜기업의 분포와 더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즉, 역확률가중치 적용 시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의 유사성을 높임으로써 추정의 편의를 줄일 수 있음

[그림 IV-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확률의 분포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나. 분석결과

### 1) 법인사업자에 미치는 효과

- <표 IV-3>은 식 (1)을 추정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수혜여부가 중소기업 법인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
  - 패널 A, B, C의 종속변수는 각각 로그매출액, 영업손익률, 로그자산이며 설명변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수혜여부(감면액>0) 더미변수임
  - (1)~(4)열에서는 분석기간 동안 산출세액이 0보다 큰 기업들을 활용하여 추정한 반면 (5)열에서는 분석기간 동안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정함
    - 500만원을 기준선으로 한 이유는 산출세액이 증가할수록 본 제도 수혜확률이 증가하다가 500만원을 기점으로 해당 증가세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
  - 모든 열에서는 기업 고정효과 및 법인 종류×지역×시간 고정효과를 통제함
  - (2)열에서는 법인 종류×산업×시간 고정효과를, (3)~(5)열에서는 법인 종류×업종×시간 고정효과를 추가적으로 통제
  - (4)열과 (5)열에서는 추가적으로 기타 유사 감면공제 제도 수혜여부 통제
  
- <표 IV-3>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본 조세특례제도는 법인 사업자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패널 A의 모든 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제도효과가 추정되었으며 효과성 크기는 -0.4~-1.8%p 수준으로 나타남
  - (영업손익률) 패널 B의 모든 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계수가 추정되었으며 효과성 크기는 -0.7~-2.1%p 수준으로 추정됨
  - (자산) 패널 C의 모든 열에서 음(-)의 계수(일부 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함)가 추정되었으며 효과성 크기는 -0.6~-1.6%p 수준으로 나타남
  - 산출세액 500만원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5)열에서는 부정적인 제도효과가 대체적으로 더 크게 추정되었음
  - 매출액, 영업손익률, 자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제도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제도는 법인 사업자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IV-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와 중소기업 법인의 재무적 성과

	(1)	(2)	(3)	(4)	(5)
<b>패널 A: 로그매출액</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08 (0.008)	-0.009 (0.008)	-0.011 (0.008)	-0.004 (0.008)	-0.018* (0.010)
N	81,944	81,912	81,860	81,860	36,756
<b>패널 B: 영업손익률</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07 (0.007)	-0.011 (0.011)	-0.011 (0.011)	-0.010 (0.010)	-0.021 (0.021)
N	81,944	81,912	81,860	81,860	36,756
<b>패널 C: 로그자산</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11** (0.006)	-0.011** (0.006)	-0.010* (0.005)	-0.006 (0.005)	-0.016** (0.007)
N	81,979	81,947	81,895	81,895	36,764
최소 산출세액(원) 조건	1	1	1	1	500만
타 제도 수혜여부 통제 고정효과				Y	Y
기업	Y	Y	Y	Y	Y
법인종류×지역×시간	Y	Y	Y	Y	Y
법인종류×산업×시간		Y			Y
법인종류×업종×시간			Y	Y	Y

주: 1.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 사용함

2. 기업별 매출액을 회귀분석의 가중치로 사용

3. (4)열과 (5)열이 본고에서 선호하는 모형임

자료: 저자 작성

□ <표 IV-4>는 설명변수로 본 조세특례 감면여부 더미변수 대신 감면율을 사용했으나 본 조세특례가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은 동일하게 유지됨

○ 구체적으로 본 제도를 통한 세액감면액을 산출세액으로 나눈 값에 10을 곱한 값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세액감면액이 없을 경우 0의 값을 가짐

- 10을 곱해주는 이유는 <표 IV-3>과 추정계수의 크기(scale)를 맞추기 위함임

○ (매출액) 패널 A의 모든 열에서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가 추정되었으며, 감면율 10%p 증가의 효과 크기는 -0.3~0.6%p 수준으로 나타남

○ (영업손익률) 패널 B의 모든 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가 추정되었으며 감면율 10%p 증가의 효과 크기는 -0.2~0.5%p 수준으로 나타남

- (자산) 마찬가지로 패널 C의 모든 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가 추정되었으며 감면율 10%p 증가의 효과 크기는 0~-0.6%p 수준으로 나타남
- 감면율의 범위가 기업규모, 사업장 소재지, 감면업종 등에 따라 0~30%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표 IV-4>와 <표 IV-3>의 추정계수의 크기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설명변수로 감면율을 사용하여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추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조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 법인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표 IV-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과 중소기업 법인의 재무적 성과

	(1)	(2)	(3)	(4)	(5)
<b>패널 A: 로그매출액</b>					
중기특별세액감면율	0.003 (0.003)	0.003 (0.003)	0.002 (0.003)	0.006* (0.004)	-0.003 (0.005)
N	81,944	81,912	81,860	81,860	36,756
<b>패널 B: 영업손익률</b>					
중기특별세액감면율	-0.001 (0.003)	-0.002 (0.004)	-0.002 (0.004)	-0.002 (0.004)	-0.005 (0.007)
N	81,944	81,912	81,860	81,860	36,756
<b>패널 C: 로그자산</b>					
중기특별세액감면율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000 (0.002)	-0.006* (0.003)
N	81,979	81,947	81,895	81,895	36,764
최소 산출세액(원) 조건	1	1	1	1	500만
타 제도 수혜여부 통제				Y	Y
고정효과					
기업	Y	Y	Y	Y	Y
법인종류×지역×시간	Y	Y	Y	Y	Y
법인종류×산업×시간		Y			Y
법인종류×업종×시간			Y	Y	Y

주: 1.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 사용함

2. 기업별 매출액을 회귀분석의 가중치로 사용

3. (4)열과 (5)열이 본고에서 선호하는 모형임

4. 감면율 변수는 산출세액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로 나눈 값에 10을 곱함

자료: 저자 작성

<표 IV-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여부와 중소기업 법인의 재무적 성과(매칭분석)

	(1)	(2)	(3)	(4)	(5)
<b>패널 A: 로그매출액</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02 (0.008)	-0.004 (0.008)	-0.003 (0.007)	0.004 (0.008)	-0.022*** (0.008)
N	80,823	80,795	80,748	80,748	36,282
<b>패널 B: 영업손익률</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00 (0.002)	0.000 (0.002)	0.000 (0.002)	0.000 (0.002)	-0.006 (0.005)
N	80,823	80,795	80,748	80,748	36,282
<b>패널 C: 로그자산</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07 (0.009)	-0.008 (0.008)	-0.006 (0.007)	0.000 (0.007)	-0.018** (0.007)
N	80,851	80,823	80,776	80,776	36,286
최소 산출세액(원) 조건 타 제도 수혜여부 통제 고정효과	1	1	1	1 Y	500만 Y
기업	Y	Y	Y	Y	Y
법인종류×지역×시간	Y	Y	Y	Y	Y
법인종류×산업×시간		Y			Y
법인종류×업종×시간			Y	Y	Y

주: 1.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 사용함

2. 기업별 매출액을 회귀분석의 가중치로 사용

3. (4)열과 (5)열이 본고에서 선호하는 모형임

자료: 저자 작성

□ <표 IV-5>는 본 조세특례제도 수혜여부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의 역확률 가중치 매칭분석(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앞선 분석결과와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었음

○ 본 매칭분석을 통해 통제집단(본 제도 비수혜기업)을 처치집단(본 제도 수혜기업)과 유사하게 만들 수 있음([그림 IV-1] 참조)

○ 산출세액이 0보다 큰 법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모든 패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작은 효과가 추정되었음

○ 산출세액이 500만원보다 큰 법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경우 매출액과 자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효과가 추정되었음

- 본 제도 수혜기업은 비수혜기업에 비해 매출액과 자산이 약 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본 조세특례제도가 법인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은 매칭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됨

<표 IV-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여부와 중소기업 법인의 재무적 성과  
(기업별 선형추세 통제)

	(1)	(2)	(3)	(4)	(5)
<b>패널 A: 로그매출액</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14 (0.011)	-0.014 (0.011)	-0.015 (0.010)	-0.012 (0.008)	-0.022** (0.011)
N	81,944	81,912	81,860	81,860	36,756
<b>패널 B: 영업손익률</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25 (0.024)	-0.023 (0.021)	-0.020 (0.019)	-0.021 (0.019)	-0.027 (0.030)
N	81,944	81,912	81,860	81,860	36,756
<b>패널 C: 로그자산</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02 (0.005)	0.002 (0.005)	0.001 (0.005)	0.004 (0.005)	-0.002 (0.006)
N	81,979	81,947	81,895	81,895	36,764
최소 산출세액(원) 조건	1	1	1	1	500만
타 제도 수혜여부 통제				Y	Y
고정효과					
기업	Y	Y	Y	Y	Y
법인종류×지역×시간	Y	Y	Y	Y	Y
법인종류×산업×시간		Y			Y
법인종류×업종×시간			Y	Y	Y

주: 1.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 사용함

2. 기업별 매출액을 회귀분석의 가중치로 사용

3. (4)열과 (5)열이 본고에서 선호하는 모형임

자료: 저자 작성

□ <표 IV-6>은 강건성 분석의 일환으로 식 (1)에 기업별 선형추세를 통제하여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는데, 분석결과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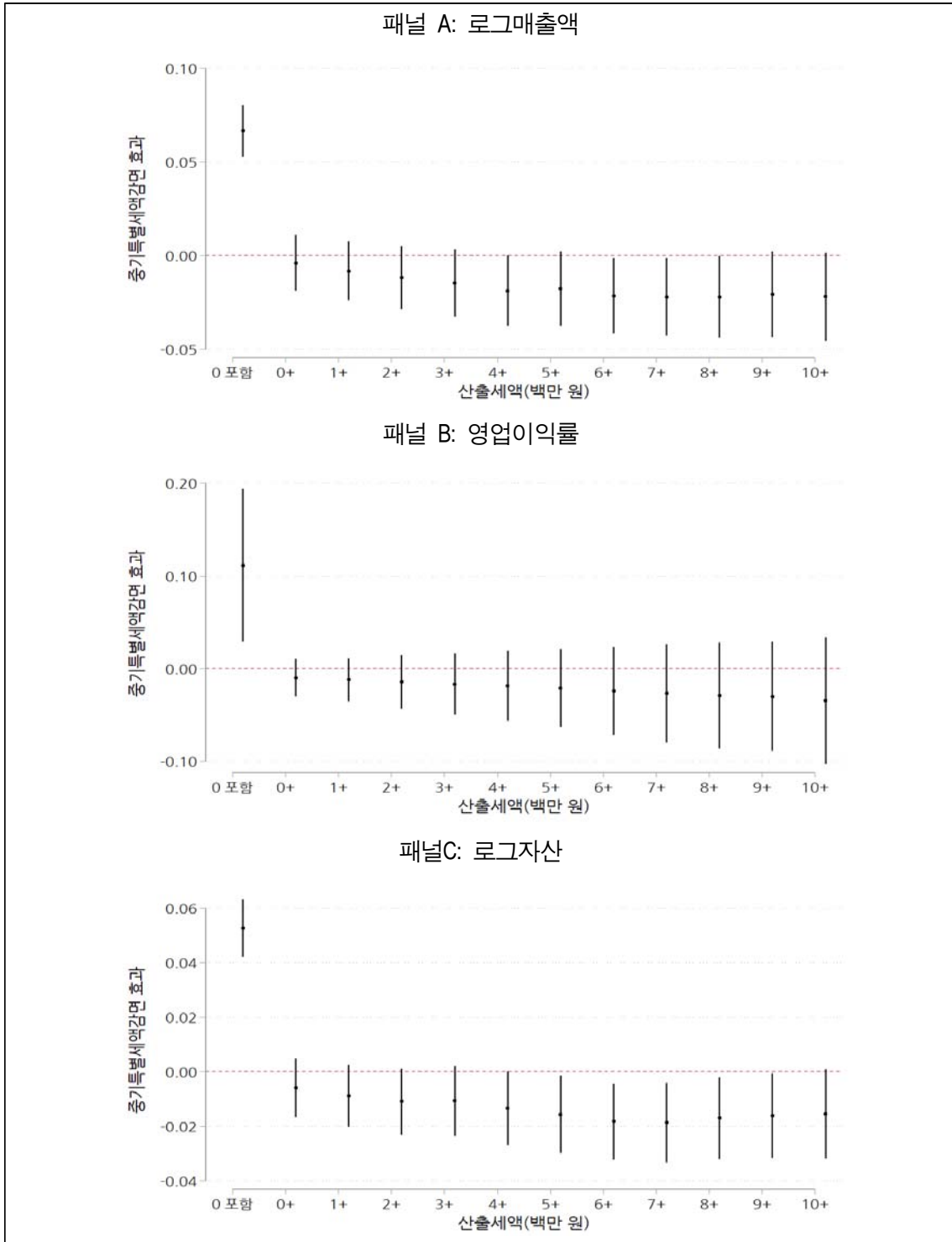
- 본 조세특례제도 수혜기업은 기업의 재무성과가 감소하는 추세인 기업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패널고정효과 모형에 편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앞선 <표 IV-5>에서는 기업의 기준연도 특성을 활용한 매칭분석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었지만, 기업의 기준연도 특성이 각각의 기업의 재무성과 추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개별기업의 재무성과가 연도별 선형추세를 따른다는 다소 강한 가정하에서 식 (1)을 재추정하였음
    - 구체적으로 개별기업은 특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재무성과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식 (1)에서 기업별로 기울기 변수를 추가함
    - 다만 본 제도의 효과가 점점 커지는 동적인 효과(dynamic effects)가 존재할 경우 이러한 선형추세 변수를 포함할 때 추정계수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
  - 선형추세를 포함한 <표 IV-6>의 결과는 일반적인 패널고정효과 모형인 <표 IV-3>이나 매칭분석기법을 활용한 <표 IV-5>의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추정되었음
  - 이는 본 제도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강화하고 있음
- [그림 IV-2]는 추가적인 이질성 및 강건성 분석으로 법인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의 산출세액별로 나누어 보이고 있음
- 구체적으로 [그림 IV-2]에서는 기업의 최소 산출세액 조건을 0, 1,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1,000만원으로 다양하게 설정하여 <표 IV-3>의 (4)열을 재추정
    - 지금까지의 분석(<표 IV-3> 등)에서는 산출세액이 0보다 크거나 500만원보다 큰 기업을 대상으로만 분석
  - 산출세액이 0인 기업까지 분석에 모두 포함할 경우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의 역의 인과관계로 인해 양(+)의 효과가 추정됨
    - 이는 산출세액이 0일 경우 본 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됨으로써 나타나는 기계적인 관계임
    - 예를 들어, 본 제도의 수혜를 받던 특정 기업이 매출액이 줄어 산출세액이 0이 될 경우 본 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됨
    - 하지만 이를 본 제도 비수혜(수혜)로 인해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증가)했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산출세액이 한번이라도 0인 기업은 분석에서 제외하는 본고의 방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산출세액이 0보다 큰 법인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할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 자산에서 모두 양(+)의 효과가 추정되지 않음
    - 모든 산출세액 조건(1원~1,000만원)에서 비슷한 크기의 제도 효과가 추정됨

-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본 조세특례제도가 법인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음

[그림 IV-2] 산출세액별 법인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 개인사업자에 미치는 효과

- <표 IV-7>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식 (1)을 추정하여 본 조세특례제도 수혜여부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이고 있음
  - 패널 A, B, C의 종속변수는 각각 로그총수입, 영업손익률, 로그자산이며 설명변수는 본 조세특례제도 수혜여부(감면액>0) 더미변수임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용한 영업이익과 자산 자료가 적기 때문에(전체 개인사업자의 1/3 가량) 패널 B와 C의 결과는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 분석기간 동안 산출세액이 0보다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정하였음
  - (1)~(4)열에서는 귀속연도 기준 2015~2019년 자료를 사용했다면, (5)열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0년 자료까지 포함하여 추정
  - 모든 열에서 기업 고정효과 및 신고 유형×시간 고정효과를 통제함
  - (2)열에서는 산업×시간 고정효과를, (3)~(5)열에서는 업종×시간 고정효과를 통제
  - (4)열과 (5)열에서는 추가적으로 기타 유사 감면공제 제도 수혜여부 통제
  
- <표 IV-7>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동 조세특례제도는 개인 사업자의 재무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총수입(패널 A), 자산(패널 B), 영업손익률(패널 C)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동 제도의 효과가 추정되었음
    - 기타 유사 감면공제 제도 수혜여부를 통제하거나((4)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2020년 자료를 포함((5)열)하더라도 추정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었음
    - 설명변수로 동 제도 수혜여부 더미변수가 아닌 감면율을 사용하더라도 분석결과에 큰 차이는 없었음
  - 재무성과와 관련된 모든 결과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가 추정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본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재무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표 IV-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여부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재무성과

	(1)	(2)	(3)	(4)	(5)
<b>패널 A: 로그총수입</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13 (0.024)	0.015 (0.023)	0.016 (0.023)	0.015 (0.023)	0.032 (0.022)
N	37,688	37,684	37,680	37,680	45,651
<b>패널 B: 영업손익률</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02 (0.003)	-0.002 (0.003)	-0.002 (0.003)	-0.003 (0.003)	-0.001 (0.003)
N	12,606	12,606	12,598	12,598	15,435
<b>패널 C: 로그자산</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195 (0.142)	0.215 (0.139)	0.220 (0.139)	0.207 (0.138)	0.188 (0.145)
N	11,263	11,263	11,253	11,253	13,865
2020년 포함					Y
최소 산출세액(원) 조건	1	1	1	1	1
고정효과					
기업	Y	Y	Y	Y	Y
신고유형×시간	Y	Y	Y	Y	Y
산업×시간		Y			
업종×시간			Y	Y	Y
타 감면공제 수혜여부 통제				Y	Y

주: 1.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 사용함  
 2. 기업별 수입액을 회귀분석의 가중치로 사용  
 3. (4)열이 본고에서 선호하는 모형임

자료: 저자 작성

- <표 IV-8>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매칭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본 조세특례제도가 개인 사업자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은 동일하게 유지됨
- 기준연도(2015년)의 기업 특성을 바탕으로 한 역확률 가중치 매칭 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통제집단(비수혜기업)과 처치집단(수혜기업)의 유사성을 높임
  - <표 IV-7>과 마찬가지로 패널 A, B, C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제도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음

**<표 IV-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여부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재무성과  
(매칭분석)**

	(1)	(2)	(3)	(4)	(5)
<b>패널 A: 로그총수입</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22 (0.028)	0.026 (0.028)	0.025 (0.030)	0.023 (0.030)	0.032 (0.031)
N	37,676	37,672	37,668	37,668	45,635
<b>패널 B: 영업손익률</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02 (0.003)	-0.002 (0.003)	-0.002 (0.003)	-0.003 (0.003)	-0.001 (0.003)
N	12,598	12,598	12,590	12,590	15,425
<b>패널 C: 로그자산</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319 (0.226)	0.337 (0.224)	0.340 (0.228)	0.313 (0.236)	0.279 (0.220)
N	11,255	11,255	11,245	11,245	13,854
2020년 포함					Y
최소 산출세액(원) 조건 고정효과	1	1	1	1	1
기업	Y	Y	Y	Y	Y
신고유형×시간	Y	Y	Y	Y	Y
산업×시간		Y			
업종×시간			Y	Y	Y
타 감면공제 수혜여부 통제				Y	Y

주: 1.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 사용함  
 2. 기업별 수입액을 회귀분석의 가중치로 사용  
 3. (4)열이 본고에서 선호하는 모형임

자료: 저자 작성

- 본 절의 결과를 정리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패널고정효과 분석에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총수입), 영업손익률, 자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음
    - 단, 개인사업자는 영업이익과 자산 자료가 일부만 가용하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
  - 설명변수를 동 제도 수혜여부가 아닌 감면율로 사용하여도 분석결과는 동일함
  - 기준연도의 기업 특성을 활용한 매칭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론이 도출됨

## 다. 추가 분석

- 2017년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에 다음과 같은 감면한도가 신설됨
  - 본 조세특례제도를 통한 감면 최대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됨
  - 단,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상시근로자 1명당 500만원 씩 1억원에서 차감
  
- 본 소절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개편이 중소기업 법인의 감면액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감면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본 제도개편의 영향의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1) 감면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에 미치는 효과

- <표 IV-9>~<표 IV-10>에서는 제도개편 영향정도의 기업별, 시간별 변이를 이용하는 이중차분법 분석을 통해 세액감면한도 시설이 법인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였음
  - 본 이중차분법 분석에서 처치집단은 제도개편 이전 세액감면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이며 통제집단은 세액감면액이 1억원 미만인 기업임
    - 제도개편 이전 세액감면액은 2015~2018년 평균 세액감면액을 사용
    - 세액감면액이 0.7억~1억원, 0.8억~1억원, 0.9억~1억원인 기업을 각각 통제집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유사성을 순차적으로 높임
  - 처치집단의 2018년 이전과 이후의 차이와, 통제집단의 2018년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비교하는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을 통해 본 제도개편의 효과를 식별할 수 있음
    - 제도개편 전 감면액 1억 이상 여부 더미변수(treat)와 2018년 이후 더미변수(post) 교호항(interaction term)의 효과를 추정
    - 기업고정효과 및 시간고정효과(법인종류×지역×시간, 법인종류×업종×시간)를 통제함

<표 IV-9> 감면한도 신설과 법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액

	(1)	(2)	(3)	(4)
<b>패널 A: 세액감면액(억원)</b>				
감면 1억 이상×18년 이후	-0.611*** (0.083)	-0.419*** (0.087)	-0.400*** (0.096)	-0.442*** (0.143)
N	98,931	1,641	1,278	957
<b>패널 B: 세액감면 수혜여부</b>				
감면 1억 이상×18년 이후	-0.023 (0.029)	0.043 (0.039)	0.034 (0.048)	0.034 (0.056)
N	98,931	1,641	1,278	957
18년 이전 최소 감면액(원)	0	7천만	8천만	9천만
타 제도 수혜여부 통제	Y	Y	Y	Y
고정효과				
기업	Y	Y	Y	Y
법인종류×지역×시간	Y	Y	Y	Y
법인종류×업종×시간	Y	Y	Y	Y

주: 1.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 사용함

2. 기업별 수입액을 회귀분석의 가중치로 사용

자료: 저자 작성

- <표 IV-9>에 의하면 본 제도개편 전 감면액이 1억원이 넘었던 기업의 세액감면액이 감면한도 신설 후 약 4천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패널 A의 종속변수는 세액감면액(단위: 억원)이며 패널 B의 종속변수는 본 제도 수혜여부임
  - (1)열에서는 제도개편 전 감면액이 1억원 미만인 모든 기업을 통제집단으로 사용했다면 (2), (3), (4)열에서는 각각 감면액이 0.7억~1억원, 0.8억~1억원, 0.9억~1억원인 기업을 통제집단으로 사용
  - 패널 A의 (2)~(4)열에 의하면 제도개편 전 감면액이 1억원이 넘었던 기업은 제도개편으로 인해 평균 세액감면액이 약 4천만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패널 B의 세액감면 수혜여부에는 제도개편의 유의미한 효과를 찾을 수 없었음
  -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감면한도 신설이 실제로 감면액이 높았던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감면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음

<표 IV-10> 감면한도 신설과 중소기업 법인의 재무적 성과

	(1)	(2)	(3)	(4)
<b>패널 A: 로그매출액</b>				
감면 1억 이상×18년 이후	-0.012 (0.036)	-0.058 (0.053)	-0.054 (0.059)	-0.041 (0.078)
N	81,860	1,361	1,063	796
<b>패널 B: 영업손익률</b>				
감면 1억 이상×18년 이후	-0.019*** (0.006)	-0.007 (0.008)	-0.008 (0.009)	-0.008 (0.013)
N	81,860	1,361	1,063	796
<b>패널 C: 로그자산</b>				
감면 1억 이상×18년 이후	0.017 (0.022)	-0.040 (0.037)	-0.055 (0.037)	-0.027 (0.038)
N	81,895	1,361	1,063	796
18년 이전 최소 감면액(원)	0	7천만	8천만	9천만
타 제도 수혜여부 통제	Y	Y	Y	Y
고정효과				
기업	Y	Y	Y	Y
법인종류×지역×시간	Y	Y	Y	Y
법인종류×업종×시간	Y	Y	Y	Y

주: 1.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 사용함

2. 기업별 수입액을 회귀분석의 가중치로 사용

자료: 저자 작성

- <표 IV-10>은 감면한도 신설이 법인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음
- <표 IV-9>에서 감면한도 신설로 인해 감면액이 1억원이 넘었던 기업의 감면액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감면액의 감소는 해당 기업의 재무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감면한도 신설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각각 로그매출액(패널 A), 영업손익률(패널 B), 로그자산(패널 C)으로 설정함
  - 감면액이 1억원 미만인 모든 기업을 통제집단으로 사용한 (1)열을 제외하고 감면액이 7천만원 이상인 기업을 통제집단으로 사용한 (2)~(4)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가 추정되지 않았음

- 감면한도 신설로 인해 고액감면 중소기업의 감면액수가 줄었지만 해당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는 유의미한 부정적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냄
- 이는 본 제도가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2절의 결과와 일관됨

## 2) 연도별 효과성 차이

- 다음으로 <표 IV-11>에서는 본 조세특례제도가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연도별로 다른지 살펴보았음
  - 앞선 분석에서는 제도개편 이전 감면액이 1억원이 넘었던 기업에 미치는 효과를 식별하였음
  - 다만 본 제도개편은 개편 이전 감면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의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동 조세특례제도가 법인 중소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도개편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음
    - 구체적으로 동 제도 수혜여부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14~15년, 15~16년, 16~17년, 17~18년으로 나누어 식 (1)을 추정함
    - <표 IV-3>의 (4)열과 동일하게 산출세액이 0보다 큰 기업을 대상으로 추정했으며, 타 제도 수혜여부, 기업 고정효과, 법인종류×지역×시간 고정효과, 법인종류×업종×시간 고정효과 통제
  - 만약 2017년 제도개편의 영향이 존재한다면 14~17년의 제도효과와 17~18년도의 제도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함

<표 IV-11> 연도별 법인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14~15년 (1)	15~16년 (2)	16~17년 (3)	17~18년 (4)
<b>패널 A: 로그매출액</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13 (0.008)	0.003 (0.012)	-0.024 (0.017)	0.007 (0.012)
N	32,340	32,484	32,566	33,010
<b>패널 B: 영업손익률</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06* (0.003)	-0.003* (0.002)	-0.051 (0.050)	-0.006* (0.003)
N	32,340	32,484	32,566	33,010
<b>패널 C: 로그자산</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04 (0.006)	0.005 (0.008)	-0.014 (0.009)	0.008 (0.007)
N	32,342	32,494	32,586	33,032
최소 산출세액(원) 조건	1	1	1	1
타 제도 수혜여부 통제	Y	Y	Y	Y
고정효과				
기업	Y	Y	Y	Y
법인종류×지역×시간	Y	Y	Y	Y
법인종류×업종×시간	Y	Y	Y	Y

주: 1.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 사용함

2. 기업별 수입액을 회귀분석의 가중치로 사용

자료: 저자 작성

- <표 IV-11>은 본 제도 수혜여부가 법인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도별로 나타내고 있는데, 본 제도개편 전과 후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없음
  - 패널 A, B, C는 각각 로그매출액, 영업손익률, 로그자산을 결과변수로 사용함
  - 모든 패널에서 본 제도개편 전의 효과를 나타내는 (1)~(3)열의 추정계수와 개편 후의 효과를 나타내는 (4)열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음
  - 모든 결과변수(패널 A, B, C) 및 연도((1)열~(4)열)에서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가 추정되지 않음
  
- 본 소절의 결과를 종합했을 때, 2017년 세액감면 한도 신설은 제도개편 전 감면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의 감면액을 약 4천만원 줄이는 효과로 이어졌음

- 다만 해당 기업들의 재무성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음
- 또한 본 제도가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개편 전과 후가 큰 차이가 없었음

### 3. 효과성 평가 결과 요약

- (제도 대체관계) 본 제도와 기타 제도 사이의 활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기타 조세지출제도 중 본 제도와 대체성이 높은 제도는 주로 투자 관련 제도인 것으로 파악됨
  - 신설된 감면한도의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활용도 증가 패턴 확인
-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음
  - 실증분석을 위해 국세청 제공 법인세 신고자료(2014~2019년) 및 소득세 신고자료(2015~2020년)를 활용함
  - 본 제도 수혜여부의 기업별·시간별 차이를 이용하여 제도의 효과를 식별하는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각각 추정
  - 추가적인 강건성 분석의 일환으로 기업의 기준연도 특성을 활용한 매칭분석(PSM) 기법을 활용
-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제도는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법인사업자)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자산규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기업 규모에 따라 수혜기업의 매출액과 자산이 최대 2% 감소
  - (개인사업자) 전체 사업자의 총수입액 및 재무자료가 가용한 사업자의 영업이익률과 자산규모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2017년 제도개편의 영향) 세액감면한도 신설 및 고용인원 감소 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축소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제도개편 이전 1억원 초과 감면 기업(처치집단)이 1억원 이하 감면 기업(통제 집단)에 비해 세액감면액이 평균 4천만원 감소
  - 하지만 제도개편 이전 1억원 초과 감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음
  - 또한 제도개편 이전과 개편 이후 본 제도가 전반적인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 다만 본 실증분석에서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로 인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설명변수인 본 조세특례제도 수혜여부는 외생적(exogeneous) 혹은 임의적으로 결정되지 않음
    - 기업의 특성, 과거 성과 및 예측된 미래의 성과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본 조세특례제도 수혜여부가 내생적으로 결정됨
    - 이러한 내생성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을 경우 패널고정효과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실증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여 이와 같은 내생성 문제를 최대한 완화하였음
    - 설명변수(동 제도 수혜여부)와 결과변수(재무성과) 간 1년간의 시차를 둠
    - 업종×연도 고정효과 통제를 통해 같은 업종(산업) 내 비교 수행
    - 기준연도의 기업 특성을 활용한 매칭(PSM)분석 활용
    - 개별 기업의 선형추세 추가 통제
    - 2017년 제도개편을 활용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 분석 수행
  - 하지만 다음의 이유로 인해 내생성 문제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을 경우 본 효과성 분석 결과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
    - 관측할 수 없는 기업의 특성과 동 제도 수혜여부 간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관측할 수 없는 기업 특성으로 인해 수혜기업은 비수혜기업에 비해 재무적 성과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기업성과의 시계열적 자기상관(serial correlation)이 존재할 경우(금년도의 기업성과와 작년도의 기업성과와의 상관관계가 높을 경우) 설명변수와 결과변수 간 시차를 두는 본고의 추정방식이 해당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실증분석을 통해 동 제도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제도효과에의 정확한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음

## V. 고용영향 평가





## V. 고용영향 평가

### 1. 분석 개요

- 본 조세특례 제도의 고용영향 평가를 위해 앞서 효과성 분석에서 소개한 국제청 미시자료를 활용
  - 특히, 고용영향 평가 수행을 위해 법인세 신고자료와 소득세 신고자료를 각각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자료와 연결
  - 고용영향 평가에서는 로그 근로자수, 로그 평균소득 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 하였음
  - 그 외 자료의 특성, 표본 제약 조건은 효과성 분석과 동일함
- (계량추정전략) 본 조세특례제도 수혜여부의 기업별( $i$ )·시간별( $t$ ) 변이를 이용하여 제도의 고용효과를 식별하는 다음의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각각 추정

$$y_{i,t+1} = \beta \cdot \text{중소기업세액감면수혜}_{it} + \sum_j \gamma^j \cdot \text{기타유사제도수혜}_{it}^j + \phi_i + \psi_t X'_i + \epsilon_{it} \quad \text{식 (2)}$$

- 종속변수인  $y_{i,t+1}$ 는 기업  $i$ 의  $t+1$ 년도 고용성과(로그 근로자수, 로그 평균소득)를 나타냄
  - 식 (2)의  $\beta$  추정치는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 이를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중소기업이  $t-1$ 년도에 본 제도의 수혜를 받지 않다가  $t$ 년도에 받았을 때(혹은 받다가 받지 않았을 때) 고용성과  $y$ 의  $t+1$ 년도와  $t$ 년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 그 외 모형의 특징은 효과성 분석 활용 모형과 동일
- 강건성 분석의 일환으로 기업의 기준연도 특성을 활용한 매칭분석(PSM) 수행

- 본 조세특례 수혜기업(처치집단)과 비수혜기업(통제집단)의 특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앞서 제시한 패널고정효과 모형의  $\beta$  추정치에 편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업의 기준연도 특성을 활용한 역확률 가중치 매칭분석(iverse probability weighting) 수행
  - 분석 방법은 효과성 분석에 제시된 설명을 참조

## 2. 분석 결과

### 가. 법인사업자에 미치는 효과

- <표 V-1>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수혜여부가 중소기업 법인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음
  - 패널 A와 B의 종속변수는 각각 로그근로자수(고용의 양)와 로그평균지급액(고용의 질)이며 설명변수는 동일하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여부(감면액>0) 더미변수를 사용함
  - (1)~(4)열에서는 분석기간 동안 산출세액이 0보다 큰 법인을 대상으로 추정함 반면 (5)열에서는 분석기간 동안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추정함
  - 모든 열에서 기업 고정효과 및 법인종류×지역×시간 고정효과를 통제함
  - (2)열에서는 법인종류×산업×시간 고정효과를, (3)~(5)열에서는 법인종류×업종×시간 고정효과를 추가적으로 통제
  - (4)열과 (5)열에서는 추가로 기타 유사 감면공제 제도 수혜여부를 통제함
- <표 V-1>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본 조세특례제도는 법인 사업자의 고용의 양과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수) 모든 열에서 약 3% 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근로자수 감소효과가 추정됨
    - 법인종류×업종×시간 고정효과((3)열)) 및 타 공제 및 감면제도 수혜여부를 추가적으로 통제((4)열))하거나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기업으로 분석 대상으로

한정((5)열)하더라도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지지 않음

-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설명변수의 내생성 문제로 인해 본 제도가 실제로 고용성과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
- (평균지급액) 모든 열에서 통계적·경제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가 추정됨
- 근로자수와 평균지급액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를 관측할 수 없었기에 본 제도는 법인 사업자의 고용의 양과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V-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여부와 중소기업 법인의 고용 성과

	(1)	(2)	(3)	(4)	(5)
<b>패널 A: 로그근로자수</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30*** (0.007)	-0.029*** (0.007)	-0.030*** (0.007)	-0.025*** (0.007)	-0.028*** (0.009)
N	69,504	69,471	69,431	69,431	33,581
<b>패널 B: 로그평균지급액</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00 (0.005)	-0.001 (0.005)	0.001 (0.005)	0.004 (0.006)	0.005 (0.007)
N	69,504	69,471	69,431	69,431	33,581
최소 산출세액(원) 조건	1	1	1	1	500만
타 제도 수혜여부 통제				Y	Y
고정효과					
기업	Y	Y	Y	Y	Y
법인종류×지역×시간	Y	Y	Y	Y	Y
법인종류×산업×시간		Y			Y
법인종류×업종×시간			Y	Y	Y

주: 1.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 사용함

2. 기업별 매출액을 회귀분석의 가중치로 사용

3. (4)열과 (5)열이 본고에서 선호하는 모형임

자료: 저자 작성

- <표 V-2>는 설명변수로 제도 수혜여부(감면 여부 더미) 대신 감면율((세액감면액/산출세액)×10)을 사용했는데, 본 조세특례제도가 법인 사업자의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결과는 동일하게 유지됨
- (근로자수) 감면율 10%p 증가로 인해 법인 사업자의 근로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감면율의 범위가 0~30%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표 V-1>과 <표 V-2>의 추정계수의 크기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평균지급액) 모든 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계수가 추정됨
- 이와 같은 추정결과는 감면 여부 더미를 설명변수로 사용한 <표 V-1>의 결과와 양적이나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

<표 V-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과 중소기업 법인의 고용 성과

	(1)	(2)	(3)	(4)	(5)
<b>패널 A: 로그근로자수</b>					
중기특별세액감면율	-0.011*** (0.003)	-0.011*** (0.003)	-0.011*** (0.003)	-0.009*** (0.003)	-0.011*** (0.004)
N	69,504	69,471	69,431	69,431	33,581
<b>패널 B: 로그평균지급액</b>					
중기특별세액감면율	0.000 (0.002)	-0.000 (0.002)	0.000 (0.002)	0.003 (0.003)	0.003 (0.004)
N	69,504	69,471	69,431	69,431	33,581
최소 산출세액(원) 조건 타 제도 수혜여부 통제 고정효과	1	1	1	1	500만 Y
기업	Y	Y	Y	Y	Y
법인종류×지역×시간	Y	Y	Y	Y	Y
법인종류×산업×시간		Y			Y
법인종류×업종×시간			Y	Y	Y

주: 1.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 사용함  
 2. 기업별 매출액을 회귀분석의 가중치로 사용  
 3. (4)열과 (5)열이 본고에서 선호하는 모형임

자료: 저자 작성

□ <표 V-3>은 기준연도 기업 특성에 기반을 둔 역확률 가중치 매칭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본 조세특례제도 수혜여부가 중소기업 법인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근로자 수) <표 V-1>의 일반적인 패널고정효과 모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수에는 약 3~4% 정도의 부정적인 효과가 추정되었음
- (평균지급액)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추정됨
  - 다만 타 감면 및 공제제도 수혜여부를 통제한 (4)열과 (5)열에서는 패널 A와는 다르게 일부 양(+)의 계수가 추정됨

- 이는 본 제도가 평균지급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근로자 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비해 작을 수 있음을 시사함
- 다만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
- 종합적으로는 매칭분석에서도 본 제도가 중소기업 법인의 고용의 양과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음

<표 V-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여부와 중소기업 법인의 고용 성과(매칭분석)

	(1)	(2)	(3)	(4)	(5)
<b>패널 A: 로그근로자수</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34*** (0.008)	-0.033*** (0.007)	-0.033*** (0.007)	-0.026*** (0.007)	-0.040*** (0.010)
N	68,764	68,731	68,692	68,692	33,176
<b>패널 B: 로그평균지급액</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01 (0.006)	-0.002 (0.005)	-0.002 (0.005)	0.008 (0.006)	0.013* (0.007)
N	68,764	68,731	68,692	68,692	33,176
최소 산출세액(원) 조건	1	1	1	1	500만
타 제도 수혜여부 통제				Y	Y
고정효과					
기업	Y	Y	Y	Y	Y
법인종류×지역×시간	Y	Y	Y	Y	Y
법인종류×산업×시간		Y			Y
법인종류×업종×시간			Y	Y	Y

주: 1.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 사용함

2. 기업별 매출액을 회귀분석의 가중치로 사용

3. (4)열과 (5)열이 본고에서 선호하는 모형임

자료: 저자 작성

□ <표 V-4>는 기업별 선형추세를 추가적으로 통제하여 동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동 제도가 법인 중소기업의 고용의 양과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은 동일하게 유지됨

- 동 제도 수혜기업이 수혜여부와 관계 없이 고용의 양과 질이 감소하는 추세가 있을 경우 동 제도 효과추정 시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표 V-4>에서는 기업별 선형 추이를 추가적으로 통제하여 식 (1)을 재추정하였음

- 앞선 분석과 동일하게 근로자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정되었으며 평균지급액에는 유의미한 제도 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음
- 이와 같은 분석결과 역시 동 제도가 중소기업의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강조하고 있음

<표 V-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여부와 중소기업 법인의 고용 성과  
(기업별 선형추세 통제)

	(1)	(2)	(3)	(4)	(5)
<b>패널 A: 로그근로자수</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17** (0.008)	-0.016** (0.007)	-0.016** (0.007)	-0.015** (0.007)	-0.020** (0.009)
N	69,504	69,471	69,431	69,431	33,581
<b>패널 B: 로그평균지급액</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07 (0.006)	-0.007 (0.006)	-0.006 (0.006)	0.004 (0.008)	0.006 (0.010)
N	69,504	69,471	69,431	69,431	33,581
최소 산출세액(원) 조건	1	1	1	1	500만
타 제도 수혜여부 통제				Y	Y
고정효과					
기업	Y	Y	Y	Y	Y
법인종류×지역×시간	Y	Y	Y	Y	Y
법인종류×산업×시간		Y			Y
법인종류×업종×시간			Y	Y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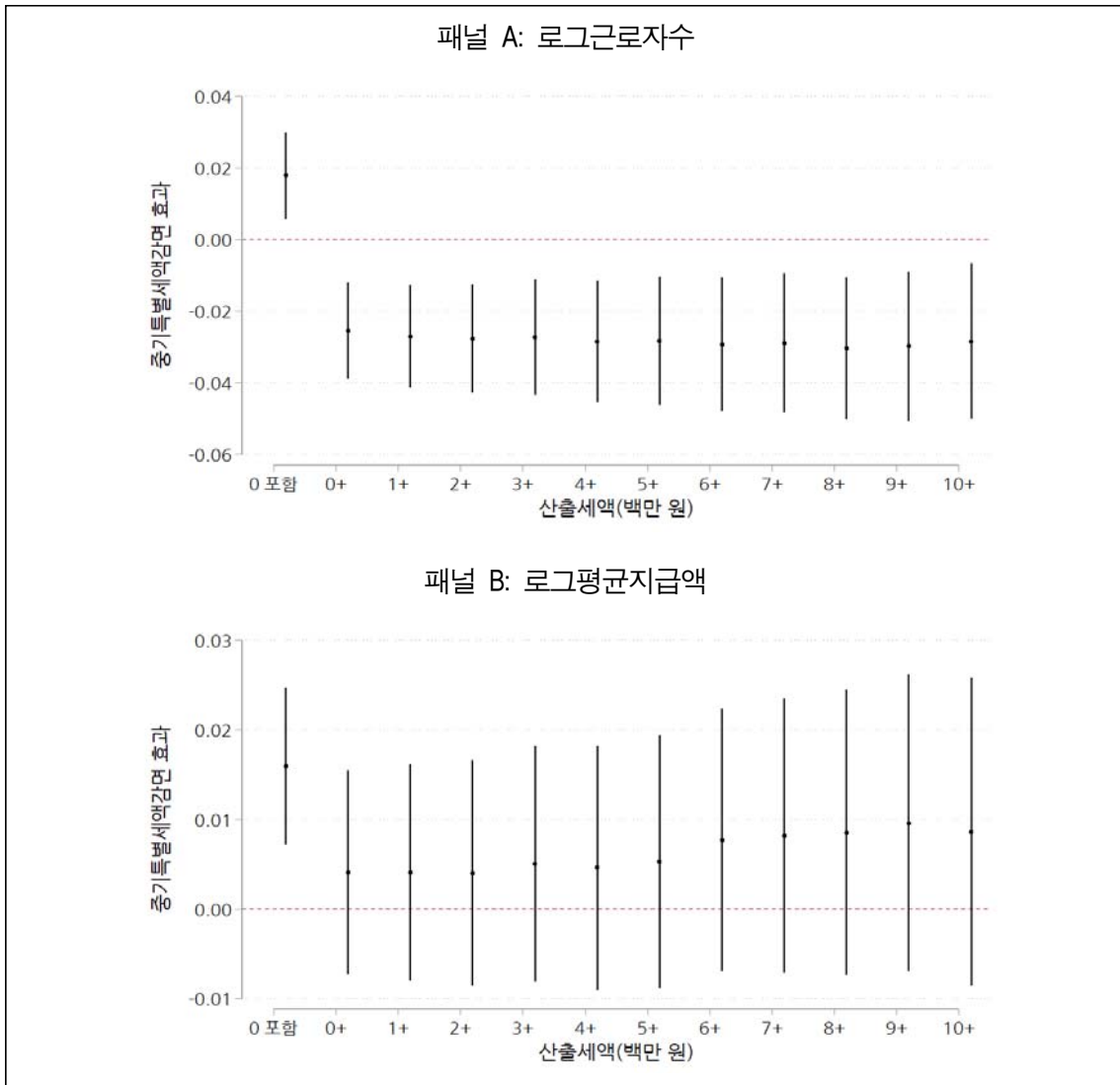
주: 1.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 사용함  
 2. 기업별 매출액을 회귀분석의 가중치로 사용  
 3. (4)열과 (5)열이 본고에서 선호하는 모형임

자료: 저자 작성

- 이질성 및 강건성 분석의 일환으로 [그림 V-1]은 동 제도 수혜여부가 법인 중소기업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의 산출세액별로 나누고 있음
  -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최소 산출세액 조건을 0, 1,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1,000만원으로 다양하게 설정
  - 산출세액이 0인 기업까지 분석에 모두 포함할 경우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의 역의 인과관계로 인해 패널 A와 B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추정됨
  - 산출세액이 0보다 큰 법인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할 경우 근로자수에 미치는 영향(패널 A)은 산출세액과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가 추정됨

- 산출세액이 0보다 큰 범인으로 한정할 경우 평균지급액에 미치는 영향(패널 B)은 양(+)의 계수가 추정되었으나 해당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
- 결과적으로 본 분석은 동 조세특례제도가 법인 중소기업의 고용의 양과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음

[그림 V-1] 산출세액별 중소기업 법인에 대한 고용 효과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나. 개인사업자에 미치는 효과

- 다음으로 본 조세특례제도가 개인사업자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앞선 법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패널 A의 종속변수는 로그근로자수, 패널 B의

종속변수는 로그평균지급액을 사용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성과 측정에 기반이 되는 원천징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V-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고용성과

	(1)	(2)	(3)	(4)	(5)
<b>패널 A: 근로자수</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70 (0.078)	0.098 (0.086)	0.054 (0.077)	0.047 (0.076)	0.047 (0.077)
N	2,972	2,969	2,945	2,945	3,700
<b>패널 B: 로그평균지급액</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16 (0.080)	-0.026 (0.076)	-0.010 (0.077)	-0.002 (0.077)	-0.009 (0.060)
N	2,972	2,969	2,945	2,945	3,700
2020년 포함					Y
최소 산출세액(원) 조건	1	1	1	1	1
타 제도 수혜여부 통제				Y	Y
고정효과					
기업	Y	Y	Y	Y	Y
신고유형×시간	Y	Y	Y	Y	Y
산업×시간		Y			
업종×시간			Y	Y	Y

주: 1.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 사용함  
 2. 기업별 수입액을 회귀분석의 가중치로 사용  
 3. (4)열이 본고에서 선호하는 모형임

자료: 저자 작성

- <표 V-5>에 의하면 본 조세특례제도는 개인사업자의 고용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수(패널 A)와 평균지급액(패널 B)에 미치는 영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추정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업종×시간 고정효과((3)열), 타 감면 공제 수혜여부를 추가적으로 통제하거나((4)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0년 자료를 포함((5)열)하여도 동일하게 유지됨

- 모든 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추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제도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고용의 질과 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샘플이 적기 때문에 추정계수의 신뢰구간이 크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표 V-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고용성과  
(매칭분석)

	(1)	(2)	(3)	(4)	(5)
<b>패널 A: 로그근로자수</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79	0.091	-0.016	-0.021	-0.028
	(0.107)	(0.115)	(0.085)	(0.085)	(0.090)
N	2,972	2,969	2,945	2,945	3,700
<b>패널 B: 로그평균지급액</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82	-0.068	-0.019	-0.011	-0.023
	(0.061)	(0.068)	(0.073)	(0.073)	(0.057)
N	2,972	2,969	2,945	2,945	3,700
2020년 포함					Y
최소 산출세액(원) 조건	1	1	1	1	1
타 제도 수혜여부 통제				Y	Y
고정효과					
기업	Y	Y	Y	Y	Y
신고유형×시간	Y	Y	Y	Y	Y
산업×시간		Y			
업종×시간			Y	Y	Y

주: 1.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 사용함

2. 기업별 수입액을 회귀분석의 가중치로 사용

3. (4)열이 본고에서 선호하는 모형임

자료: 저자 작성

- <표 V-6>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연도 특성을 활용하여 매칭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전반적인 분석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
- 모든 패널과 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가 추정되지 않음
- 따라서 본 제도가 개인사업자의 근로자 수나 평균 지급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본 절의 결과를 종합했을 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의 고용의 양과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패널고정효과 분석에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총 근로자 수, 평균지급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음
    - 단, 고용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개인사업자 표본이 적기 때문에 해당 분석 결과 해석 시 주의가 요구됨
  - 설명변수를 동 제도 수혜여부가 아닌 감면율로 사용하여도 동일한 결론이 도출
  - 기준연도의 기업 특성을 활용한 매칭분석에서도 분석결과에는 차이가 없었음

### 3. 추가 분석

- (감면한도 신설 효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년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에 다음과 같은 감면한도가 신설되었으며,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개편이 중소기업 법인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음
  - 제Ⅳ장의 효과성 평가에서의 추가분석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감면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표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로 한정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함
- 추가분석 모형은 효과성 평가의 추가분석에서 활용한 모형을 고려하였으며, 고용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근로자 수 및 평균지급액 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함
  - 즉, 제도개편 영향정도의 기업별, 시간별 변이를 이용하는 이중차분법 분석을 통해 세액감면한도 신설이 법인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였음
    - 상세한 분석방법에 대해서는 효과성 평가를 참조

<표 V-7> 감면한도 신설과 법인 중소기업의 고용성과

	(1)	(2)	(3)	(4)
<b>패널 A: 로그근로자수</b>				
감면 1억 이상×18년 이후	-0.008 (0.025)	0.008 (0.040)	0.005 (0.048)	0.060 (0.054)
N	79,525	1,357	1,060	794
<b>패널 B: 로그평균지급액</b>				
감면 1억 이상×18년 이후	-0.044*** (0.015)	-0.067** (0.030)	-0.062 (0.038)	-0.037 (0.036)
N	79,525	1,357	1,060	794
18년 이전 최소 감면액(원)	0	7천만	8천만	9천만
타 제도 수혜여부 통제	Y	Y	Y	Y
고정효과				
기업	Y	Y	Y	Y
법인종류×지역×시간	Y	Y	Y	Y
법인종류×업종×시간	Y	Y	Y	Y

주: 1.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 사용함

2. 기업별 수입액을 회귀분석의 가중치로 사용

자료: 저자 작성

- <표 V-7>은 감면한도 신설이 법인 중소기업의 고용의 양과 질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음
- 감면액이 1억원이 넘었던 기업의 감면액이 본 제도 개편으로 인해 감소(<표 IV-9> 참조)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고용성과 또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상시근로자 감소분 1명당 감면한도에서 500만원을 차감하는 제도의 신설로 인해 고용유인이 증가할 수 있음
  - 하지만 종속변수를 근로자 수로 설정한 <표 V-7> 패널 A의 모든 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가 추정되지 않았음
    - 즉, 감면한도 신설은 처치집단(감면액 1억원 초과기업)의 고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음
  - 종속변수가 평균 지급액인 패널 B의 경우 (1)열과 (2)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가 추정되었지만 통제집단을 감면액 8천만~1억원 기업으로 설정한 (3), (4)열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짐

- 감면한도 신설은 처치집단(감면액 1억원 초과기업)의 평균지급액에도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효과성 차이) 다음으로 본 조세특례 제도가 중소기업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연도별로 다른지 살펴보았음
- 앞선 분석에서는 제도개편 이전 감면액이 1억원이 넘었던 기업에 미치는 효과를 식별하였음
  - 다만 본 제도개편은 개편 이전 감면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의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동 조세특례제도가 법인 중소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도 개편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음
    - 구체적으로 동 제도 수혜여부가 기업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14~15년, 15~16년, 16~17년, 17~18년으로 나누어 추정함
    - 상세한 분석방법에 대해서는 효과성 평가를 참조
  - 만약 2017년 제도개편의 영향이 존재한다면 14~17년의 제도효과와 17~18년의 제도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함

〈표 V-8〉 연도별 법인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14~15년 (1)	15~16년 (2)	16~17년 (3)	17~18년 (4)
<b>패널 A: 로그근로자수</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23*	-0.015	-0.003	-0.018
	(0.012)	(0.011)	(0.012)	(0.014)
N	27,508	27,566	27,622	27,974
<b>패널 B: 로그평균지급액</b>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0.007	-0.009	0.006	0.021
	(0.008)	(0.009)	(0.013)	(0.014)
N	27,508	27,566	27,622	27,974
최소 산출세액(원) 조건	1	1	1	1
타 제도 수혜여부 통제	Y	Y	Y	Y
고정효과				
기업	Y	Y	Y	Y
법인종류×지역×시간	Y	Y	Y	Y
법인종류×업종×시간	Y	Y	Y	Y

주: 1.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 사용함

2. (4)열과 (5)열이 본고에서 선호하는 모형임

자료: 저자 작성

- <표 V-8>에서는 본 제도가 법인 중소기업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도별로 살펴보았는데, 제도개편 전과 후의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
  - 근로자 수(패널 A)나 근로자의 평균지급액(패널 B)에 미치는 효과 모두 (1)~(3)월과 (4)월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모든 결과변수 및 연도에서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가 추정되지 않았음
  
- 본 절의 결과를 종합했을 때,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개편(감면한도 신설) 전과 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4. 고용영향 평가 결과 요약

- 본 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가 기업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음
  - 국세청 제공 법인세 신고자료(2014~2019년) 및 소득세 신고자료(2015~2020년)를 활용하여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각각 추정
  - 추가적인 강건성 분석의 일환으로 기업의 기준연도 특성을 활용한 매칭분석(PSM) 기법을 활용
  
- 분석결과 본 제도는 기업 고용의 양과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법인사업자) 수혜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평균급여액에는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 기업 규모에 따라 수혜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최대 3% 감소
  - (개인사업자) 고용자료가 가용한 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 및 평균급여액 모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찾을 수 없었음
  
- (2017년 제도개편의 영향) 세액감면한도 신설 및 고용인원 감소 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축소는 기업의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감면한도 신설 이후에도 제도개편 이전 1억원 초과 감면 기업의 고용에는 부

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음

- 또한 제도개편 이전과 이후 본 제도가 전반적인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 본고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내생성 문제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을 경우 본 고용영향 평가 결과에 편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효과성 분석의 설명을 참조

## VI. 형평성 평가





## VI. 형평성 평가

### 1. 분석 개요

- 본 소절에서는 본 과세특례제도에 의한 형평성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본 과세특례의 감면에 의해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 수평적 형평성 분석에서는 업종 및 수도권 소재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본 과세특례 적용에 의한 실효세율 및 변동계수비율 변화를 살펴봄
    - 수직적 형평성 분석에서는 소득 재분배 효과(income redistribution effect) 및 누진성(progressivity)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Reynolds-Smolensky 소득재분배효과 지수, Kakwani(1977)의 소득세 누진도 지수 및 Suits의 누진성 지수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함
  
- 분석표본은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로서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한 중소기업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무작위추출한 9,508개 법인과 6,979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형평성 분석에서 활용한 법인 표본은 제조업 2,246개, 비제조업 7,262개 등 총 9,508개 법인으로 구성됨
    - 비제조업 중 도매 및 소매업이 2,419개, 건설업 1,663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21개, 부동산업 491개, 정보통신업 480개, 운수 및 창고업 376개 법인 순
  - 개인사업자 표본의 경우, 제조업은 524개이고 비제조업은 6,454개로 구성
    - 비제조업 중 도매 및 소매업이 1,719개, 부동산업 1,398개, 운수 및 창고업 1,156개, 건설업 886개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489개 순
  - 또한 분석 표본에서 과세표준이 영(0) 또는 음수(-)인 법인과 개인사업자 표본은 제외함
    - 이렇게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는 본 과세특례뿐만 아니라 다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혜택 없이도 세부담이 없기 때문임

## 2. 분석 결과

### 가. 수평적 형평성

#### 1) 업종별 수평적 형평성

- (업종별 수평적 형평성) 수혜기업의 본 과세특례 감면혜택 이전의 평균 실효세율과 감면 후 실효세율을 비수혜기업의 평균 실효세율과 비교함으로써 본 과세특례 제도의 수혜여부에 의해 유사한 기업집단 간 평균 실효세율의 차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 중 산출세액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과세표준액을 활용하여 실효세율을 산출세액/과세표준액으로 산출
    - 감면 전 실효세율(A) = 산출세액/과세표준액
    - 감면 후 실효세율(B) = (산출세액-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과세표준액
  - 특히,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실효세율의 차이가 본 과세특례 감면 전과 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업종 내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중소기업 법인의 업종별 실효세율) 전체 업종의 본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평균 실효세율이 1.93%p 인하되고 비수혜기업에 비해 2.42%p 낮아지는 효과를 나타내며, 이러한 효과는 제조업 중소기업 법인에서 높게 나타남
  - 제조업은 본 과세특례를 통해 평균 실효세율이 2.38%p 정도 낮아지면서 비수혜 제조업 법인에 비해 3.28%p가 낮아지는 효과
  - 이에 반해, 비제조업은 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1.72%p가 낮아지면서 비수혜 법인에 비해 2.27%p가 낮아지는 효과
  - 또한 비제조업 중 감면 후에도 제조업(9.46%)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나타낸 업종은 건설업(8.62%), 광업(8.01%), 교육서비스업(8.72%), 금융 및 보험업(8%), 농업, 임업 및 어업(8.03%) 등 다수가 존재
    - 그러나 도매 및 소매업(9.9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82%)은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

<표 VI-1> 법인의 2018년 귀속 업종별 수혜기업 및 비수혜기업의 실효세율 차이

(단위: %)

구분	수혜기업 실효세율		인하 효과 (B-A)	비수혜기업 실효세율(C)	실효세율 차이	
	감면 전 (A)	감면 후 (B)			감면 전 (C-A)	감면 후 (C-B)
제조업	11.84	9.46	-2.38	12.74	0.90	3.28
소 계	10.96	9.24	-1.72	11.51	0.55	2.27
건설업	11.01	8.62	-2.39	11.88	0.87	3.26
광업	10.78	8.01	-2.77	10.00	-0.78	1.99
교육서비스업	10.77	8.72	-2.04	10.63	-0.14	1.90
금융 및 보험업	10.00	8.00	-2.00	10.98	0.98	2.98
농업, 임업 및 어업	10.22	8.03	-2.19	10.97	0.75	2.94
도매 및 소매업	10.92	9.92	-1.00	11.49	0.57	1.5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23	11.82	-0.41	12.20	-0.03	0.38
비 제 조 업	12.57	10.93	-1.64	12.22	-0.35	1.2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52	8.71	-1.82	10.86	0.33	2.1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1.92	9.72	-2.19	10.29	-1.63	0.56
숙박 및 음식점업	10.00	8.12	-1.88	11.68	1.68	3.5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0.32	8.44	-1.88	10.42	0.11	1.99
운수 및 창고업	10.92	8.73	-2.20	10.94	0.02	2.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0.00	7.31	-2.69	11.37	1.37	4.0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1.20	9.18	-2.03	11.59	0.39	2.41
정보통신업	11.22	9.35	-1.88	11.36	0.14	2.0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22	8.19	-2.03	11.15	0.93	2.96
전체 업종	11.23	9.31	-1.93	11.73	0.50	2.42

주: 1. 표본에서 과세표준이 영(0)인 표본을 제외하고, 금융 및 보험업 표본이 관측되지 않아 제외함

2. 평균 실효세율은 산출세액:과세표준액으로 감면 전 실효세율(A)을 측정하고 감면 후 실효세율(B)은 (산출세액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 과세표준액으로 측정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

□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실효세율) 본 과세특례 감면 후 개인사업자의 평균 실효세율은 1.47%p 인하되고 비수혜기업에 비해 1.07%p 낮아지는 효과를 나타냄

○ 개인사업자 제조업의 감면 전 평균 실효세율이 9.8%로 비수혜기업 7.41%보다 높은 실효세율이었으나 2.3%p 인하됨으로써 7.49%로 차이가 작아지는 효과

○ 비제조업은 본 과세특례 감면 후 1.35%p 인하여 제조업의 인하효과보다 작은 수준

- 그러나 비수혜기업과의 감면 전 실효세율 차이가 -0.18%p였다가 1.18%p로 역전되는 현상
- 건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 다수 존재
- 모든 비제조업 중 제조업보다 큰 인하효과를 나타낸 업종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임

<표 VI-2> 개인사업자의 2018년 귀속 업종별 수혜기업 및 비수혜기업의 실효세율 차이 (단위: %)

구분	수혜기업 실효세율		인하 효과 (B-A)	비수혜기업 실효세율(C)	실효세율 차이	
	감면 전 (A)	감면 후 (B)			감면 전 (C-A)	감면 후 (C-B)
제조업	9.80	7.49	-2.30	7.41	-2.39	-0.09
소 계	8.07	6.71	-1.35	7.89	-0.18	1.18
건설업	7.93	6.12	-1.81	7.76	-0.18	1.64
교육서비스업	10.74	8.71	-2.03	6.81	-3.93	-1.90
농업, 임업 및 어업	8.74	7.00	-1.74	7.45	-1.29	0.45
도매 및 소매업	8.88	8.07	-0.81	6.68	-2.20	-1.3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1.74	10.57	-1.17	14.00	2.26	3.43
부동산업	8.89	8.67	-0.22	9.04	0.15	0.37
비제조업	8.98	7.11	-1.88	7.35	-1.64	0.24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3.69	9.82	-3.87	6.00	-7.69	-3.82
숙박 및 음식점업	8.37	8.18	-0.19	6.99	-1.37	-1.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6.94	6.94	6.94
운수 및 창고업	6.66	4.96	-1.70	6.20	-0.46	1.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11.63	10.64	-0.99	8.72	-2.91	-1.9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05	7.50	-1.56	9.99	0.94	2.50
정보통신업	10.20	8.35	-1.85	7.80	-2.40	-0.5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88	6.84	-1.04	6.83	-1.06	-0.02
전체 업종	8.28	6.81	-1.47	7.88	-0.40	1.07

주: 1. 표본에서 과세표준이 영(0)인 표본을 제외하고, 광업(1개) 표본이 관측되지 않아 제외함

2. 평균 실효세율은 산출세액:과세표준액으로 감면 전 실효세율(A)을 측정하고 감면 후 실효세율(B)은 (산출세액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 과세표준액으로 측정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

## 2) 수도권 및 비수도권 수평적 형평성

-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감면효과) 감면 전 비수도권 소재 법인의 평균 실효세율이 높았으나 감면 후에는 낮아지는 효과를 나타냄
- 수도권 소재 법인의 평균 실효세율이 1.61%p 인하된 반면, 비수도권은 2.27%p가 인하되어 본 과세특례를 통한 감면으로 비수도권 소재 법인의 세부담이 감소되는 효과
    - 수도권 제조업이 2%p 인하된 반면, 비수도권 제조업은 2.8%p가 인하되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감면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준
    - 또한 수도권 비제조업이 1.44%p 인하된 반면, 비수도권 비제조업은 2.04%p 인하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혜택이 큰 수준
  -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11.43%)이 감면 전에는 비수혜기업(10.8%)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감면 후의 평균 실효세율(9.16%)은 비수혜기업보다 낮은 수준
    - 결국, 본 과세특례제도의 실질적인 감면효과가 비수도권 소재 기업들에서 발생했음을 의미

〈표 VI-3〉 법인의 2018년 귀속 수도권-비수도권 실효세율의 차이

(단위: %)

구분		수혜기업 실효세율		인하 효과(B-A)	비수혜기업 실효세율(C)	실효세율 차이	
		감면 전(A)	감면 후(B)			감면 전(C-A)	감면 후(C-B)
수도권(①)	제조업	11.57	9.57	-2.00	13.37	1.80	3.80
	비제조업	10.82	9.38	-1.44	12.05	1.23	2.66
	소계	11.05	9.44	-1.61	12.29	1.24	2.85
비수도권(②)	제조업	12.14	9.34	-2.80	11.63	-0.51	2.29
	비제조업	11.12	9.08	-2.04	10.62	-0.50	1.54
	소계	11.43	9.16	-2.27	10.80	-0.64	1.64
계		11.23	9.31	-1.93	11.73	0.50	2.42
수도권-비수도권의 차이(①-②)		-0.38	0.28	0.66	1.49	1.88	1.22

주: 1. 표본에서 과세표준이 영(0)인 표본을 제외하고, 광업(1개) 표본이 관측되지 않아 제외함

2. 평균 실효세율은 산출세액 ÷ 과세표준액으로 감면 전 실효세율(A)을 측정하고 감면 후 실효세율(B)은 (산출세액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 과세표준액으로 측정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

### 3) 변동계수비율을 활용한 수평적 형평성 분석

#### 가) 분석 개요

□ 수평적 공평성은 동일한 지급능력을 지닌 납세자들이 동일한 수준의 조세부담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변동계수비율(coefficient of variation ratio, CV ratio)이 활용되고 있음(Westort and Wagner, 2002)

○ 수평적 공평성은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부담의 크기가 달라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과는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수평적 공평성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이를 측정(최원석·백경엽, 2009)

○ 변동계수비율(CV ratio): 수평적으로 공평한 정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조세부담률의 분포가 평균치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밀도로 분포하는가를 측정하는 것

$$- \text{CV ratio1} = \frac{\frac{SDT(Tax)}{E(Tax)}}{\frac{SDT(TI)}{E(TI)}}, \quad \text{CV ratio2} = \frac{\frac{SDT(ETR)}{E(ETR)}}{\frac{SDT(TI)}{E(TI)}}$$

여기서 *Tax*: 세부담액, *TI*: 과세표준, *ETR*: 세부담액/과세표준

- 특히, 이러한 CV ratio에서 분모인 과세표준(*TI*)이 영(0) 이하인 표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

□ 변동계수비율(CV ratio)이 크다는 것은 평균에서 세부담액 또는 *ETR*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으로 형평성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동일 업종이나 유사 소득구간 집단에서 변동계수비율이 큰 경우는 세부담수준이나 *ETR* 수준이 상이하다는 것으로 수평적 형평성 수준이 낮음을 의미

○ 그러나 과세표준액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본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세부담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세부담 수준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CV ratio가 증가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이 모두 포함된 표본보다는 수혜기업으로만 구성된 표본으로 CV ratio를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

□ CV ratio를 업종별 집단과 수입금액 및 자산 분위별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집단별 수평적 형평성을 분석하고자 함

- 업종별 집단은 대분류로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그리고 비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CV ratio를 분석하여 업종 내 수평적 형평성 수준을 판단
-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CV ratio를 비교하여 수평적 형평성 수준을 분석
- 수입금액 및 자산 분위 구간의 집단별 CV ratio를 비교하여 각 집단 내 수평적 형평성 수준을 분석

나) 중소기업 법인의 변동계수비율 분석결과

- 중소기업 법인을 대상으로 변동계수비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본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대체로 수평적 형평성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나타냄
  - 본 과세특례 적용 후에 대체로 CV Ratio1나 CV Ratio2가 모두 증가하여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
    - 그러나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숙박,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의 CV Ratio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고 있어 오히려 수평적 형평성에 덜 부정적
  - 이러한 결과는 본 과세특례가 업종 내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시킨 것으로 해석

<표 VI-4> 법인의 2018년 귀속 수혜기업의 업종별 변동계수비율 변화 분석결과

구분	감면 전		감면 후		차이	
	CV Ratio1(A)	CV Ratio2(B)	CV Ratio1(C)	CV Ratio2(D)	CV Ratio1 차이(C-A)	CV Ratio2 차이(D-B)
건설업	1.2092	0.0441	1.3349	0.0582	0.1257	0.0141
광업	1.0636	0.1259	1.0183	0.1912	-0.0453	0.0653
교육서비스업	1.2839	0.0909	1.3279	0.1055	0.0440	0.0146
금융 및 보험업	1.1429	0.0612	1.1429	0.0625	0	0.0013
농업, 임업 및 어업	1.3790	0.0852	1.4942	0.1307	0.1152	0.0455
도매 및 소매업	1.2986	0.0457	1.3470	0.0495	0.0484	0.003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065	0.1753	1.1133	0.1753	0.0069	-0.0000
부동산업	1.0205	0.0290	1.0205	0.0293	0	0.0004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1970	0.0425	1.2454	0.0520	0.0484	0.009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0667	0.0461	1.0989	0.0521	0.0322	0.0061
숙박 및 음식점업	1.2485	0.1185	1.2508	0.1244	0.0023	0.005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900	0.0730	1.1672	0.1287	0.0772	0.0557

<표 VI-4>의 계속

구분	감면 전		감면 후		차이	
	CV Ratio1(A)	CV Ratio2(B)	CV Ratio1(C)	CV Ratio2(D)	CV Ratio1 차이(C-A)	CV Ratio2 차이(D-B)
운수 및 창고업	1.2801	0.0859	1.3559	0.1090	0.0757	0.023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1808	0.0436	1.2290	0.0776	0.0482	0.034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1950	0.0504	1.2512	0.0610	0.0562	0.0106
정보통신업	1.1767	0.0330	1.2302	0.0386	0.0535	0.0056
제조업	1.1686	0.0294	1.2472	0.0346	0.0787	0.005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2334	0.0536	1.2710	0.0763	0.0376	0.0227
전체 업종	1.2022	0.0100	1.2488	0.0119	0.0467	0.0018

주: 1. 표본에서 과세표준이 영(0)인 표본을 제외하고,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표본이 관측되지 않아 제외함

$$2. CV \text{ ratio1} = \frac{\frac{SDT(Tax)}{E(Tax)}}{\frac{SDT(TI)}{E(TI)}}, \quad CV \text{ ratio2} = \frac{\frac{SDT(ETR)}{E(ETR)}}{\frac{SDT(TI)}{E(TI)}}$$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CV ratio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체적으로 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CV ratio가 증가하여 각 권역별로도 수평적 형평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나타냄

- CV ratio1와 CV ratio2의 차이가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변동계수비율 모두 증가
  - 각각 0.0467와 0.0018 만큼 증가
- 그러나 수도권 소재 기업의 CV ratio1이 1.1618 → 1.1861로 0.0244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1.2370 → 1.3522로 0.1152 증가하여 수도권 소재 기업 간 수평적 형평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적게 저해

<표 VI-5> 2018년 귀속 수도권-비수도권 변동계수비율 변화: 전체표본

구분		감면 전		감면 후		차이	
		CV Ratio1(A)	CV Ratio2(B)	CV Ratio1(C)	CV Ratio2(D)	CV Ratio1 차이(C-A)	CV Ratio2 차이(D-B)
수도권(①)	제조업	1.1636	0.0445	1.2255	0.0513	0.0619	0.0068
	비제조업	1.1283	0.0088	1.1353	0.0102	0.0070	0.0014
	소계	1.1618	0.0100	1.1861	0.0114	0.0244	0.0014

<표 VI-5>의 계속

구분		감면 전		감면 후		차이	
		CV Ratio1(A)	CV Ratio2(B)	CV Ratio1(C)	CV Ratio2(D)	CV Ratio1 차이(C-A)	CV Ratio2 차이(D-B)
비수도권(②)	제조업	1.1523	0.0244	1.2552	0.0290	0.1029	0.0047
	비제조업	1.2777	0.0410	1.3915	0.0520	0.1139	0.0110
	소계	1.2370	0.0210	1.3522	0.0255	0.1152	0.0045
계		1.2022	0.0100	1.2488	0.0119	0.0467	0.0018
수도권-비수도권의 차이 (①-②)		-0.0752	-0.011	-0.1661	-0.0141	-0.0908	-0.0031

주: 1. 표본에서 과세표준이 영(0)인 표본을 제외하고,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표본이 관측되지 않아 제외함

$$2. CV\ ratio1 = \frac{\frac{SDT(Tax)}{E(Tax)}}{\frac{SDT(TI)}{E(TI)}}, \quad CV\ ratio2 = \frac{\frac{SDT(ETR)}{E(ETR)}}{\frac{SDT(TI)}{E(TI)}}$$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

- 수입금액의 분위구간 집단별 CV ratio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전체적으로 수평적 형평성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됨
  - 전체표본에서 CV ratio1 차이와 CV ratio2 차이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어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
  - 이에 반해, 수혜법인 표본에서는 20%p 및 50~80%p 구간에서 CV ratio1 차이가 음(-)의 값을 나타내어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결과
    - 이러한 구간 외의 다른 구간에서는 여전히 양(+)의 값으로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

<표 VI-6> 법인의 2018년 귀속 수입금액 구간별 변동계수비율 변화

(단위: %)

구분		감면 전		감면 후		차이	
		CV Ratio1(A)	CV Ratio2(B)	CV Ratio1(C)	CV Ratio2(D)	CV Ratio1 차이(C-A)	CV Ratio2 차이(C-B)
전체표본	5%p	1.0376	0.0168	1.0399	0.0205	0.0023	0.0037
	10%p	1.4384	0.0271	1.5210	0.0463	0.0826	0.0192
	20%p	1.5583	0.0413	1.7654	0.0768	0.2072	0.0355
	30%p	1.4905	0.0552	1.6927	0.1047	0.2023	0.0495
	40%p	1.5349	0.0490	1.7351	0.0813	0.2003	0.0322
	50%p	1.3138	0.1233	1.3536	0.1679	0.0399	0.0446

<표 VI-6>의 계속

(단위: %)

구분		감면 전		감면 후		차이	
		CV Ratio1(A)	CV Ratio2(B)	CV Ratio1(C)	CV Ratio2(D)	CV Ratio1 차이(C-A)	CV Ratio2 차이(C-B)
전체표본	60%p	1.6388	0.1356	1.8411	0.1641	0.2023	0.0285
	70%p	1.3570	0.1735	1.3800	0.1848	0.0230	0.0113
	80%p	1.3121	0.1939	1.3544	0.2094	0.0423	0.0155
	90%p	1.2316	0.1396	1.3751	0.1403	0.1434	0.0007
	95%p	1.1011	0.0219	1.1179	0.0239	0.0168	0.0021
수혜기업 표본	5%p	0.9977	0.0349	0.9997	0.0708	0.0020	0.0359
	10%p	1.0831	0.0526	1.0995	0.1075	0.0163	0.0549
	20%p	1.0795	0.0576	1.0489	0.1194	-0.0306	0.0618
	30%p	1.1600	0.0713	1.1909	0.1273	0.0309	0.0559
	40%p	1.3285	0.1044	1.3573	0.2025	0.0288	0.0981
	50%p	1.3224	0.1153	1.2813	0.1371	-0.0412	0.0219
	60%p	1.3879	0.1551	1.3855	0.1671	-0.0024	0.0120
	70%p	1.3599	0.1836	1.3395	0.1851	-0.0203	0.0015
	80%p	1.3373	0.2036	1.3113	0.2020	-0.0260	-0.0016
	90%p	1.2340	0.1428	1.4016	0.1419	0.1675	-0.0009
95%p	1.1113	0.0933	1.2130	0.1000	0.1017	0.0066	

주: 1. 표본에서 과세표준이 영(0)인 표본을 제외하고,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표본이 관측되지 않아 제외함

2. 각 분위별 기준금액 범위는 다음과 같음

5%p: 0~62백만원,	10%p: 161백만원,	20%p: 397백만원
30%p: 680백만원,	40%p: 10억원,	50%p: 14.7억원
60%p: 20.8억원,	70%p: 29.6억원,	80%p: 44.5억원
90%p: 78.4억원,	95%p: 135억원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

□ 또한 자산규모 분위 구간별로 CV ratio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대체로 수평적 형평성 수준을 낮추는 결과가 나타남

○ 전체표본에서 모든 구간에서 CV ratio가 양(+)의 값

- 그러나 수혜법인 표본에서는 20%p, 40~50%p 및 70%p를 제외한 구간에서 양 (+)의 값

○ 이렇게 CR ratio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유사한 수준의 자산규모를 가진 집단 내에서 세부담 수준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

<표 VI-7> 법인의 2018년 귀속 자산규모 구간별 변동계수비율 변화

(단위: %)

구분		감면 전		감면 후		차이	
		CV Ratio1(A)	CV Ratio2(B)	CV Ratio1(C)	CV Ratio2(D)	CV Ratio1 차이(C-A)	CV Ratio2 차이(C-B)
전체표본	5%p	1.0003	0.0503	1.0410	0.1148	0.0407	0.0646
	10%p	1.0291	0.0470	1.0313	0.1217	0.0022	0.0747
	20%p	1.3859	0.0627	1.5475	0.1081	0.1616	0.0453
	30%p	1.1416	0.0635	1.1856	0.1320	0.0440	0.0684
	40%p	1.3335	0.1327	1.3985	0.2255	0.0649	0.0928
	50%p	1.3330	0.1181	1.3447	0.1671	0.0117	0.0490
	60%p	1.3579	0.1426	1.3770	0.1792	0.0191	0.0367
	70%p	1.3705	0.2019	1.4169	0.2287	0.0464	0.0267
	80%p	1.3054	0.1958	1.3920	0.2156	0.0866	0.0197
	90%p	1.2266	0.1719	1.3331	0.1866	0.1066	0.0147
	95%p	1.1052	0.0242	1.1240	0.0266	0.0188	0.0024
수혜기업 표본	5%p	1.0092	0.0079	1.0238	0.1082	0.0146	0.1003
	10%p	1.0184	0.0606	1.0217	0.1245	0.0033	0.0639
	20%p	1.0767	0.0679	1.0677	0.1131	-0.0089	0.0453
	30%p	1.1294	0.0718	1.1482	0.1300	0.0187	0.0582
	40%p	1.2752	0.0922	1.2618	0.1981	-0.0134	0.1059
	50%p	1.3473	0.1239	1.3295	0.1667	-0.0178	0.0428
	60%p	1.3723	0.1524	1.4005	0.1812	0.0282	0.0288
	70%p	1.3275	0.1969	1.3196	0.2105	-0.0079	0.0136
	80%p	1.3147	0.2307	1.3492	0.2449	0.0345	0.0142
	90%p	1.2281	0.2405	1.2294	0.2606	0.0013	0.0200
	95%p	1.1077	0.0962	1.2103	0.1079	0.1026	0.0116

주: 1. 표본에서 과세표준이 영(0)인 표본을 제외하고,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표본이 관측되지 않아 제외함

2. 각 분위별 기준금액 범위는 다음과 같음

5%p: 91.9백만원,	10%p: 173백만원,	20%p: 325백만원
30%p: 495백만원,	40%p: 696백만원,	50%p: 10억원
60%p: 14.4억원,	70%p: 20.9억원,	80%p: 33억원
90%p: 64.5억원,	95%p: 1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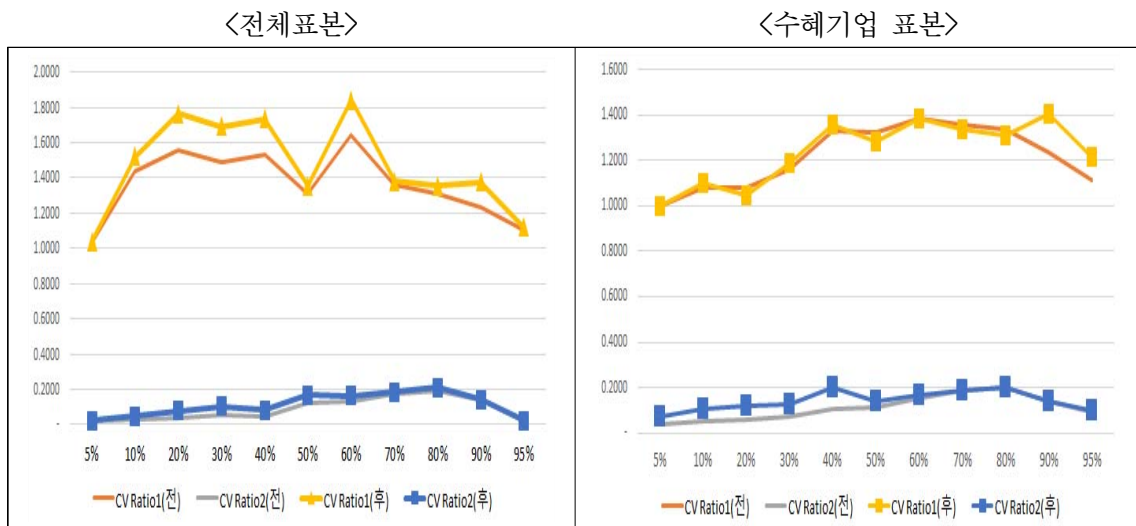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

□ 수입금액 및 자산규모의 분위 구간별 본 과세특례 적용 전과 후의 CV ratio의 변화 크기를 나타낸 [그림 VI-1]에서 전체적으로 적용 후의 CV ratio가 증가하고 있어, 본 과세특례제도가 수평적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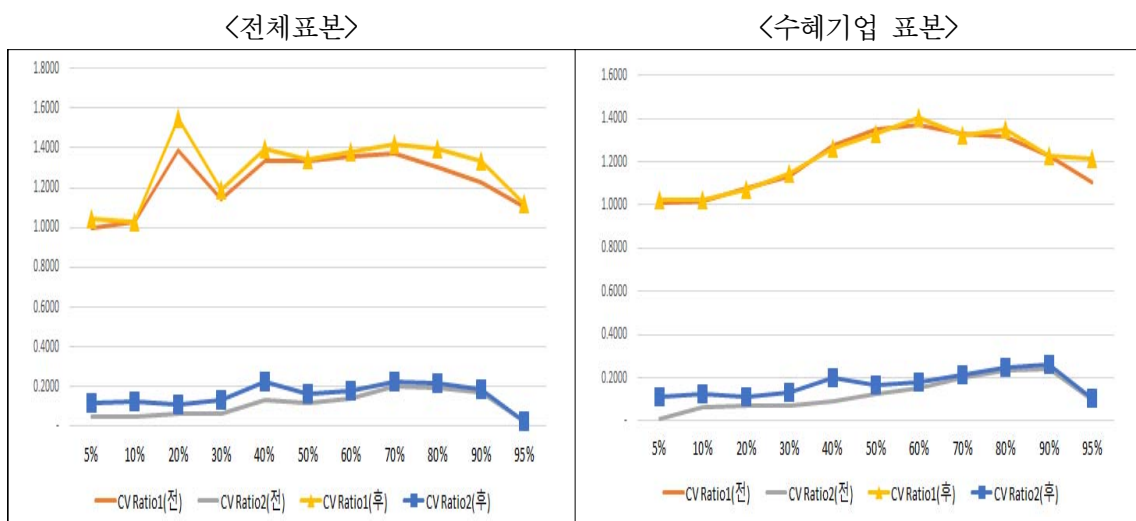
- CV ratio1이 CV ratio2에 비해 변동 폭이 크지만, 대체로 유사한 변동 추이를 유지
- 수혜법인 표본의 자산규모의 분위 구간별 CV ratio1이 증가와 감소가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
  - 수혜법인 표본의 자산규모의 분위 구간별 CV ratio1이 양(+)과 음(-)의 값이 혼재되어 변동 폭도 상대적으로 큰 수준
- 따라서 본 과세특례가 대체로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영향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그림 VI-1] 수입금액 및 자산규모별 변동계수비율 추이(법인사업자)

A. 수입금액 구간별



B. 자산규모 구간별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

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변동계수비율 분석결과

- 본 과세특례 적용 후 개인사업자의 수평적 형평성 수준도 대체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운수 및 창고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제외한 CV ratio1 차이와 CV ratio2 차이 모두 양(+)값을 나타내어 본 과세특례 적용 후의 CV ratio가 증가
  - 특히 제조업의 CV ratio2 차이가 5.7505로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과세특례 적용으로 수평적 형평성이 다른 업종보다 크게 저해된다는 것을 의미

<표 VI-8> 개인사업자의 2018년 귀속연도 업종별 변동계수비율 변화 분석결과

구분	감면 전		감면 후		차이	
	CV Ratio1(A)	CV Ratio2(B)	CV Ratio1(C)	CV Ratio2(D)	CV Ratio1 차이(C-A)	CV Ratio2 차이(D-B)
건설업	1.7026	0.3247	1.7117	0.3573	0.0090	0.0325
농업, 임업 및 어업	1.2362	0.4240	1.3661	0.5294	0.1298	0.1054
도매 및 소매업	1.9389	0.3574	1.9316	0.3607	-0.0073	0.00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761	0.2778	1.2761	0.2778	-0.0000	-0.0000
부동산업	1.6459	0.7502	1.6850	0.7913	0.0391	0.041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3210	0.4657	1.3439	0.4542	0.0230	-0.0116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1547	0.5875	1.1585	0.6004	0.0038	0.0129
숙박 및 음식점업	1.2450	0.4620	1.2575	0.4896	0.0125	0.0276
운수 및 창고업	2.7799	0.2307	2.6364	0.2571	-0.1436	0.026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3525	0.3222	1.5997	0.6140	0.2472	0.291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046	0.4866	1.4586	0.5514	0.0540	0.0648
정보통신업	1.7793	0.3712	1.8302	0.4073	0.0509	0.0362
제조업	1.8397	0.3637	1.8316	0.3791	-0.0081	0.015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958	0.3171	1.4420	0.3630	0.0462	0.0459
전체 업종	1.9631	0.3262	1.9581	0.3596	-0.0050	0.0333

주: 1. 표본에서 과세표준이 영(0)인 표본을 제외하고, 광업,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건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표본이 관측되지 않아 제외함

$$2. CV \text{ ratio1} = \frac{\frac{SDT(Tax)}{E(Tax)}}{\frac{SDT(TI)}{E(TI)}}, \quad CV \text{ ratio2} = \frac{\frac{SDT(ETR)}{E(ETR)}}{\frac{SDT(TI)}{E(TI)}}$$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

□ 또한 수입금액 분위 구간별 CV ratio 분석에서도 전반적으로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나타냄

- 전체표본의 본 과세특례 적용 후 CV ratio1과 CV ratio2가 모두 증가
- 또한 수혜기업 표본에서도 95%p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CV ratio가 증가
  - 95%p 구간에서 음(-)의 CV ratio를 나타낸 것은 수입금액이 큰 기업들에는 본 과세특례가 수평적 형평성을 오히려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표 VI-9> 개인사업자의 2018년 귀속 수입금액 구간별 변동계수비율 변화

구분		감면 전		감면 후		차이	
		CV Ratio1(A)	CV Ratio2(B)	CV Ratio1(C)	CV Ratio2(D)	CV Ratio1 차이(C-A)	CV Ratio2 차이(C-B)
전체 표본	5%p	1.5861	0.2962	1.5947	0.3041	0.0086	0.0079
	10%p	1.7800	0.2085	1.7826	0.2095	0.0027	0.0010
	20%p	1.5955	0.2570	1.5967	0.2582	0.0012	0.0013
	30%p	1.7468	0.0784	1.7487	0.0800	0.0019	0.0017
	40%p	1.7604	0.2039	1.8022	0.2397	0.0418	0.0358
	50%p	2.3161	0.1700	2.4186	0.2087	0.1026	0.0386
	60%p	2.2342	0.2414	2.4681	0.3123	0.2339	0.0708
	70%p	2.4175	0.2830	2.7511	0.3571	0.3336	0.0742
	80%p	2.4272	0.2913	2.7138	0.3516	0.2866	0.0603
	90%p	2.6854	0.1642	2.9526	0.1788	0.2672	0.0145
	95%p	1.8059	0.3832	1.8810	0.3848	0.0752	0.0016
수혜기업 표본	5%p	1.4081	0.3180	1.4529	0.3551	0.0448	0.0371
	10%p	1.4026	0.3251	1.4398	0.3626	0.0372	0.0375
	20%p	1.4617	0.3161	1.4978	0.3807	0.0361	0.0646
	30%p	1.3408	0.3120	1.4184	0.4347	0.0775	0.1227
	40%p	1.2956	0.1530	1.4084	0.2499	0.1128	0.0969
	50%p	1.7275	0.2109	1.9152	0.2896	0.1877	0.0787
	60%p	1.5691	0.2953	1.7077	0.3912	0.1386	0.0959
	70%p	1.7339	0.3437	1.9866	0.4327	0.2527	0.0890
	80%p	1.5217	0.4230	1.5844	0.4772	0.0627	0.0542
	90%p	1.6786	0.4290	1.6672	0.4287	-0.0114	-0.0003
	95%p	1.7597	0.4101	1.7325	0.3958	-0.0272	-0.0143

주: 1. 표본에서 과세표준이 영(0)인 표본을 제외하고,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표본이 관측되지 않아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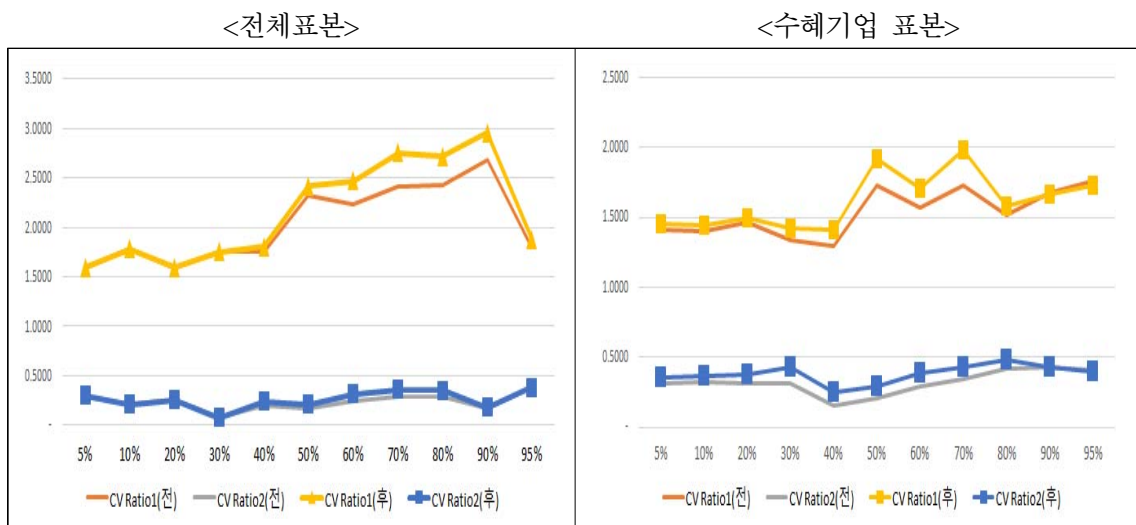
2. 각 분위별 기준금액 범위는 다음과 같음

5%p: 7백만원,	10%p: 11백만원,	20%p: 20.7백만원
30%p: 35.4백만원,	40%p: 55백만원,	50%p: 81.5백만원
60%p: 106백만원,	70%p: 1.35억원,	80%p: 1.92억원
90%p: 3.52억원,	95%p: 5.89억원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

- 수입금액의 분위 구간별 본 과세특례 적용 전과 후의 CV ratio의 변화 크기를 나타낸 [그림 VI-2]에서 전체적으로 적용 후의 CV ratio가 증가하여 수평적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 CV ratio1이 CV ratio2에 비해 변동 폭이 크지만, 대체로 유사한 변동 추이를 유지
  - 수혜법인 표본의 CV ratio1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그림 VI-2] 수입금액 구간별 변동계수비율 추이(개인사업자)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

## 나. 수직적 형평성

### 1) 분석개요

- 먼저, 수직적 형평성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효과(income redistribution effect)와 누진성(progressivity) 수준이 활용되고 있음
  - 소득재분배효과는 세전 소득분포와 세후 소득분포 지니계수의 차이인 Reynolds-Smolensky의 소득재분배효과(RE)로 측정
    - $RE = G_x - G_{x-T}$
    - 여기서  $G_x$ 는 소득세 이전의 지니계수,  $G_{x-T}$ 는 소득세 이후의 지니계수
  - 또한 누진성의 측정은 대표적으로 Kakwani(1977)의 소득세 누진도지수(Kakawni Progressivity Index, KPI)와 Suits의 누진도지수(Suits progressivity index)가 활용

- Kakwani(1977)의 소득세 누진도(KPI)는 지니계수를 활용한 집중곡선(concentration curve)을 이용한 방법
  - $KPI = (\text{세전소득의 지니계수} - \text{본 과세특례 적용 세후소득 지니계수}) / \text{평균세율}$
  -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과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과세특례로 인한 소득재분배효과를 평균 세부담으로 나누어 측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과세특례를 기준으로 한 세전소득의 누적비율(Lorenz Curve)과 세후소득의 누적비율 간 차이에 기초하여 세부담의 누진도를 측정
    - KPI가 0보다 클수록 세부담이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누진적인 소득세를 의미
    - KPI가 0보다 작을수록 세부담이 세전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집중되어, 역진적 소득세를 의미
    - KPI가 0에 가까울수록 세부담과 세전소득의 집중도가 서로 동등하여, 비례적인 소득세를 의미
  
- Suits Curve: 누적소득비율(cumulative income proportion) 대비 누적조세지출 비율(cumulative income tax proportion)을 나타내는 곡선
  - 세부담의 상대적 집중도 또는 누진도를 측정하기 위한 Suits Index는 45도 선과 Suits Curve 간 면적의 두 배로 정의
    - Suits Index는 -1과 1 사이의 값을 취하게 되는데, Suits Curve가 45도선 이하면 양(+)의 값, 이상이면 음(-)의 값
    - Suits Index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과 대비하여 세부담이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다는 의미이고, -1에 가까울수록 세부담이 소득에 비해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덜 집중된다는 의미이며, 0에 가까울수록 세부담의 집중도가 유사하다는 의미
  - 또한 소득수준에 대해 비례적인 소득세(proportional income tax)의 경우, Suits Curve가 45도 직선의 형태
  - 소득수준의 증가 속도보다 세부담이 더 빠르게 증가(progressive income tax)하는 경우, Suits곡선은 45도 직선으로부터 우하향 방향으로 멀어짐
    - 이는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고, 높은 수준의 소득재분배효과를 의미

- 소득수준의 증가 속도보다 세부담이 더 느리게 증가(regressive income tax)하는 경우, Suits곡선이 45도선에서 좌상방향에 위치함
  -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역진성을 의미
  - 이것은 소득세가 소득재분배효과를 악화시킨다는 것을 의미
- 먼저, 본 연구에서 지니계수를 산출하기 위해 세전이익과 세후이익에 대한 측정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함
  - 세전이익은 영업이익으로 정의하고, 세후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산출세액-본 과세특례 감면액)을 차감하여 측정
  - 본 과세특례 수혜기업은 산출세액에서 본 과세특례 감면액이 차감되지만, 비수혜기업은 산출세액만 차감되는 결과
    - 따라서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세후이익은 본 과세특례 감면액만큼 차이가 발생
  - 또한 개인사업자의 미시자료에는 소재지 자료가 없어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을 분석하지 않음

## 2) 분석결과

- 소득재분배효과와 누진성 수준을 측정한 결과, 본 과세특례가 법인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발생시키고 누진성 수준을 높여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결과를 나타낸 반면, 개인사업자의 수직적 형평성은 저해시키는 결과가 분석됨
- 법인의 경우, 본 과세특례의 수혜기업 표본에서 Reynolds-Smolensky 지수가 양(+)<sup>1)</sup>의 값, KPI 지수와 Suits 누진성 지수가 모두 양(+)<sup>2)</sup>의 값을 나타내어 소득재분배효과와 법인세의 누진성 효과가 발생
  - 소득재분배효과를 나타낸 Reynolds-Smolensky 지수가 전체 법인표본에는 -0.0064로 음(-)의 값을 나타냈지만, 본 과세특례를 통한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경우는 0.0099로 양(+)<sup>3)</sup>의 값
    - 이에 반해, 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비수혜기업은 0.0024로 수혜기업보다 소득재분배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

- 누진성 수준을 나타낸 KPI지수와 Suits 누진성 지수의 경우, 수혜기업은 각각 0.0606, 0.1054를 나타낸 반면, 비수혜기업은 이보다 작은 0.0189, 0.0683으로 본 과세특례가 누진성을 제고시키는 효과
- 개인사업자는 Reynolds-Smolensky 지수가 음(-)의 값 그리고 KPI지수와 Suits 누진성 지수도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음
  - 이는 법인과는 달리, 개인사업자는 본 과세특례제도가 수직적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
  - 다만, 개인사업자의 영업손익 미시자료에는 사업소득만 반영되었지만, 산출세액에는 다른 종합소득이나 분류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대응되지 못하는 자료 한계에서 비롯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왜냐하면 세전 Gini계수가 0.7742~0.9433에서 세후 Gini계수가 0.883~5.2071로 급격히 증가한 것은 세전이익과 세후이익 간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포함되어 영업이익과 산출세액 간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 따라서 이하 세부적인 분석에서는 법인 표본을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표 VI-10>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수직적 형평성 분석결과

구분	법인			개인사업자		
	전체	수혜기업	비수혜기업	전체	수혜기업	비수혜기업
세전 Gini계수(①)	0.8127	0.6839	0.9032	0.8558	0.7742	0.9433
세후 Gini계수(②)	0.8063	0.6740	0.9008	1.3155	0.8830	5.2071
Reynolds-Smolensky 지수 (①-②)	0.0064	0.0099	0.0024	-0.4597	-0.1088	-4.2638
KPI(Kakwani 누진성) 지수	0.0391	0.0606	0.0189	-0.5298	-0.2981	-0.7102
Suits 누진성 지수	0.0771	0.1054	0.0683	-0.3907	-0.1479	-0.6213

주: 1. Reynolds-Smolensky 지수(소득재분배효과)가 0이면 소득재분배가 발생하지 않아 세전 및 세후 소득분포가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양(+)이면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의 소득재분배, 음(-)이면 저소득자로부터 고소득자로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짐을 의미  
 2. KPI 지수가 0이면 비례적인 소득세, 양(+)이면 누진적인 소득세 그리고 음(-)이면 역진적인 소득세 체계를 의미  
 3. Suits 누진성 지수가 0이면 비례적인 조세, 양(+)이면 누진적인 소득세, 음(-)이면 역진적인 소득세 체계를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

- (수도권-비수도권의 비교) 또한 본 과세특례제도가 수도권 소재 법인 전체의 소득 재분배효과와 누진성 수준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수도권 소재 수혜기업의 Reynolds-Smolensky 지수(0.0101)가 비수도권 소재 수혜기업(0.0084)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수준
  - 그러나 KPI지수나 Suits 누진성 지수도 수도권 소재 수혜기업(0.0675, 0.1258)이 높은 수준

<표 VI-11>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법인 간 수직적 형평성 차이

구분	수도권 소재 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		
	전체	수혜기업	비수혜기업	전체	수혜기업	비수혜기업
세전 Gini계수(①)	0.8162	0.6419	0.8732	0.8075	0.7112	0.9453
세후 Gini계수(②)	0.8063	0.6318	0.8670	0.8056	0.7028	0.9490
Reynolds-Smolensky 지수 (①-②)	0.0098	0.0101	0.0062	0.0019	0.0084	-0.0037
KPI(Kakwani 누진성) 지수	0.0471	0.0675	0.0274	0.0274	0.0505	0.0085
Suits 누진성 지수	0.1287	0.1258	0.1271	0.0267	0.0817	0.0418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

- (제조업-비제조업의 비교) 본 과세특례제도의 업종별 수직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법인에 소득재분배효과가 발생하고 비제조업 법인에는 누진성 제고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그러나 수혜기업 표본에서는 모든 지수가 양(+) 값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Reynolds-Smolensky 지수가 작게 나타났지만 KPI지수 및 Suits 누진성 지수는 모두 높은 수준
  - 따라서 본 과세특례제도가 제조업 법인에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

<표 VI-12> 법인의 제조업-비제조업 법인 간 수직적 형평성 차이

구분	제조기업			비제조기업		
	전체	수혜기업	비수혜기업	전체	수혜기업	비수혜기업
세전 Gini계수(①)	0.8114	0.6486	0.9076	0.8012	0.6886	0.8836
세후 Gini계수(②)	0.8031	0.6349	0.9049	0.7965	0.6813	0.8821

<표 VI-12>의 계속

구분	제조기업			비제조기업		
	전체	수혜기업	비수혜기업	전체	수혜기업	비수혜기업
Reynolds-Smolensky 지수 (①-②)	0.0083	0.0136	0.0027	0.0047	0.0073	0.0016
KPI(Kakwani 누진성) 지수	0.0410	0.0727	0.0133	0.0377	0.0519	0.0223
Suits 누진성 지수	0.0400	0.1041	-0.0074	0.1047	0.1021	0.1350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

- 이에 반해, 개인 제조업과 비제조업 표본 모두에 본 과세특례가 수직적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음
  - Gini계수가 모두 양(+)으로 증가하면서 KPI도 작은 수준이고 Suits 누진성 지수도 음(-)의 계수
  - 그러나 제조업 중 수혜기업의 경우, Suits 누진성 지수가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어, 본 과세특례가 누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I-13> 개인의 제조업-비제조업 법인 간 수직적 형평성 차이

구분	제조기업			비제조기업		
	전체	수혜기업	비수혜기업	전체	수혜기업	비수혜기업
세전 Gini계수(①)	0.6856	0.6478	0.8663	0.8687	0.7887	0.9442
세후 Gini계수(②)	0.7359	0.6808	2.1892	1.4588	0.9218	5.3120
Reynolds-Smolensky 지수 (①-②)	-0.0504	-0.0330	-1.3229	-0.5900	-0.1332	-4.3678
KPI(Kakwani 누진성) 지수	-0.1345	-0.0867	-0.8936	-0.5756	-0.3552	-0.7079
Suits 누진성 지수	0.0289	0.0647	-0.8249	-0.4474	-0.2205	-0.6209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

### 3. 형평성 평가 결과 요약

- (수평적 형평성: 실효세율) 본 과세특례 적용을 통해 수혜기업-비수혜기업 사이의 실효세율 격차는 더욱 확대됨
  - 본 제도를 통해 전체 업종의 평균 실효세율이 1.94%p가 인하되어 비수혜기업과의 실효세율 차이는 2.24%p로 확대

- 본 제도에 의한 세부담 감소 정도는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컸으며, 결과적으로 수혜기업-비수혜기업 사이의 실효세율 격차도 제조업에서 더욱 커짐
  -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법인 모두 본 제도에 의해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사이의 실효세율 격차는 확대
- (수평적 형평성: 변동계수비율) 변동계수비율(coefficient of variation ratio, CV ratio)을 활용한 분석결과, 본 제도는 대체로 수평적 형평성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기업의 변동계수비율은 감면 전에 비해 감면 후 증가
  - 특히, 제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본 제도가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정도가 컸음
  - 수입금액과 총자산 분위구간 집단별 분석에서도 본 제도가 대체로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도출됨
- (수직적 형평성) 소득재분배효과와 누진성 수준을 측정한 결과, 본 과세특례가 법인의 수직적 형평성을 개선하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과세특례가 Reynolds-Smolensky 지수, KPI 지수 및 Suits 누진성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법인의 경우 모두 양(+)<sup>1)</sup>의 값, 개인사업자는 모두 음(-)<sup>2)</sup>의 값으로 도출됨



## Ⅶ.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 Ⅶ.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 1. 제도 운영 결과 평가

- 본 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결과, 일몰연장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해외제도 비교)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하고 있고, 법인세율 누진구조 및 최저한세 차등세율,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타당성 평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정되지만, 본 제도 지원방식 및 지원대상의 타당성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효과성 평가 및 고용영향평가) 본 제도는 기업의 재무성과 및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형평성 평가) 본 제도는 수평적 형평성 및 개인사업자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됨

### 2. 향후 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안함
  - 코로나19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본 제도의 일몰연장을 추진하는 경우 ① 감면한도 축소 ② 적용대상 업종의 확대를 제안함
  - 장기적으로는 본 제도를 일몰종료하되 ① 투자, 고용 관련 조세지원제도 확대, ② 영세기업에 대한 경감세율 도입 등을 통해 세수 중립적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함

#### 가. 단기적 개선 방안

- 본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제도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본

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급격한 제도의 폐지는 단기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본 제도는 수혜기업 수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조세지원제도임

□ 다만,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본 제도의 일몰연장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감면한도의 축소
- 수혜대상 업종 열거방식 재검토 및 수혜대상 업종의 확대

□ 현행 감면한도는 감면한도가 높아 실제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소수인 것으로 파악됨

- 현행 감면한도는 1억원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1명당 5백만원씩 감면한도가 축소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 하지만 법인과 개인사업자 평균 수혜금액이 각각 452만원, 105만원 수준으로 1억원의 감면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극소수

□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은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본 심층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본 제도의 실질적 감면혜택이 영세한 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감면한도의 축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금융시장에서 시장실패 및 납세협력부담의 역진성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특히, 본 심층평가 분석결과 과거 도입된 1억원 감면한도의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 활용 유인이 제고된 현상이 관측됨
  - 즉, 감면한도 도입 이후 더 많은 기업들이 본 제도를 대신해 긍정적 기업행태와 관련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제도의 감면한도를 추가로 축소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의 긍정적 기업 행태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의 평균 수혜금액과 현행 감면한도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음을 고려할 때, 감면한도를 축소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수혜대상 업종 열거방식 개선) 본 과세특례 적용 업종 구분 수준이 대-중-소분류 등으로 상이하고 체계적이지 않아 조세행정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타법률에서 차용된 업종명, 일정한 충족 조건, 별도의 제외 및 포함 업종 등이 존재하여 그 구분의 체계성이 낮은 상황임
  - 복잡한 업종 열거 방식은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유발하고 제도 오·남용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음
  
- (수혜대상 업종의 확대) 또한 일부 비제조업 주요 업종은 본 제도의 수혜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본 제도가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업종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분류 기준으로 감면업종으로 구분된 건설업, 제조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활용도가 높았으나,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본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교육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따른 보습학원 또는 직업교육훈련시설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도 활용도가 낮음
  - 특히, 본 과세특례 적용 후의 변동계수비율이 증가하여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적용 제외 업종이나 동일 업종 내에서 예외 및 조건이 있는 업종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남
  - 본 제도는 긍정적 기업행태와 연계되어 있지 않고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성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제도의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제도는 사실상 업종 요건을 만족하는 모든 중소기업에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업종별 차등을 두지 않고 최대한 광범위한 중소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또한 업종을 대분류 또는 중분류 수준으로 가급적 통일하여 광범위하게 열거할 경우 앞서 언급한 조세행정 비용을 감축하는 효과도 기대됨

## 나. 장기적 개선 방안

- 장기적으로는 본 제도를 일몰종료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기타 조세지원을 확대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활용도가 높은 본 제도를 폐지하면 많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므로 투자, 고용,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편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본 제도가 긍정적 기업행태와 연계된 조세지원제도 활용 유인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개편을 통해 기타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영세기업에 대한 경감세율을 도입하여 본 제도 수혜기업 중 규모가 작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검토 가능함
    - 본 제도가 업종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조건적 조세지원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개편을 통해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개선하면서도 지원 필요성이 높은 영세기업의 영향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우리나라는 이미 4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세기업에 대한 경감세율은 현행 법인세 누진구조 완화를 전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빛마로·우석진·이동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김학수, 『법인세 최저한세제 운용기조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12.
- 김학수·우석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심층평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이상엽·김빛마로·홍우형·윤성만,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심층평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정은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연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연구』, 21-21, 2021.
-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 위상지표」, 2021.
- \_\_\_\_\_,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 2021.
- 최원석·백경엽, 「법인조세부담의 수평적 공정성 측정에 대한 재검토」, 『세무학연구』, 제26권 제1호, 2009, pp. 137~168.

### <해외문헌>

- Bergner, Sören and Bräutigam, Rainer and Evers, Maria and Spengel, Christoph, The Use of SME Tax Incentives in the European Union(2017), ZEW - 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Paper No, 17-006.
- Cleary et al., “Tax Administration and Firm Performance: New Data and Evidence for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2017. 4.
- Era Dabla-Norris, Florian Misch, Duncan Cleary, and Munawer Khwaja, Tax “Administration and Firm Performance: New Data and Evidence for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IMF Working Paper*, WP/17/95, IMF, 2017.

- IRS, Publication 535, Business expenses, IRS, 2020.
- IRS, Publication 946, How To Depreciate Property, IRS, 2021.
- Kakwani, N.C.,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conomic Journal* 87: 1977, pp. 71~80.
- Kakwani, Nanak, “On the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and redistributive effect of taxes with application to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Advances in Econometrics*, vol. 3, 1984, pp. 149~168.
- Lignier, Philip and Evans, Chris and Tran-Nam, Binh, Tangled Up in Tape: The Continuing Tax Compliance Plight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Business Sector, *Australian Tax Forum*, Vol. 29, No. 2, 2014, pp. 217~247.
- Lignier, Philip and Evans, Chris, The Rise and Rise of Tax Compliance Costs for the Small Business Sector in Australia(August 9, 2012). *Australian Tax Forum*, Vol. 27, No. 3, 2012, pp. 615~672.
- Muresianu, A and Watson Garrett, “Reviewing the Federal Tax Treatment of Research & Development Expenses,” Tax Foundation, 2021.
- OECD, “Small Businesses, Job Creation and Growth: Facts, Obstacles and Best Practices,” 1997.
- Sakallaries, A. G., “Questioning the sacred cow: reexamining the justifications for small business set asides,” *Public Contract Law Journal*, 36(4), 2007, pp. 685~700.
- Weichenrieder, A.J., Survey on the tax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draft report on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OECD 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 Local Development, 2007.
- Westort, P. J., and Wagner, J. M., “Toward a Better Measure of Horizontal Equity,”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4(Spring), 2002, pp. 17~28.
- Woellner, R., Coleman, C., Mckerchar, M., Walpole, M. and Zetler, J., “Taxation or Vexation-Measuring the Psychological Costs of Tax Compliance,” in Evans, C., Pope, J. and Hasseldine, J. (Eds). *Tax Compliance Costs: A Festschrift for Cedric Sandford*. Sydney: Prospect, 2001.

## <웹사이트>

- 과학기술통계서비스, <http://sts.ntis.go.kr>, 검색일자: 2022. 2. 3.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main.html>, 검색일자: 2022. 2. 3.
- \_\_\_\_\_, <http://www.law.go.kr/main.html>, 연도별 세법개정안, 검색일자: 2022. 2. 9.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검색일자: 2022. 2. 3.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https://www.moef.go.kr/nw/nes/nesdta.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Keyword3=%EC%A1%B0%EC%84%B8%EC%A7%80%EC%B6%9C%EC%98%88%EC%82%B0&searchCondition3=1&searchSilDeptId1=&kwd1=](https://www.moef.go.kr/nw/nes/nesdta.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Keyword3=%EC%A1%B0%EC%84%B8%EC%A7%80%EC%B6%9C%EC%98%88%EC%82%B0&searchCondition3=1&searchSilDeptId1=&kwd1=), 검색일자: 2022. 2. 3.
- 미국 국세청(IRS), “Qualified Small Business Payroll Tax Credit for Increasing Research Activitie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qualified-small-business-payroll-tax-credit-for-increasing-research-activities>, 검색일자: 2021. 12. 9.
- 영국 정부(GOV.UK),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relief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ttps://www.gov.uk/guidance/corporation-tax-research-and-development-tax-relief-for-small-and-medium-sized-enterprises>, 검색일자: 2022. 1. 4.
- 일본 국세청, “No.5444 中小企業技術基盤強化税制,”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444.htm>, 검색일자: 2022. 1. 27.
- \_\_\_\_\_, “中小企業者等が機械等を取得した場合の特別償却の対象となる中小企業者の範囲,” <https://www.nta.go.jp/law/shitsugi/hojin/27/02.htm#:~:text=%E3%81%93%E3%81%AE%E5%A4%A7%E8%A6%8F%E6%A8%A1%E6%B3%95%E4%B%BA%E3%81%A8,%E6%A0%AA%E5%BC%8F%E4%BC%9A%E7%A4%BE%E3%82%92%E9%99%A4%E3%81%8D%E3%81%BE%E3%81%99%E3%80%82>, 검색일자: 2022. 1. 20.
- 일본 중소기업의 『2020年度版中小企業施策利用ガイドブック』 少額減価償却資産の特例 p. 253, [https://www.chusho.meti.go.jp/pamflet/g\\_book/2020/](https://www.chusho.meti.go.jp/pamflet/g_book/2020/), 검색일자: 2022. 1. 20.
- Census Data, <https://data.census.gov/cedsci/>, 검색일자: 2022. 3. 7.
- DBEI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5775/corporate-directors-si-impact-assessment.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5775/corporate-directors-si-impact-assessment.pdf), 검색일자: 2020. 4. 8.
-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ca\\_s\\_1.10.1.#ita\\_ca\\_s\\_1.10.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ca_s_1.10.1.#ita_ca_s_1.10.1.),

검색일자: 2019. 5. 30.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nathsuba\\_ca\\_on\\_s\\_1.#nath\\_suba\\_ca\\_on\\_s\\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nathsuba_ca_on_s_1.#nath_suba_ca_on_s_1), 검색일자: 2019. 5. 30.

KPMG,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8/07/european-tax-hungary-country-profile.html>, 검색일자: 2022. 4. 1.

MSME Economic Indicators 2019, <https://www.smefinanceforum.org/data-sites/msme-country-indicators>, 검색일자: 2022. 2. 3.

OECD, “R&D Tax Incentives: United Kingdom, 2021,” <https://www.oecd.org/sti/rd-tax-stats-united-kingdom.pdf>, 검색일자: 2022. 3. 26.

OECD Tax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78166>, 검색일자: 2022. 5. 29.

R&D Tax Solutions, <https://rndtax.co.uk/rd-tax-credits/eligible-costs/sme/>, 검색일자: 2022. 1. 4.

SBA Table of Size Standards Effective Aug 19, 2019, <https://www.sba.gov/document/support-table-size-standards>, 검색일자: 2022. 3. 7.

Worldwide Tax Summaries Online, <https://taxsummaries.pwc.com>, 검색일자: 2022. 4. 1.